

정책자료 2019-12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인구정책연구실

【제1부 저자】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진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한채영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홍보국장

【제2부 저자】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지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성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제3부 저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편집】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19-12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인구정책연구실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현대아트컴

발간사 <<

저출산의 심화와 장기화,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특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더욱 급속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약 15년간 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범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인구 정책은국민의 낮은 삶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을 해소하고,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접근은 인구변화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화를 반영한 다각도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젠더와 청년의 시각에서의 출생과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은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새로운 세가지 관점에서의 ‘인구’를 다루는 옴니버스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청년의 시각에서의 인구의 현상을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청년시민운동 단체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추진한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본인들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 여성연구자의 시각에서의 고령자의 삶을 모색해 보는 시도로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는 고령화의 주제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노인의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도이다. 셋째, 인구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기 위한 방향 모색을 보는 시도로서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모색」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을 위해 타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성숙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기관(NGO)와의 협동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제시된 결과물은 개별 기관과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제1부 청년들에게 인구위기가론이 갖는 의미	1
제1장 서 론	3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8
제3절 연구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기존의 인구위기가론	25
제2절 인구대책	3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8
제3장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57
제1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구 위기’	59
제2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76
제3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령화	87
제4절 소결	131
제4장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137
제1절 원가족과 지인의 영향	139
제2절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	146
제3절 소결	165

제5장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169

제1절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 173

제2절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 186

제3절 소결 197

제6장 결 론 199

제1절 결론 201

제2절 정책적 제언 210

제3절 연구의 한계 228

제4절 마치며 : 변화하는 삶의 형태 ‘느슨한 연대’ 230

제2부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235

제1장 서 론 2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0

제2장 고령화와 젠더 관련 기존 논의 243

제1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내 논의 245

제2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제 동향 248

제3장 고령자 주요 현황 및 성별 비교	261
제1절 노인 인구 현황	263
제2절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265
제3절 경제상태	271
제4절 건강	275
제5절 부양/돌봄 교환 실태	278
제6절 소결	281
 제4장 전문가 조사	 283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85
제2절 조사결과 분석	288
 제5장 결 론	 343
제1절 결론	345
제2절 제언	346
 제3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모색	 35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1

제2장 이론적 논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내용 365

제1절 왜 사회적 가치인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367

제2절 사회적 가치란 386

제3절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388

제3장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399

제1절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401

제2절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402

제3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405

제4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405

제4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409

제1절 공공·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411

제2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모색 방향 418

참고문헌 427

부 록 439

부록 1. 청년들에게 인구위기가 갖는 의미 질문지 439

부록 2.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전문가 조사표 442

표 목차

〈표 1-1-1〉 청년기본조례 청년의 범위 비교	11
〈표 1-1-2〉 청년의 연령 범위	12
〈표 1-1-3〉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13
〈표 1-1-4〉 FGI 참여자	15
〈표 1-1-5〉 1:1 인터뷰 참여자	17
〈표 1-2-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009-2018	28
〈표 1-2-2〉 가임여성인구(15~49세) 및 주된 가임여성인구(25~34세) 변동 추이와 전망	30
〈표 1-2-3〉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34
〈표 1-2-4〉 한국의 인구정책 구분	36
〈표 1-2-5〉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46
〈표 1-2-6〉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대상	50
〈표 1-2-7〉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51
〈표 1-2-8〉 가치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연령과의 관계	53
〈표 1-6-1〉 새로운 공동체의 유형	226
〈표 2-1-1〉 「고령사회와 젠더 포럼」 운영 개요	241
〈표 2-1-2〉 전문가 조사 개요	242
〈표 2-2-1〉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 가이드라인	249
〈표 2-2-2〉 유엔유럽경제위원회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지역 이행전략 (The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RIS)	251
〈표 2-2-3〉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 제3차 주기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	256
〈표 2-3-1〉 노인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266
〈표 2-3-2〉 노인 최장기간 동안 일한 직업에서의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268
〈표 2-3-3〉 노인 은퇴사유 성별 비교	268
〈표 2-3-4〉 노인 노후준비 성별 비교	269

〈표 2-3-5〉 노인 소득항목별 보유 비율 및 금액 성별 비교	272
〈표 2-3-6〉 노인 자산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274
〈표 2-3-7〉 노인 부채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274
〈표 2-3-8〉 노인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 성별 비교	277
〈표 2-3-9〉 노인 배우자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279
〈표 2-3-10〉 노인 부모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280
〈표 2-4-1〉 조사개요	285
〈표 2-4-2〉 응답자 특성	286
〈표 2-4-3〉 조사항목	286
〈표 2-4-4〉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	288
〈표 2-4-5〉 노후 소득보장 정책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	291
〈표 2-4-6〉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92
〈표 2-4-7〉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294
〈표 2-4-8〉 노후 소득보장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젠다 및 과제	296
〈표 2-4-9〉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	297
〈표 2-4-10〉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98
〈표 2-4-11〉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299
〈표 2-4-12〉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젠다 및 과제	300
〈표 2-4-13〉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300
〈표 2-4-14〉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02

〈표 2-4-15〉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306
〈표 2-4-16〉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11
〈표 2-4-17〉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316
〈표 2-4-18〉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17
〈표 2-4-19〉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318
〈표 2-4-20〉 고령자 경제활동 및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19
〈표 2-4-21〉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320
〈표 2-4-22〉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21
〈표 2-4-23〉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22
〈표 2-4-24〉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24
〈표 2-4-25〉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325
〈표 2-4-26〉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26
〈표 2-4-27〉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27
〈표 2-4-28〉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28
〈표 2-4-29〉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330

〈표 2-4-30〉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31
〈표 2-4-31〉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33
〈표 2-4-32〉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35
〈표 2-4-33〉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339
〈표 2-5-1〉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356
〈표 3-2-1〉 CSR과 CSV	384
〈표 3-2-2〉 사회 참여의 범주화	396
〈표 3-3-1〉 공공기관의 유형과 요건	402
〈표 3-4-1〉 국책연구기관 연구 분야 평가지표(배점 800점)	414
〈표 3-4-2〉 국책연구기관 경영 분야 평가지표(배점 200점)	416

그림 목차

[그림 1-2-1] 한국의 총 인구 수 변화	26
[그림 1-2-2]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연평균) 추이	27
[그림 1-2-3] 연령별 혼인율 (남성)	29
[그림 1-2-4] 연령별 혼인율 (여성)	29
[그림 1-2-5] 1997년~2018년 출생 성비	31
[그림 1-2-6] 연도별 출생 성비	32
[그림 1-2-7]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33
[그림 1-2-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8
[그림 1-2-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9
[그림 1-2-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0
[그림 1-2-1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42
[그림 1-2-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중 인구정책	43
[그림 2-3-1] 65세 이상 인구 성별 변화 추이	264
[그림 2-3-2] 65세 이상 연령별 성비 구성	265
[그림 2-3-3]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성별 비교	266
[그림 2-3-4] 노인 현재일자리 근무형태 성별 비교	267
[그림 2-3-5]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성별 비교	270
[그림 2-3-6] 국민연금 지급액 추이 성별 비교	271
[그림 2-3-7] 노인 소득항목별 구성비 성별 비교	273
[그림 2-3-8] 노인 평소건강상태 성별 비교	275
[그림 2-3-9]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 성별 비교	276
[그림 2-3-10] 노인 만성질환 개수 성별 비교	277
[그림 2-4-1]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289
[그림 2-4-2]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290
[그림 3-2-1]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374

제 1 부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4장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5장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6장 결론

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문제제기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상징하는 신조어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의 굴레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설사 일 자리를 찾더라도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높이 치솟은 집값은 청년들이 낮은 질의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였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연애’와 ‘결혼’, ‘출산’이다. 연애, 결혼, 출산은 한 개인이 생계를 꾸리는데 필수적인 경제력, 일자리, 주거 등을 확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적어도 또 한 명의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 입직 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높아졌다. 2018년 기준 혼인 건수는 25만 7천 건으로 통계표로 확인 가능한 시점인 1990년 39만 9천 건에 비해 약 14만 건 정도가 감소하였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0a) 평균 초혼연령도, 동년 기준 남성은 33.15세, 여성은 30.40세로 1990년(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에 비해 약 5~6세 정도 높아졌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0b).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2018년 31.9세로,

1993년 26.23세에 비해 상승하였다(통계청, 2019c; 통계청, 2015).

또한 청년들 사이에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의 독립성이 중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한다.”가 아닌 자발적으로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비혼주의 문화가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물론 비혼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하였듯이 결혼에 대한 적극적 거부를 보이는 경우는 여전히 많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도만 해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에 응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34%대에 머물렀는데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이 58%대로까지 상승하였다(통계청, 2018).

이런 상황과 맞물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2%대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내려가는 초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심화되었다(통계청, 2019c; 국가기록원, 2020. 02. 29). 반면, 노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문제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5년부터 한국의 인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만들어져 수조원이 투입되었다. 주된 목적은 출산율 제고였다. 이에 더해 정책 결정자들은 그 위기의 주된 원인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안에 청년들이 연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담기기 시작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김병규, 2015. 10. 18.). 지자체도 보조를 맞추었다. 배우자를 찾아주는 대구 달서구청의 ‘결혼장려팀’ 신설,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손잡은 울진군(김나현, 2019. 09. 29.) 등 여러

지자체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과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출산지도를 발표하였고, 국책 연구원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의 하향선택 결혼을 촉구하는 내용을 저출산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작년보다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여성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애 낳는 기계인가!”라는 반감만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과 실제 청년들의 삶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는 지금의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곧 마주하게 될 인구 감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이 청년들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갖는 생각을 알아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것이다. 이 내용들은 이미 많은 학술 연구와 정부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전하는 생생한 언어들에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청년들이 인구문제 및 인구위기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정책의 배경이 되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청년들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청년들의 가족 형성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시기의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던 학업 과정을 마치고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정해진 학업과정에 얽매며 삶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사회적으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 진학률이 여전히 70%대인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만,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간과 권한의 측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으로 수십 년간 나의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직장을 탐색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학교 기숙사 등 정해져 있던 공동체 생활로부터 벗어나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입지를 다진 후에는 가족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결혼이나 출산 등을 통해 실제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혼인이나 출산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는 20~30대이다. 또한 동거나 비혼, 동성커플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은 것도 청년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은 인구문제에 있어 청년들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그들의 가족 형성으로 연결되어 미래 인구수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인구문제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실제 한국의 인구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방향키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정책들 중 상당수도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시장 정책에서부터 주거 지원까지 1인 가구 청년, 20~30대 청년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제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느끼는 인구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청년들이 인구문제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구위기를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 논의된 인구문제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 차원으로 구체화시켜 청년 각자의 가족관을 알아볼 것이다. 청년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싶은지, 그 생각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인구문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론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와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구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볼 것이다.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만 19세 ~ 34세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청년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주는 조금씩 다른데, 몇 년 전만 해도 청년을 법률에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다(김기현, 2017). 동 법의 규정에 따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 15세 ~ 만 29세이 이하인 사람이다. 공공기관 고용 시에는 만 34세까지로 확장된다. 이 규정은 당시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취지로 인해 “취업을 원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청년을 단지 노동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의미를 최초로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여러 청년정책과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의 바탕이 되고 있다.

〈표 1-1-1〉은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범위를 비교한 표이다(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검색, 2019.12.29.).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경남, 전주, 수원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표 1-1-1〉 청년기본조례 청년의 범위 비교

구분	청년의 범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남도 청년발전기본조례	-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전라남도 청년발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순천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양천구 청년기본조례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다양한 지역의 청년기본조례 비교. 표 <청년기본조례 조항 비교>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Retrieved from <https://sites.google.com/view/bygovernance/부산청년기본조례/지역별-청년기본조례-비교> 에서 2020. 01. 28.에 자료 인출

〈표 1-1-2〉 청년의 연령 범위

구분	지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위임 (13)	서울특별시,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수도권강동구, 수도권서대문구, 수도권양천구, 수도권은평구, 수도권도봉구, 수도권관악구, 수도권금천구, 부산서구, 수원시, 청주시
15~39세(1)	충청북도
18~34세(5)	충청남도, 고양시, 청양군, 아산시, 부산광역시
18~39세(7)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당진시, 홍성군, 부여군, 화순군
19~34세(4)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시흥시
19~39세(1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천시, 수도권남부, 광주동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 안양시, 과천시, 충주시, 완주군, 여주시
19~49세(2)	장흥군, 곡성군

자료: 허필운 (2018).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고찰. 진보평론, 77, p.164-165.

〈표 1-1-2〉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포함하여 청년과 관련된 모든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정의만 정의한 표이다(허필운, 2018).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은 공공기관 취업 시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만 34세까지로 확장되는데 비해 많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혹은 39세까지로 30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역시도 2004년 청년 실업해소특별법 당시에는 만 29세를 청년의 연령 하한으로 보았으나, 2016년 개정을 통해 취업 및 고용지원의 정책대상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년기본법안의 여야 합의안에서의 청년 연령 범위도 만 19세~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김형주 외, 2018a). 뿐만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청년 기본법 중 이원욱 의원 안과 신보라 의원 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를 넘어 만 39세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금대출이나 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정책이나 무중력지대와 같은 청년공간지원사업 등 몇몇 분야에서도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초반, 더 나아가 30대 후반까지도 포함하려는 방향

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나 법령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표 1-1-3>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들이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의 연령 하한선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로 조례와 마찬가지로 만 19세에 머물고 있다. 반면, 연령 상한선은 2016년 만 29.5세로 20대에 머물렀다면 2018년 조사에서는 만 31.4세로, 30대 초반까지 청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현실과도 관련이 깊다.

<표 1-1-3>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구분	사례수	아동연령		청소년연령		청년연령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2016	2,534	5.2	11.5	12.6	18.4	19.3	29.5
2017	2,714	4.5	11.2	12.2	18.4	19.4	31.2
2018	3,133	4.8	11.3	12.8	18.8	19.8	31.4

자료: 김형주임지연유설희(2018b).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36.

김형주 외(2018a)에 따르면 보통 ‘청년’을 생각했을 때, 20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사실상 20대와 30대초중반까지는 처한 상황에 큰 차이가 없다. 취업난이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계속해서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20대에 이어 30대까지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만 34세에서 더 나아가, 만 3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의 연령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청년고

용촉진특별법의 기준을 준용하되, 많은 지자체의 기본조례와 청년의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 만 19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는 데 기반하여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30대 후반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주로 30대 중반 정도까지가 혼인률이 가장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결혼 후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혼자를 선정하거나 초기 신혼부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 2018년 기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8.3%에 불과하다(통계청, 2018). 1~4인 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32.6%, 5~9인 규모 중소기업은 48.3%에 그친다(노민선, 2019).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6.6%로, 10년 전인 2008년 62.4%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e-나라지표, 2019). 지난 10년 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가족계획 형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김유선(2016)은 고용형태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즉, 청년들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유선,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고, 대학생 집단을 추가하여 아직 노동시장이나 구직 활동에 진입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 밖에도 거주지에 따라 청년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6개 집단, 비수도권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선정하였고,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들을 고루 인터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대상자를 인터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집단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74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4〉 FGI 참여자

번호	참여자	그룹	연령	성별	고용 형태	결혼 상태
1	G1-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취업준비생	미혼
2	G1-2		23	남	대학생	미혼
3	G1-3		25	남	대학생	미혼
4	G1-4		23	남	대학생	미혼
5	G1-5		23	남	대학생	미혼
6	G2-1		24	여	취업준비생	미혼
7	G2-2		23	여	취업준비생	미혼
8	G2-3		23	여	취업준비생	미혼
9	G2-4		23	여	대학생	미혼
10	G2-5		23	여	대학생	미혼
11	G3-1	수도권 (정규직)	30	남	정규직	미혼
12	G3-2		32	남	정규직	미혼
13	G3-3		25	남	정규직	미혼
14	G3-4		34	남	정규직	미혼
15	G4-1		32	여	정규직	미혼
16	G4-2		28	여	정규직	미혼
17	G4-3		33	여	정규직	미혼
18	G4-4		30	여	정규직	미혼
19	G4-5		26	여	정규직	미혼

16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번호	참여자	그룹	연령	성별	고용 형태	결혼 상태
20	G5-1	수도권 (비정규직)	27	남	비정규직	미혼
21	G5-2		31	남	비정규직	기혼
22	G5-3		34	남	비정규직	미혼
23	G5-4		28	남	비정규직	미혼
24	G5-5		31	남	비정규직	미혼
25	G6-1	수도권 (비정규직)	25	여	비정규직	미혼
26	G6-2		29	여	비정규직	미혼
27	G6-3		26	여	비정규직	미혼
28	G6-4		32	여	비정규직	미혼
29	G6-5		28	여	비정규직	미혼
30	G6-6		32	여	비정규직	미혼
31	G7-1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7	남	대학생	미혼
32	G7-2		24	남	대학생	미혼
33	G7-3		25	남	대학생	미혼
34	G7-4		27	남	대학생	미혼
35	G7-5		22	남	대학생	미혼
36	G8-1	경상도 (정규직)	21	여	대학생	미혼
37	G8-2		23	여	대학생	미혼
38	G8-3		22	여	대학생	미혼
39	G8-4		21	여	대학생	미혼
40	G8-5		21	여	대학생	미혼
41	G9-1		30	남	정규직	기혼
42	G9-2		29	남	정규직	미혼
43	G9-3		26	남	정규직	미혼
44	G9-4		33	남	정규직	기혼
45	G9-5		31	남	정규직	미혼
46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정규직	미혼
47	G10-2		31	여	정규직	미혼
48	G10-3		25	여	정규직	미혼
49	G10-4		27	여	정규직	미혼
50	G10-5		31	여	정규직	미혼

번호	참여자	그룹	연령	성별	고용 형태	결혼 상태
51	G11-1	강원도 (비정규직)	26	남	비정규직	미혼
52	G11-2		33	남	비정규직	미혼
53	G11-3		25	남	비정규직	미혼
54	G11-4		25	남	비정규직	미혼
55	G11-5		25	남	비정규직	미혼
56	G12-1		22	여	비정규직	미혼
57	G12-2		25	여	비정규직	미혼
58	G12-3		30	여	비정규직	미혼
59	G12-4		30	여	비정규직	미혼

FGI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혼이나 자녀 유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FGI 과정에서는 주로 미혼자를 선정하되, 기혼인 경우도 1~2명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표 1-1-5〉 1:1 인터뷰 참여자

번호	참여자	지역	연령	성별	고용 형태	결혼 상태
60	I1	수도권	26	여	정규직	기혼
61	I2	강원도	25	여	비정규직	기혼
62	I3	수도권	27	여	비정규직	기혼
63	I4	수도권	26	여	비정규직	기혼
64	I5	수도권	28	여	정규직	미혼
65	I6	수도권	26	여	비정규직	미혼
66	I7	수도권	33	여	정규직	기혼
67	I8	수도권	29	여	정규직	미혼
68	I9	수도권	29	여	비정규직	미혼
69	I10	수도권	27	남	정규직	기혼
70	I11	수도권	27	남	정규직	미혼
71	I12	수도권	27	남	비정규직	미혼
72	I13	경상도	33	남	정규직	기혼
73	I14	수도권	32	남	비정규직	기혼
74	I15	수도권	29	남	비정규직	미혼

반면, 1:1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을 거의 유사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기혼자 중에는 출산 및 육아 중인 참여자들도 일부 포함해 이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 방식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사례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모집하였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펙업’이나 ‘독취사’ 등 취업 사이트에 모집 공고문을 올려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1차 참여자를 선정하고, 해당 참여자를 통해 다른 지인들을 추가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온라인 홍보 방식으로 적합한 사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편의 표집(convenience)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이 모두 청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주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FGI 수도권 참여자 모집의 경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역 참여자 및 1:1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에는 눈덩이 표집 및 편의 표집 방식이 사용되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역대 인구정책의 양상을 알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정부 발표자료 및 국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동안 저출산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되었던 국내 양적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흐름과 국내 연구 흐름을 파악한 뒤 질문지 작성에 반영하였다.

질문지 작성 후에는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6명으로 구성된 FGI로 이루어졌고 대학생 2명,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3시간 정도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는 본 연구의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총 74명의 연구 참여자 중 59명은 FGI 방식으로, 15명은 1:1 방식으로 각 1회씩 만나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는 8월~9월 동안 진행되었고 1대1 인터뷰는 10월~11월 동안 1회씩 진행되었다. 인터뷰 1회당 소요시간은 FGI의 경우 150분에서 180분 사이였고, 1:1 인터뷰는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스터디 카페 또는 대학 강의실, 공공 공간 등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 개인정보, 연구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의 녹취 또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을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확실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인터뷰 참여자가 인터뷰 도중 밝힌 친구나 가족, 회사 이름을 특수문자로 표기하였다.

3. 자료 수집

인터뷰가 종료된 후 FGI를 통해 수집된 그룹 인터뷰 녹취록 12부와 1:1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녹취록 15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분석 방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들로 구성되었다(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2015). 특히 인터뷰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녹취록 작성과 분석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개방코딩의 단계에서 연구진들 간 녹취록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정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 답변 속에 연구문제와 관련된 어휘나 맥락, 패턴들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질문별, 개인별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답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들 간 논의를 통해 개념화를 한 뒤, 하위 범주의 틀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위 범주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답변 속에서 범주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찾아내어 2차 분류를 진행하는 축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축코딩의 과정에서는 해당 답변 속에서 드러나는 참여자의 배경과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범주들의 연관 관계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류를 통해 발견된 범주들을 연결해서(선택코딩) 그 관계로부터 이야기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목차로 담았다.

그룹 인터뷰와 1:1 인터뷰 참여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 방식을 따랐다. 그룹 인터뷰의 경우, G로 표기하였으며 홀수 그룹은 남성, 짝수 그룹은 여성으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수도권 대학생 남성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 G1-1부터 G1-5까지, 수도권 대학생 여성 집단의 경우 G2-1부터 G2-5까지 표기하였다. 1:1 인터뷰 참여자는 알파벳 I를 사용하여 I1부터 I15까지로 표기하였다.

4. 연구용어 정리

최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의 ‘산(産)’의 한자어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

지가 있기 때문이다(김미향, 18. 06. 02). 이런 논의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7기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저출생’으로 언급하였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시민이 직접 바뀌보는 생활 속 성차별 언어 캠페인에서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저출생’이라는 용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본 연구진들도 이런 움직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 청년들이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감 있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혼 상태에 대해 ‘미혼’으로 표기할 것인지, ‘비혼’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비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미혼과는 달리 ‘결혼을 스스로 혹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념적 의미를 내포하는 사회적 용어이다(최효미 외, 2016).

본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상태에 기반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을 감안하여 상태를 의미하는 ‘미혼’으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용어가 ‘아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비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존의 인구위기론

제2절 인구대책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기존의 인구위기론

1. 세계 및 한국의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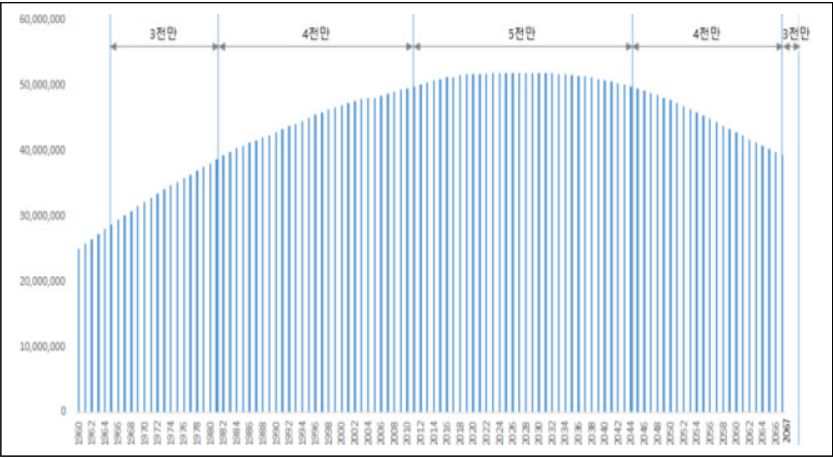
오늘날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게 될 큰 사건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미 인구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 인구는 약 2.5배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40년은 증가세가 둔화되어 0.3% 대의 인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9f). 개별 국가로 보면 변화는 더 크다. 이미 20여 개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흐름은 더 많은 국가들에게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 인구가 장차 줄어들 국가 중 하나이다. 2028년까지는 매년 소폭 증가하면서 5천만 명 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7년에는 1970년대의 인구 규모인 3천만 명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수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다. 출생은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의해 측정된다. 사망은 기대수명에 의해 측정된다. 기대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으로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다(통계청, 2019f). 인구 이동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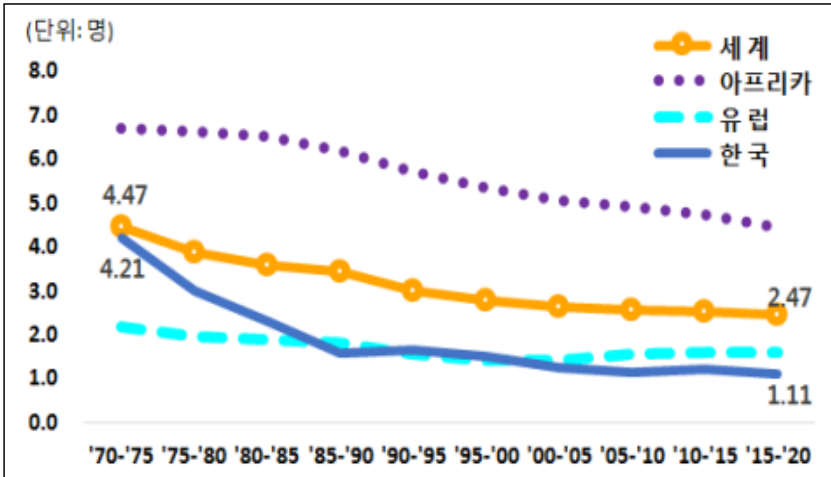
지역에 들어온 자와 나간 자의 차이인 순이동에 의해 측정된다. 위 세 가지 요건에 의해 개별 국가들의 인구수 변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길수록, 그리고 순 유입이 많을수록 인구수는 늘어나게 된다.

[그림 1-2-1] 한국의 총 인구 수 변화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특별추계(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1960~2067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19.11.10. 자료 인출.

[그림 1-2-2]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연평균) 추이



자료: 통계청(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요약)-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연평균) 추이.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3.

[그림 1-2-2]를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70~1975년 4.21명에서 2015~2020년 1.11로 급격히 떨어졌다. 세계 합계 출산율도 동기간 4.47에서 2.47로 하락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유독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율을 연령별로 나타낸 <표 1-2-1>을 보면 이 같은 출산율의 하락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10년 전에 비해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39.4명,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9.4명 감소하였고,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1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이는 취업난으로 인해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늦춰짐으로 인해 발생한 30대 후반의 출산율 상승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청년층에서 출산율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2-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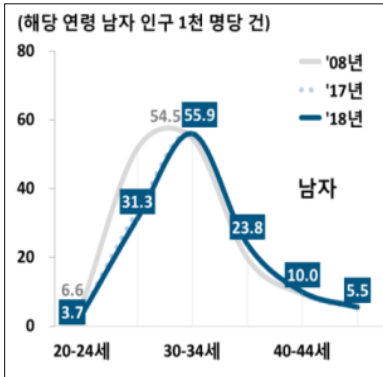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증감	증감률
합계출산율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08	-7.1
연령별 출산율	15-19	1.7	1.8	1.8	1.7	1.6	1.4	1.3	1.0	0.9	-0.1	-10.0
	20-24	16.5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1.4	-14.6
	25-29	80.4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6.9	-14.4
	30-34	100.8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6.3	-6.4
	35-39	27.3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1.1	-2.3
	40-44	3.4	4.1	4.6	4.9	4.8	5.2	5.6	5.9	6.0	0.4	6.7
	45-49	0.2	0.2	0.2	0.2	0.1	0.1	0.2	0.2	0.2	0.0	0.0

자료: 통계청(2019c). 2018년 출생 통계(확정):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표 2]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008-2018.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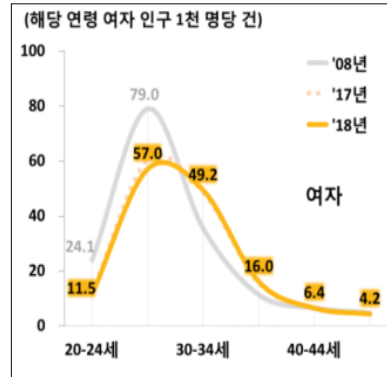
청년층 사이에서 발생한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 따르면 청년 기혼 여성의 출생아 수는 20대 후반의 경우 1명이 44.4%, 2명이 28.1%, 3명이 3.2% 순이었고, 30대 초반도 1명이 42.9%, 2명이 36.1%, 3명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한 여성들은 이미 최소한 1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09년 자료와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에 실시되었던 같은 조사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경우 1명이 40.3%, 2명이 21.2%, 3명이 2.1%, 30대 초반의 경우 1명이 32.3%, 2명이 46.5%, 3명이 6.7% 이다. 따라서 20~30대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2-3] 연령별 혼인율 (남성)



자료: 통계청(2019d). 2018년 혼인·이혼 통계: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요약-연령별 혼인율,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1.

[그림 1-2-4] 연령별 혼인율 (여성)



자료: 통계청(2019d). 2018년 혼인·이혼 통계: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요약-연령별 혼인율,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1.

반면, 혼인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남녀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20대 후반의 혼인율의 감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20대 후반의 혼인율은 51.8%였으나 2018년에는 31.3%로 거의 1/3 이상 하락하였다. 반면 30대 초반의 경우, 2008년 54.5%에서 2018년 55.9%, 30대 후반의 경우에도 19.7%에서 23.8%로 약간 상승하였을 뿐이다. 여성도 비슷한 상황이다.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율은 2008년 79.0%에서 2018년 57.0%로 거의 절반가량 하락하였다. 30대 중반은 35.4%에서 49.2%, 30대 후반은 11.3%에서 16.0%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20대 후반에 떨어진 비율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즉, 늦어진 취업 시기 등으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밖에도 여성 청년의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 흐름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해봉과 장인수(2017)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에 있어 주된 영향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출산 시기 조정에 따른 시간 효과가 29.21% 정도의 영향이라면,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는 61.35%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2〉을 보면 실제로 지난 10여 년 간 가임기 여성이라고 불리는 만 15~49세 여성 인구 집단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 25~34세 여성 인구의 감소는 더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398만 명이었던 만 25~34세 여성 인구는 10년 후인 2015년에는 약 60만 명이 감소한 33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0년 즈음에는 323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표 1-2-2〉 가임여성인구(15~49세) 및 주된 가임여성인구(25~34세)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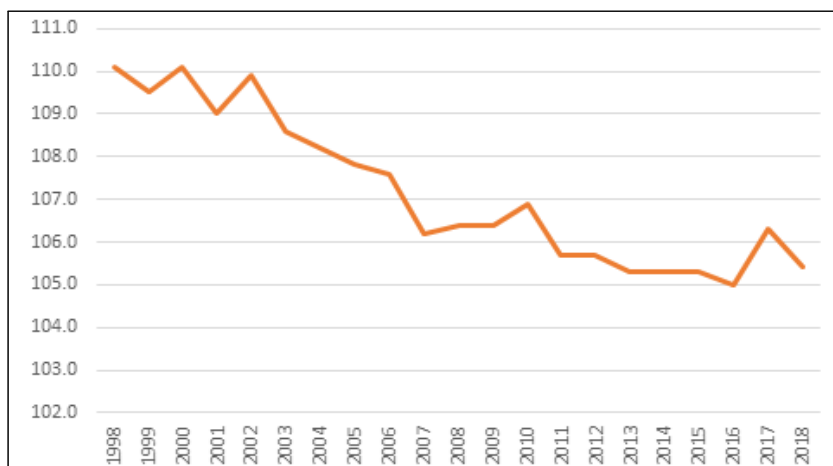
구분	가임여성인구(15~49세)			주된 가임여성인구(25~34세)		
	규모	5년 전 대비 증감	2015 =100	규모	5년전 대비 증감	2015 =100
1990	12,128	1,055	95	4,115	648	121
1995	12,858	731	101	4,183	67	123
2000	13,418	559	105	4,192	9	123
2005	13,385	-33	105	3,982	-209	117
2010	13,167	-218	103	3,722	-261	110
2015	12,759	-408	100	3,396	-326	100
2020	11,901	-857	93	3,230	-165	95
2025	10,910	-991	86	3,297	67	97
2030	10,171	-739	80	2,863	-434	84
2035	9,335	-836	73	2,377	-486	70
2040	8,802	-533	69	2,262	-115	67
2045	8,141	-661	64	2,158	-104	64
2050	7,494	-647	59	2,036	-122	60

자료: 이삼식(2017),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건복지포럼. 243, p.35.

한편, 가임기 여성 인구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닐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 보도된 자료의 연도별 출생 성비를 본다면 ‘9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출생성비가 11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 이후로 최근까지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출생 성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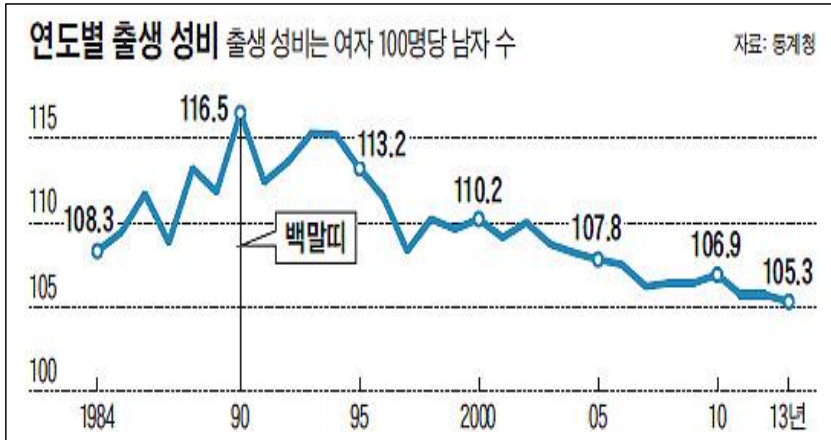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면, 1990년생은 백말띠 해로 ‘여자는 기가 세다’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거기에 성차별적 미신까지 더해져 여아 낙태 비율이 높았고, 그것이 출생 성비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김연주, 2014.03.07.; 윤다정, 2017.08.30.). 이것이 현재 가임기 여성 수 감소에 영향을 준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5] 1997년~2018년 출생 성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시도/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90~2018. Retrieved from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9&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 01. 10. 추출

[그림 1-2-6] 연도별 출생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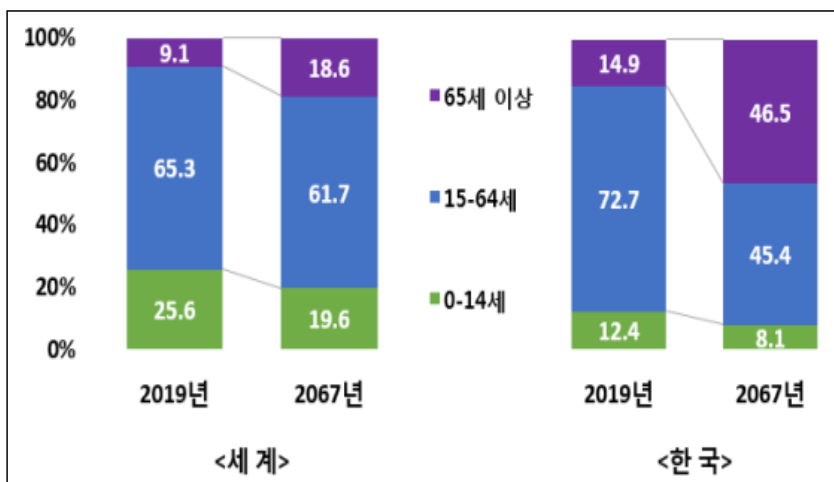


자료: 김연주(2014. 03. 07.).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女 100 : 男 116명... '최대 男超 세대' 1990년생 백말띠, 조선일보.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030700202#Redyho> 에서 2019. 08. 21. 에 자료 인출.

2.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위기로

각 나라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이나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즉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극대화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김승권, 2005).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2018)은 한국의 적정인구를 2020년 4,920만, 2040년 5,031만, 2060년 4,747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적정인구의 고령화율은 2020년 15.9%, 2040년 32%, 2060년 38.7%로 예측하였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반면 앞서 살펴본 [그림 1-2-1]과 같이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약 4,280만 수준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인구위기로 인 사회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출산 추이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는 한국의 인구구조를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려가 더 증폭되었다.

[그림 1-2-7]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자료: 통계청(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요약)-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2.

지금의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표 2-3>에서 보다시피 생산연령인구 1백 명 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지금의 37.6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으로 약 82.6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 수가 1명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나라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구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정재훈, 2017; Dent, 2015). 인구가 고령화되어 노인 위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는 용어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과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 및 투자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나 투자,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인구집단은 활발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지면, 제도나 사적 부양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는 세금이나 노동력이 고령인구의 삶을 지원하게 됨을 의미한다.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질수록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이들의 복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적은 생산가능인구로는 이 재정을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이미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고, 2044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도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2-3〉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단위 :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구분	1970년			2019년			2067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세 계	75.0	65.7	9.3	53.2	39.2	14.0	62.0	31.8	30.2
아프리카	90.1	84.1	6.0	78.7	72.5	6.2	55.5	43.2	12.2
아 시 아	79.6	72.9	6.7	47.7	35.0	12.7	62.9	26.5	36.4
유 럽	55.6	39.4	16.3	53.5	24.6	28.8	76.4	25.5	51.0
라틴아메리카	86.2	78.9	7.3	49.1	36.1	13.0	67.2	25.5	41.7
북아메리카	61.7	45.7	15.9	53.0	28.0	25.0	70.5	27.3	43.2
오세아니아	65.9	54.1	11.7	56.8	37.1	19.7	63.4	31.1	32.4
남 북 한	82.9	77.3	5.7	38.8	20.7	18.0	94.6	21.7	73.0
한 국	83.8	78.2	5.7	37.6	17.1	20.4	120.2	17.8	102.4
북 한	81.0	75.3	5.7	41.3	28.3	13.1	65.1	26.1	39.0

자료: 통계청(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부양비-[표11]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16.

국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병역 자원이 약 26만 명이다(정재훈 2017; 김민욱 2014). 그러나 2025년이 되면 징집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가 22만 6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도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감축하고 모병제가 부상하는 등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된 곳이 많다(이상호, 2018).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유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의 과정도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해당 지역의 항구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국방 그리고 지역 도시의 소멸 문제 등 사회 다방면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인구쇼크, 인구절벽의 도래’,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늙어가는 대한민국’ 등 정부와 언론에서 우려 섞인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2절 인구대책

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과잉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당시 인구정책은 ‘인구억제를 위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사업’이었다(최정원 외, 2019). 이 기조 하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와 같이 저출산을 장려하는 표어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회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수를 점점 줄이고, 불임 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부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표 1-2-4〉 한국의 인구정책 구분

구분	인구 증가 억제 정책 (1962~1995)	인구 자질 향상 정책 (1996~200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005~현재)
주요 내용	가족계획사업 준비 (1962~1966)	· 출생 성비 왜곡 시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2006~2010)
	가족계획사업 조직체계 완비 (1967~1971)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인구증가 억제 정책 다원화 (1971~1981)	· 가족보건복지 증진 및 청소년 성문제 대응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현재)
	인구증가 억제 정책 강화 (1982~1988)	· 여성 취업 및 인력 활용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018.12)
	인구증가 억제 정책 마무리 (1989~1995)	· 고령자 복지 시설 정비 및 고령자 인력 활용 제고	- 혁신적 포용국가 (저출산·고령사회에도 활력 있는 사회) (2019. 12)

자료: 우해봉(2018).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 41(2), 44.〈표1〉을 바탕으로 수정함.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 하에 출산을 장려하는 몇몇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산전후휴가제도의 도입과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제화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출산억제 시기의 정책과 제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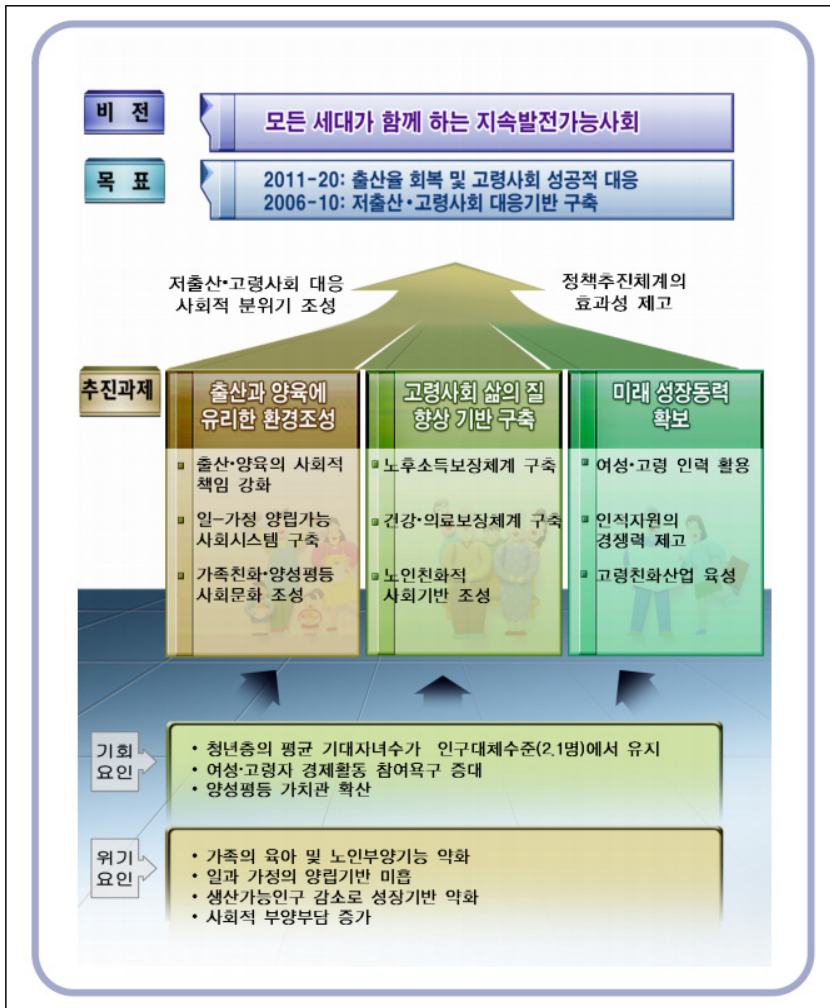
그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2005년 1.09명으로까지 떨어져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동 법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으로 대표되는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이운경, 2019).

그 결과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인구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정성호, 2018). 그러나 본 계획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저소득층에 집중된 보육료 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의 미흡 등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계획에서는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맞벌이·중산층 가구로 대상층이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전환 등 맞벌이·중산층 가구의 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여성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의 부재,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과 같은 민간보육시장

육성 정책으로 인한 개인적 부담 가중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반복되는 정책적 실패는 저출산 추이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림 1-2-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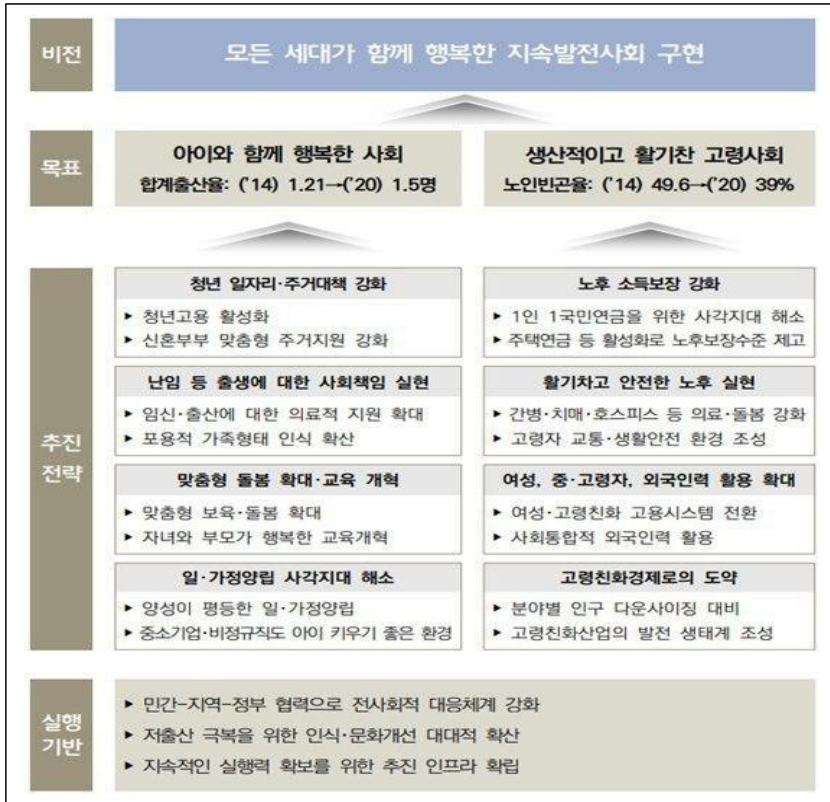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본]. p.9.

[그림 1-2-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 보건복지부(2010).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 플랜 2015. p.38.

[그림 1-2-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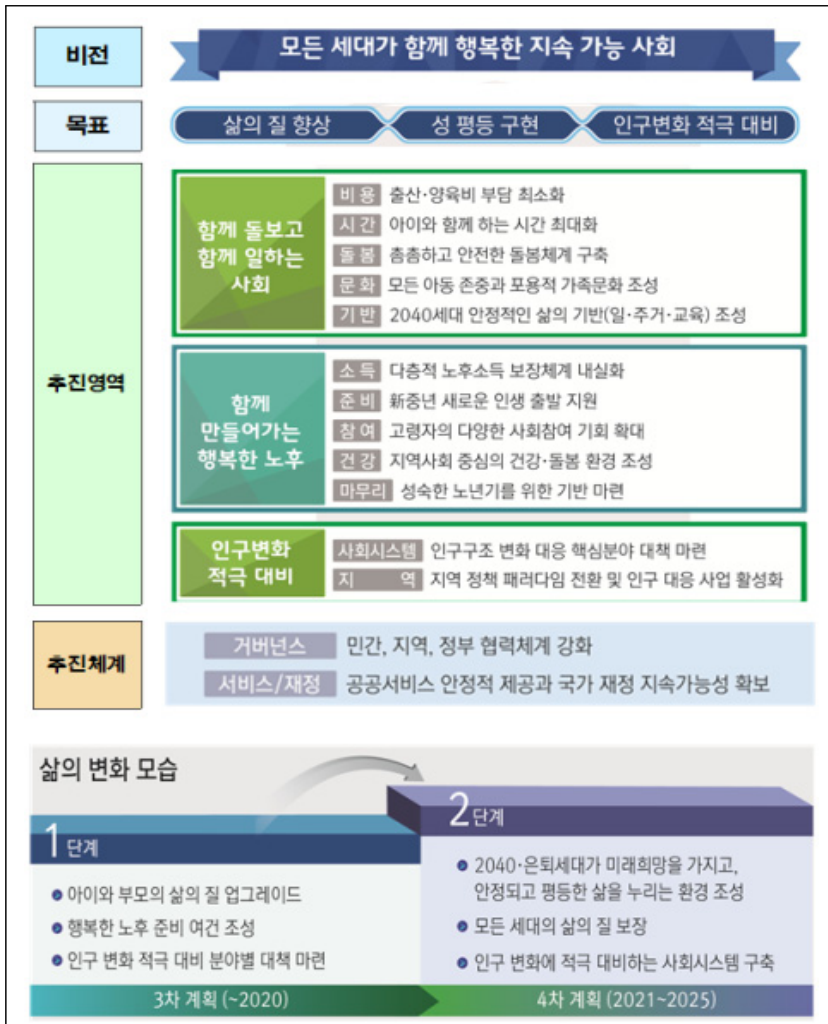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수립 당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소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미혼 남녀 간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단체 맞선인 ‘만사결통’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김병규, 2015. 10. 18.).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단순히 남녀 청년들을 “맺어 주는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더하여 2016년 12월에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의 수를 시

군구별로 표시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에게 ‘우리를 가축 취급한다.’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출산력’ 지표와 ‘고학력 여성의 하향 결혼’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보고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출산주도성장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들이 본인이 행복하러 출산을 기피한다.” 등 잇따른 정치인들의 발언은 현행 인구정책이 청년, 특히 여성 청년들에게 출산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인식을 낳게 하였다(이소영, 2018; 주간경향, 2017.03.14; 한겨레, 2018.09.05; 세계일보, 2018.09.10). 이런 비판과 맞물려 1~2차 기본계획에서도 ‘2011~20년까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목표로 함으로써 출산율을 빠른 시기에 회복하겠다는 단기적인 성과주의적 발상과 및 출산율 지표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계획에서도 여전히 2020년 1.5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의 흐름과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출산율 제고라는 수치적 목표만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출산율을 중시하는 한국 인구 정책의 흐름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1994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이후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정책적 개입은 ‘개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 조정을 유도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우해봉·장인수, 2017). 이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인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발표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였다(이윤경, 2019).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서의 핵심은 출산율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중요한 지표 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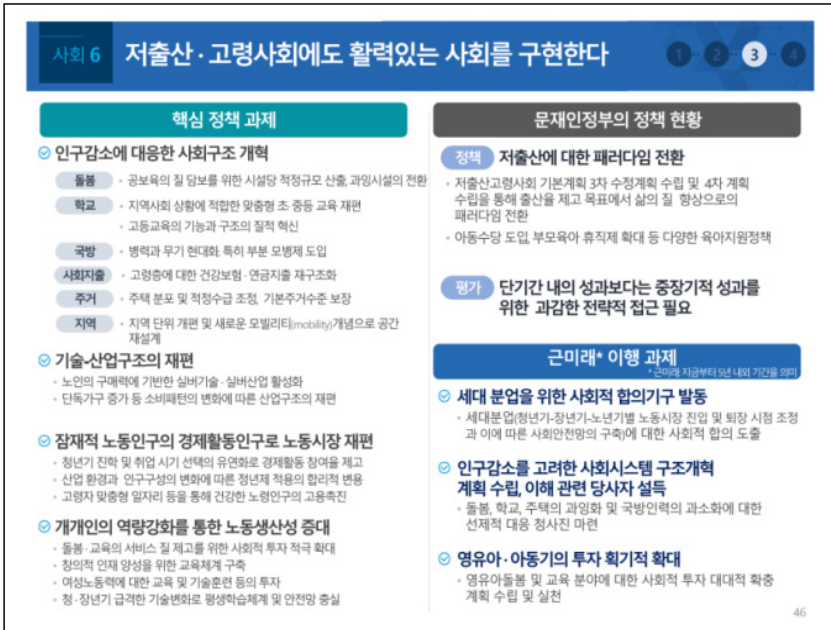
하나지만, 앞으로는 출산율 제고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림 1-2-1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

[그림 1-2-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중 인구정책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p.46.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이어 2019년 12월에 발표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타난다. 인구 감소를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식하되, 인구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육아지원정책과 돌봄에서부터 학교, 국방, 사회보장, 주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강한 고령인구의 고용을 촉진하며 여성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영유아·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의 흐름을 보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

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이를 탈피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90년대까지 높은 출산율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큰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처럼 지금의 저출산 문제도 국가 위기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우해봉, 2018).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인구문제와 정책들에 있어 개인이 느끼기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인구대책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갈수록 저출산에 이어 인구유출까지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의 인구감소현상에 대해 거시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마련하면,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상립, 2014).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 중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요하는 예산은 연간 약 4조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6).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저출산 대책이나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와 같은 고령화 정책들을 하고 있다. 대전 광역시는 ‘썸남썸녀 내 짝을 찾아라’와 같은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효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2016). 다문화가족이나 어르신이 많은 충남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정책 및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출산장려금’이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 <표 1-2-5>를 보면 서울 내에서도 출산장려금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진구에서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심지어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출산장려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지 한시적으로만 얼마 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청년들 입장에서 출산이란 돈 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노동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출산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 간 인구유입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신설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까지 부담이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표 1-2-5〉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서울특별시 자치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서울시 내 순위	(단위: 만 원)	
							조건	
강남구	20	50	100	300	300	3위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강동구	10	20	50	100	100	5위	서울 강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강북구	0	30	60	60	60	17위	서울 강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강서구	10	50	100	150	200	5위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관악구	10	20	30	50	100	5위	서울 관악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관악구 거주	
광진구	10	30	50	100	500	5위	서울 광진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구로구	0	30	60	200	200	17위	서울 구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금천구	0	50	70	100	100	17위	서울 금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노원구	0	20	50	100	100	17위	서울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도봉구	10	30	50	100	100	5위	서울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동대문구	0	30	50	100	100	17위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동작구	30	50	100	200	200	1위	서울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마포구	10	50	100	300	500	5위	서울 마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서대문구	10	20	50	50	50	5위	서울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서초구	0	50	100	100	100	17위	서울 서초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서울특별시 자치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서울시 내 순위	조건
성동구	0	20	100	150	150	17위	서울 성동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성북구	10	30	50	100	100	5위	서울 성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송파구	0	30	50	100	100	17위	서울 송파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양천구	0	50	70	100	100	17위	서울 양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영등포구	10	50	300	500	500	5위	서울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용산구	10	20	50	100	100	5위	서울 용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은평구	10	35	70	100	200	5위	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종로구	30	100	150	150	150	1위	서울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0개월 거주
중구	20	100	200	300	500	3위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중랑구	10	50	100	200	200	5위	서울 중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자료: 복지토털, 우리동네 출산 축하금,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에서 2020. 01. 28.에 자료 인출.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 감소, 적정 인구, 인구 위기 등 인구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뤄온 연구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인구정책의 한계와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만큼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구정책이 개개인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출산관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건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동 조사에서는 매년 설문지를 통해 임신·출산 실태뿐만 아니라 혼인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 양상도 함께 조사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김승권 외, 2009; 이소영 외, 2018). 동 조사의 주된 내용이 실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이상림 외, 2018)은 좀 더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동 조사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의 조사들은 여러 연령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경우,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 및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욕구 모니터링’은 중·고등학생 1,000명과 20대~60대까지로 구성된 다양한 연령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동 조사들로부터 청년의 인식을 알고자 하는 경우 연령대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청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3천 명 정도의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결혼(혹은 자녀)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등과 같은 인구와 가족 관련 인식에서부터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양적 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2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질적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이삼식 외, 2012). 그 전에는 양적 조사 위주였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질적 접근으로의 시도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특히 <표 1-2-6>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조사에서는 출산영향요인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성장과정에서부터 결혼, 자녀출산·양육과정으로 나누어 보았고, 분석의 수준도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정책으로까지 다층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즉, 출산을 선택할지에 있어 개인이 성장해온 주변 환경까지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살펴본 것이다. 실제로 동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나 가치관 등 그간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출산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2-6〉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대상

수준 (level)	생애주기		
	성장과정	결혼과정	자녀출산·양육과정
개인	· 가치관 · 교육 · 건강 · 경제활동	· 이성교제 · 결혼준비 · 결혼가치관 · 건강	· 자녀가치관 · 건강 · 소득수준 · 양육방법
가족	· 가족구성 · 가족관계 · 부모특성 · 가족환경	· 배우자의 연령, 배경 · 가족 태도 · 가족 지원 · 가족부양 부담	· 배우자의 연령, 배경 · 가족 지원 · 부부 관계 · 가족 건강 · 가족 가치관
직장	· 직업관 · 부모 직장	·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등) · 직장 변동 · 직장 관계 · 고용 환경	·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등) · 직장 변동 · 직장 관계 · 직장 지원
지역사회	· 지역 환경(특성) · 지역 문화 · 인프라 · 주거 환경	· 지역 환경(특성) · 지역 문화 · 지역 경제 · 관련 인프라 · 주거 환경	· 지역 환경(특성) · 지역 문화 · 지역 경제 · 관련 인프라 · 주거 환경
국가정책	· 정책 변화 · 교육 정책	· 정책 지원 (유형, 정도, 질수준 등)	· 정책 지원 (유형, 정도, 질수준 등)

자료: 이삼식·윤여원·이지혜(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정책보고서 2012-7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

관련하여 질적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는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당시 비혼으로 인터뷰한 당사자들이 40대로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청년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서부터 주변의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 육아관까지 개인의 가족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당사자의 언어로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표 1-2-7〉과 〈표 1-2-8〉에 나와 있듯이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이 결혼의향 및 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력, 학력, 직업 유무, 직업 안정성, 부모, 형제 관계, 아버지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주택가격종합지수, 경제활동 참가율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가족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치관 요인들이 결혼의향 및 결혼 연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1-2-7〉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김성준 (2015)	한국노동 패널 (만20~40세 남녀 총 423명)	· 학력 · 경제력 - 직업 유무 - 직업 안정성 - 월평균 소득 - 만 14세때 가정형편 · 탐색비용	결혼 시기	· 여성 :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확률 낮아짐 · 남성 : 취업자일수록 상시직일수록 결혼할 확률 높아짐 · 가정형편 낮을수록 결혼할 확률 낮아짐 · 형제 수 많으면 결혼확률 높아짐
김중백 (2013)	20~44세 미혼남녀 3,314명	· 성별 · 연령 · 부모와의 동거 · 부모의 이혼 · 형제 관계 · 교육 · 취업 · 가구수입 · 부모경제지원 · 가치관 변수 (남녀성역할, 자녀가치)	결혼 의향	· 성별 : 여성이 남성보다 · 연령 : 33~44세가 20~24세보다 · 부모가 이혼할수록 -> 결혼의향이 낮음 · 취업할수록 결혼의향 높음
김혜영 ·선보영 (2011)	29~44세 미·기혼 여성 1,500명 설문조사	· 연령 · 교육수준 · 직종 · 직장만족도 · 지원정책 종류	결혼 의향	· 연령 낮을수록 · 교육수준 낮을수록 · 블루칼라 집단일수록 · 직장 만족도가 낮을수록 · 직접적 지원정책이 있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문선희 (2012)	여성가족 패널자료 2차년도 (824명의 미혼여성)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고용상태	결혼 의향 기대 결혼 연령	· 연령이 낮을수록 · 가구소득 낮을수록 · 취업중일수록 결혼의향 높음 · 연령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 높음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한국노동 패널조사	· 학력 · 취업여부 · 직종의 지위	초혼 시기	· 남성 - 1998년 이후 - 고학력일수록, 취업할수록 결혼시기가 빠름 · 여성 - 1997년 이전은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결혼시기가 빨랐음 - 1998년 이후 취업할수록 결혼시기 늦어짐
이만우· 김시광· 김란영 (2012)	한국노동 패널조사 (2008년 기혼된 사람들)	· 부모의 경제적 의존 · 부모와의 동거 (=경제적 지원)	결혼 연령	· 경제적 의존은 영향 없음 · 부모와 동거할수록 결혼연령 빠름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패널 (1~7차)	· 성별 · 아버지 교육수준 · 교육수준 · 거주지역 · 일자리여부 · 평균임금 · 일자리 유형	결혼 이행	· 남성: 35세 결혼 이행률 가장 높음 - 취업률 높을수록 - 임금 높을수록, 결혼 이행률 높음 · 여성 : 33세 결혼 이행률 가장 높음 - 취업률 높을수록 결혼 이행률 높음 - 임금은 영향 없음
오창섭· 최성혁 (2012)	시도별, 패널자료, 노동패널 자료	· 임시직 비율 · 주택가격종합지수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15~39세 인구수	혼인율 초혼 연령	· 임시직 · 실업률 높을수록 · 전세가격이 높아질수록 - > 혼인률 감소 · 임시직 · 실업률 높을수록 · 전세가격 높을수록 -> 남성 초혼연령 증가 ·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15~39세 인구 증가는 남성 초혼연령 하락시킴

자료: 최효마·유혜마·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보고 2016-19), 육아정책연구소. p. 31. <표 II-2-1>.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추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가족계획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난의 심화와 결혼 및 출산 시기의 지연은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취업과 결혼 및 출산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훈민·김중백(2013)은 청년들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취업, 특히 괜찮은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결혼뿐만 아니라 첫 아이 출산 확률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이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2019)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업 연령이 1세 낮아질수록 첫 아이 출산확률은 1.9% 상승하고 출산연령은 평균적으로 0.3세 낮아진다. 이처럼 취업 및 경제력과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홍준·현성민(2010), 안태현(2010), 박기남(2011), 유계숙(2013), 한영선(2015)의 연구에서도 그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표 1-2-8〉 가치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연령과의 관계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김중백 (2013)	20~44세미혼 남녀 3,3,14명	· 성별 · 연령 · 가족배경 · 사회경제적 변수 · 가치관 변수	결혼의향	· 성별, 연령, 취업효과 통제 후, 남녀성별가치관, 자녀가치관 높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김혜영· 선보영 (2011)	29~44세 미·기혼 여성 1,500명	·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결혼적령기 · 결혼의 조건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의향	· 결혼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 전통적 자녀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 높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할수록 → 결혼 의향 낮음

저자	분석 자료	분석 변인	종속변수	분석결과
문선희 (2012)	여성가족 패널자료 2차년도 (824명 미혼여성)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고용상태	결혼의향	· 독립성, 자신의 성취점수가 낮을수록 · 전통적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 결혼의향 높음
기대 결혼 연령	· 진보적 결혼 가치관을 가 질수록 · 부부관계 가치 관이 평등할 수록 기대결 혼연령 높음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고용상태	결혼의향	· 연령이 낮을수록 · 가구소득 낮을수록 · 취업중일수록 → 결혼의향 높음
			기대 결혼연령	· 연령이 많을수록 → 기대결혼연령 높음
이성희· 권현수 (2015)	2012년 사회조사자료 (30대 미혼여성 529명)	· 거주지역 · 연령 · 교육정도 · 가족관계 · 가족관 ·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 · 경제활동 여부	결혼의무	· 연령 낮을수록 · 이혼에 반대할수록 · 재혼에 찬성할수록 · 보수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 경제활동 할수록 (35-39세만) →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 이 높음
임선영· 박주희 (2014)	30,40대 미혼남녀 300명 (서울근교거주)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월수입 · 부모와의 동거 · 가족가치관 ·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	결혼의향	· 연령이 높을수록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 결혼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 수록 → 결혼의향 높음
진미정· 정혜은 (2010)	2005, 2009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미혼남녀 5,894명)	· 결혼의 필요성 · 혼전 동거 동조성 · 자녀 필요성 ·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결혼의향	·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을수록 · 전통적 성역할태도 가질수록 → 결혼의향 높음
			결혼 희망 연령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결혼희망연령 낮음 ·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 록(여성) 결혼희망연령 높음

자료: 최효마·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보고 2016-19), 육아정책연구소. p.35. <표 II-2-2>.

일자리 외에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양문희(2018)에서는 육아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결혼 기대감이나 가족 가치관의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호정화(2014)는 청년들의 혼인 및 거주형태와 결혼 가치관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즉, 비혼 1인 가구원이 다른 혼인 및 거주형태 집단에 비해 탈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경섭(2018)은 배우자, 부모, 며느리, 사위로서 기혼자가 지게 되는 가족 형성의 의무적 부담이 청년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여성 청년들이 적극적 사회 진출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권하는 주변의 압력에 대항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아름(2018)의 경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의 경제적 형편, 양육태도, 1명 이상의 형제의 존재 등과 같은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진미정·정혜은(2010)은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들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당위적 규범의 영향력보다 정서적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결혼의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밖에도 정우영·조형숙·안혜준(2019)의 경우,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한 고용시장에서의 고군분투하기’, ‘평생 불가능한 내 집 마련의 꿈’ 등이 결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 문제가 가족 형성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은 여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이삼식·최효진, 2018; 변수정·조성호·이지혜, 2018)

이처럼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이끄는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일자리나 소득, 주거 문제와 같은 경제

적 요인에서부터 정서적 가치관, 가족 관계, 주변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사실,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선택은 이 중 어느 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년들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갈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청년이 살아온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는 주로 양적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현상의 주체로 여겨지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민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조명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위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조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청년들의 언어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1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구 위기’

제2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제3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령화

제4절 소결

3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 청년들의 생각

제1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구 위기’

1.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은 ‘인구 문제’, 혹은 ‘인구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표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와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넘어 “인구 구조 부족”, “(출생률이) 너무 적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저는 딱 듣자마자 인구 구조 부족 문제?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G6-1, 수도권 비정규직, 25, 여]

인구문제 딱 했을 때, 출산률, 출생률이 적은... 너무 적어지는 것? 이제 1도 안 된다고 들었던 게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중략) 약간, 그럴 만 하지.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I1, 수도권 정규직, 26, 여]

저는 저출산, 저출산 문제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중략) 저도 주변의 형 누나들 보면 결혼을 빨리 하기보다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고,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즘에는 YOLO LIFE라고 해서 혼자 즐기는 문화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들 늦은 결혼을 하

거나 솔로가 좋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인구 문제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처음 들었는데, 초등학교 수가 막 3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 태어난 출생자 수가 적다, 아니면 이혼한 사람들의 수가 많다** [G2-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대략적으로 저출생과 네... 여러 가지 네, 저출생 관련해서 보통 많이 들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이제, **신생아 수는 줄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네... [I8, 수도권 정규직, 29, 여]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나온 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18년도에 평균 영점 영 몇으로 해서 마카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그걸 보면서 실감이 됐고, 그래서 백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도 올해도 영 프로 대라고 들어서 실감을 했어요. [G11-3,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저도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생각이 나고요, 앞 분과 비슷하게 오면서 봤었는데, 유일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초고령시대로 진입한 나라가 저희가. 그래서 한 명 꼴도 안 낳는다고 들었거든요. [G11-1, 강원도 비정규직, 26, 남]

‘인구 위기’에 대한 언급에서는 ‘들었다’, ‘보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뉴스”나 “기사” 등 언론은 참여자들이 인구 문제를 접하는 주된 경로였다.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의 실제 인식과 문제화 방식 역시 언론 보도,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 정원, 이제... 신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더 적어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제 구십, 제가 구십 년대 대학 법이 개정이 돼서 그 때 기준으로 70-80% 입학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학교가 설립됐다고 가정하면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도 20% 넘게 빠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어요. [G1-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언론에서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들? 그냥 유발 하라리의 책들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걸로 기억해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이러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인구 위기’ 접근 경향은 청년들의 ‘인구 위기’ 문제의식의 실제 체감 정도와도 연결된다.

네. TV 뉴스에 나올 때도 뭐... 좀 더 딱 사실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의견이 첨가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기사 같은 것도 이런 얘기 봤을 때는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지금 당장 문제는 당장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에 말했듯이 딱히 잘 모르겠어요.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 [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그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다” 라는 참여자 [G11-4]의 표현은 연구 참여자 청년들이 ‘인구 위기’에 대해 드러내는 태도의 한 갈래를 잘 보여준다. ‘인구 위기’가 문제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해나 문제의식은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2.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구 위기’

그렇다면 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 위기’의 양상은 어떤 모습일까? 본 항목에서는 청년들의 ‘인구 위기’ 체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는 ‘인구 위기’의 요소로 지적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현상 자체가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체감이다. 두 번째는 ‘인구 위기’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서 느끼고 있느냐와 관련된 체감이다.

가. 인구 위기의 요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체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체감 자체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참여자들은 주변이나 일상에서 접하는 사례(지인인 다자녀 가구, 산부인과, 사람이 많은 장소)와 일자리의 부족 등을 근거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선 애들을 너무 많이 낳거든요. 도대체 왜 저출산일까, 내 주변에는 애들 최소 둘 셋씩은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한 1년된 사람들이 아직은 없지만 4-5년차인 분들은 최소 둘 셋씩 있는데, 왜 저출산일까 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엔 얘기가 너무 많은데. [G5-1, 수도권 비정규직, 27, 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체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쨌든 통계치로 나오든 거잖아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어... 그냥 이렇게 주
말마다 어디 가면 항상 사람이 많은 거예요. (웃음) 이미 이렇게 충분
히 많지 않나. 왜 위기라고 자꾸 하지? 이런 거였고.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저는 직접적으로 느껴보진 못했어요. 어... 저출산 뭐 이렇게 하는데,
산부인과 가보고 하면 그냥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뉴스 보도
하는 게 자꾸 저출산, 노령화 이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내 주변엔 애기가 너무 많”(G5-1)고, “산부인과 가보고 하면 그냥 보
기에는 많은 것 같”(G9-4)다는 참여자들과 달리, 인구 감소, 저출산, 고
령화를 체감했다는 참여자들은 주변과 일상에서 새로운 조류, 인구 구조
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참여자 [I3]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지
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아이는 안 보이고 노인들만 보이는 현
상”을 본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딱 탔을 때 제가 애기 데리고 한 두 번씩 지하철
을 타면 노약자 석에 앉을 때 거기가 완전 포화예요. 그래서 그 앞에
노인분들이 막 서있으세요 앉으려고. 그런데 제 아이를 보면서 요새
아이 보기 정말 힘든데... 노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그냥
체감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는 안 보이고 노인들
만 보이는 현상이 눈에 되게 띄어요.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와 인원은 중요한 체감 지표로서 언급
된다. 조카(G12-1)나 동생(G1-2), 후배(G1-5)의 사례와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차이를 느끼고, 인구 감소를 느꼈다는 것이다.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 **제 조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면 반이 5반, 4반 이렇게 까지 밖에 없고 한 반에 인원도 스물다섯 명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확실히 많이 적어지고, 앞으로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저랑 제 동생이랑 두 살 차이 나는데 다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심해서 이제 동생 반에 몇 명이 되는지 하고 물으면? **저 때 학년이랑 한 반에 세 네 명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G1-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저출산이나 인구 문제 뭐 이런 거는 학교 수업시간에 좀 그나마 접했는데 그걸 체감하게 된 거는 후배들 반 인원수가 스물 몇 명 된다고 했을 때 좀 놀랐었는데.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관련된 전공 (교육학 등)을 가진 참여자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강하게 체감한다고 밝힌다.

전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남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체감해요.** 확실히 ‘학급 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확 되게 나오고 학생 수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제가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아무래도 좀 초등학생들이 인구가 많이 적어지고, 이것저것... 보다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15]

줄어들고 있구나는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공하는 게 교육학 쪽으로 전공하고 있는데, 그럼 학생들을 많이 접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반에 갓을 때 행하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대부분 아이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 외동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걸 보면 인구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중략) 이미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고, 와 정말 학생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애들이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선생님 더 밑에는 애들이 없어요”, “학년에 내려갈수록 반 애들이 더 더 없어요.” 라고 하는걸 보면...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주변 지인들이 실제로 비출산을 계획하는 것을 보며 저출산을 체감한다는 언급도 나타났다. “결혼하는 친구들 중에 열에 여덟”(G12-2)이 비출산 의사가 있고, 결혼한 지인들이 “정말 아이를 갖지 않”(G5-2)는다는 것이다. 참여자 [G12-4]는 “여자 친구들” 중 비혼주의 성향의 친구들이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제 나이 또래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데 그 결혼하는 친구들 중에서 열에 여덟은 나는 아직까지 아이 생각이 없고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다, 라는 의견이 많은걸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정말 아이를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G5-2,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제 친구들도 결혼 적령기이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는데, 보면 거의 비혼주의 친구들이 많아요. 여자 친구들. 굳이 결혼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그런걸 보면 인구문제라는 게 와 닿는 게 그런 면인 것 같아요.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체감에는 지역적인 차이도 언급되었다. 참여자 [G6-5]는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의 경험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경험을 비교하여 지방 소도시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진술한다. 참여자 [G10-1]는 “관광도시가 아닌 지역들”의 적은 인구를 체감하였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참여자 [G2-1]는 지역에 “마을이 하나씩 없어지”는 현상을 제시하고, 아파트 분양이라는 사례를 들어 지방 대도시 역시 인구가 적다고 언급한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제가 서울 살았을 때 느꼈던 거고, **언제 한번 나주라는 소도시에서 한 달 동안 산 적 있었는데, 거의 젊은 사람이 지나다니다보면 거의 저 혼자라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 가다 보면 다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튀게 입고 다녀서 라거나 그래서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젊은 사람이 그 시내라는 곳에 저 하나만 돌아다녔던 거예요. (중략) 만약에 이게 우리의 미래라면, 지금보다는 우리의 미래라면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고흥이라든지 강진 이런, 우리가 흔히 **관광도시가 아닌 지역들을 가면 굉장히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음...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음... ‘인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체감이 확실히 되죠.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지역에 보면 지역에 마을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구가 젊은 세대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인구가 어쨌든 감소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가보면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이들은 지역의 공동화 사례가 대도시나 수도권 등에 비해 심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해당 사례를 통해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상 자체를 체감하고 있었다.

나. 사회 문제로서의 인구 위기 체감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위기’, 곧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서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진술이 많았다. 참여자 [G12-4]는 인구 감소 현상을 “1인 가구”, ‘혼밥’ 문화 등과 연관지어 상황에 맞는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적응”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1인 가구도 되게 많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문화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인구 위기’를 자신의 일상과 연결하지 않는 태도는 여러 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참여자[G1-4]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해가는 게 없으니까”,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해 가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 같아요. 당장 어떻게 된다가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게 어떻게 오를지 예상치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G1-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G4-1]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 특히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G1-2]는 걱정은 되지만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인다고 밝혔고, 참여자 [G1-5]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 학술적으로 배웠던 경험이 있음에도 당장 와 닿지 않는 문제라고 느꼈다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건가요?”).

저라고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사는 건 아닌데 그냥 인구가 줄고 있다는 라는 건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인구가 주는 거가 뭐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 물론 연금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줄면 부양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평상시에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G4-1, 수도권 정규직, 32, 여]

걱정이 되지만서도 일단 제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신경은 안 쓰여요. [G1-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저도 지금 당장 와 닿는 게 없다 보니까 저출산을 접했을 때. ‘학업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배경으로 했을 때는 국가 전반의 위기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 닿지가 않아서.

(중략) 지금 학생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와 달는 문제나 이런 게 없다보니 교수님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건가요?” (전체웃음)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의 현상이 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라는 것은 인식하나, 개인적 차원에서 위기임을 체감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자주 등장한다.

참여자 [G2-3]와 [G5-4]는 인구 위기가 정부 차원에서 위기일 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납세 인구,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자신의 문제로는 느끼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G2-3]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는 “오히려”라는 표현과 함께 취업률을 언급해 생산인구의 감소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취업 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인구위기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위기인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 인구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는 위기인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오히려 취업률이나. 그리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되지, 이제 뭐 그렇게... (웃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G2-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저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인구 위기 이야기하는 건 와 달는 건 국가, 정부기관이겠죠. 정부 기관에서 세금 걷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위기라고는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G5-4, 수도권 비정규직, 28, 남]

참여자 [G6-5]의 경우 “청년”을 호명함으로써 인구 위기를 둘러싼 세

대 간의 긴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I9]는 이를 더 명확하게 진술한다. 저출산을 ‘위기’로 보는 것은 노년층이고,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출산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자신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 정작 저출산은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라는 게 누구한테의 위기인지는 저희가 아직 잘 알 수가 없어서
국가에게 위기인지 아니면 청년 자체에게 위기인지가 궁금해졌어요.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네, 위기론이라고는 물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와 닿진 않는 것 같아요. (중략)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대부분 노년층이고, 실제로 (출산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위기 담론이 정부와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느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 [I6]은 정부와 언론이 ‘인구 위기’에 대해 “음모 까진 아니”지만 “세뇌를 시키려”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인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 [G6-6]은 단순히 ‘저출산’을 이야기하는 대신 출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I6]과 [G6-6]의 진술은 이들이 ‘인구 위기’ 담론 자체를 일종의 유도와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의 사회문제화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저는 인구가 너무.. 지구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생각나고...

살짝 음모론?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중략) 막,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냥 그... 위기론, 실제로 크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견, 그런 입장에서는 좀 뭔가 과장돼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식의 음모론? 그런 느낌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중략) 아, 처음에 음모론 얘기했는데, 음모까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현수막도 걸려있고 좀... 자주 나오니까 (웃음) 진짜... 세뇌를 시키려나 보다. 이런 생각.”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애기 낳아라... (다 같이 웃음)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참여자 [G11-2]는 이러한 제감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 늘어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와 닿지 않거든요. (중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인구가 늘면 왜 좋은지, 줄어들면 뭐가 부족한지. 줄어들어도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서 생활해보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G11-2, 강원도 비정규직, 33, 남]

이외에도 환경 문제와 연관지어 ‘인구 위기’를 바라보는 의견도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환경에 좋지 않고, 따라서 인구 감소 현상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측이다.

(인구 위기 담론에 의문을 표하며) (인구가) **충분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인구 위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편이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지금 지구가...(웃음) 이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전반적인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지금 지구를 지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긴 호흡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의 현상,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은 그 문제화 방식에 의도가 있다고 느끼거나(G5-5), 특정한 측면에서의 ‘위기’일 뿐이라고 받아들였다(G5-3).

저출산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길게 시대를 놓고 보면 전쟁이 끝나면 항상 베이비붐 이런 세대,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전체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 같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의도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저는 저출산이 위기라는 것 자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인 것 같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커서 노동할 수 있고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보는 것만 같아서 과연 위기일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이긴 하잖아요.**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3. ‘인구 위기’의 대처와 전망

사회 문제로서의 ‘인구 위기’ 체감과 인구 위기 담론에 대한 태도는 ‘인구 위기’에의 대처와 전망으로 연결된다. 정부와 국가의 해결 의지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그 중 하나로, 참여자 [I9]와 [G1-5]의 “자초한 꼴”이라거나, “으유, 국가 탓이지.”, “이제 와서?”라는 표현에서는 정부에 대한 책망과 시큰둥함을 읽어낼 수 있다.

원가, 다 자초한 꼴이다?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티비뉴스나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처럼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으유, 국가 탓이지.’ 라는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와서? 뭐 이런 느낌?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이민 개방 정책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치안으로 제시한 입장에는 현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문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국내에서 출산율 제고에 골몰하는 대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국제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접근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참여자 청년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이는 2-2)에서 진술된, 인구 위기 담론을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유도와 압박으로 느낀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G6-6]의 “왜 이런 식으로 되게 해결을 하지? 왜 애만 낳으면, 왜 애기만 낳으라고 하지?”라는 발화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이상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백만

명 시대가 넘은 지가 언제데, 그리고 **호주나 이런데 보면 되게 외국인 노동자 부족하니까 거꾸로 오라고 하잖아요**, 캐나다나 이쪽. 우리 나라 이미 충분히 외국인 많고, 쯤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근속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면 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중략).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게 해결을 하지? 왜 애만 낳으면, 왜 애기만 낳으라고 하지?**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데?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G6-6]은 또 다른 대처 방안으로 노인 인구의 활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출산 증진이라는 방향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게 애기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지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인구를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애기 안 낳는다. 왜 안 낳느냐.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G5-3] 참여자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현재의 추세를 인정하고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G6-6] 참여자의 현실 인식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아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잘 아이를,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인구 위기’의 현상들이 해결되는 미래를 그린 참여자들에게서도 인구 감소 사회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인구 감소’ 자체를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적응해야 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참여자 [G6-4]의 긍정적인 전망에는 이주민의 유입과 AI 발전 등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등장하는데 특히 AI 등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게 된 사회(“인간은 약간 좀 많이 쓸모가 덜해지지 않을까”)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요새는 세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이주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유입되면 인구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약간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 그 위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그 부양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 약간 좀 많이 쓸모가 덜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인간이 약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게 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게 약간 다 기계화가 돼서 알아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참여자 [G3-3] 역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인구 유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G3-3]는 인구집약적인 산업이 고부가가치의 기술 위주 산업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부”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인구 절벽에 진입한 상태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보는데 사실, 다른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사실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노동력이

집약되어서 투입되어야하는 산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굳이 인구 수에서 지금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 대신에 어떤 고부가가치의 기술이 있으면 인구가 줄어도 지금의 부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하고. 결국 문제는 그 부를 재분배를 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그 느낌이 확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G3-3, 수도권 정규직, 25, 남]

제2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이 절에서는 구체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체험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왜 출산하지 않는가

저출산에 대한 언술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의견들을 저출산 현상을 조망적 관점으로 파악하거나, 자신 혹은 주변 경험을 토대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가. 조망적 관점

과거의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서 저출산 현상의 기인과 원인을 찾는 경우, 조망적인 관점으로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13]는 과거 산아제한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출산 현상을 개괄하며

“여성분들의 인권신장”을 저출산 현상의 발생 원인 혹은 유지 원인으로 언급한다.

저출산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 인구산악제한정책부터 시작이죠. 그 때부터 점점 신생아들이 줄어들고 요즘 들어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다출산을 장려하긴 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죠. 이직도 이직이고 뭐... 여성분들의 인권신장도 신장이니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일단 임신기간 동안에는 최소 1년은 단절이 되니깐 그것도 좀 문제이기는 하죠. [I13, 경상도 정규직, 33, 남]

2절에서 인용되었던 [G5-5] 참여자의 의견 역시 저출산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류될 수 있다.

저출산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길게 시대를 놓고 보면 전쟁이 끝나면 항상 베이비붐 이런 세대,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전체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 같고.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참여자 [G11-5]는 저출산이 당연시되어가는 이유로 침체된 국가 경제 상황을 꼽는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의 열쇠 역시 경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참여자 [G11-4]는 비슷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가 언제까지나 침체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해소까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힘들어지다보니까 저출산은 거의 당연시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제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출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은 느낌.** [G11-5,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경제가 계

속 침체되어있지 않을 거고,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아지면 이 저출산 문제는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중략)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처럼 많이 낳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조망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이야기한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남성 참여자였다. 이는 (저)출산을 ‘자신의 이야기’로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저출산 문제를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참여자들은 자신 혹은 주변이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데 집중한다. ‘저출산’은 그러한 어려움에 뒤따르는 결과값이다. 즉 ‘우리는 왜 출산하지 않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진술에서는 1-1)에 비해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인 부담은 대표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참여자 [G12-2]와 [G12-4]는 아이를 낳고 기를 충분한 돈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다.

막상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낳지? 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낳으면 알아서 길러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알아서 길러지지? **왜냐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돈이 1억, 2억 정도는 필요하다는데...(중략) 저출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서울/경기권에 사는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과 본인이 합쳐서 세후로 한 달에 못해도 600은 조금 넘어야 아이 한 명을 부양하지 않을까. (중략)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내가 당장 평생직장도 안 되는 입장에서 **저출산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걸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하게 그런 정책들을 하니까, 당연하게 오는 것 같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당장의 소득만 보더라도 지금 결혼자금 모으는 것만 해도 바쁘고, 그 후에도 신혼살림 정리하고 안정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빨리 아이를 가지겠어요. (중략) **저출산(문제)을 봤을 때 낳으면 좋죠. 아이를 낳고 키우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예요**.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만족과 연결되는 기회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여자 [G12-1]은 지금 현재의 삶의 질을 돈이 많이 드는 출산과 육아를 대비하느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G12-2]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하는 소비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이러한 소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를 키우는 비용 중 어느 하나에 무게를 실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됐을 때 낳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좀 어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있지도 않은 애를 위해서 내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내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제 주변 20대 초중반 친구들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습관이 그 정도로 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소비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이런 네일아트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을 꾸미는 비용도 점점 많아지는 거고. 이걸 그냥 내가 나를 만족해서 하는 건데, 그런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경제적인 부담은 출산 후 노동수입의 변동과도 관련된다. [G10-4]는 여성 노동자로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닥칠 경제적 위기를 걱정하였다.

저는 평생이 보장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경력 단절과 이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G10-4]의 우려는 [G2-3]이 언급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참여자 [I3]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노동시장 안에서는 공백으로 처리되고, 여성 노동자가 이후의 커리어에 지장을 받게 되는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결혼해서 그러면 회사/기업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개인적인 상황들을 주변에서 겪은 것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애 낳으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깐 너무 무책임하고. [G2-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출산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은 쉬어야 하거든요? 애기 낳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3개월이 뭐야, 진짜 저는 1년은 진짜 쉬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경력단절에 대해서 오는.. 그

런 게 너무 많으니까... 불합리하게... 아무도 여기를, 이 일을 안 했던 기간을 쳐주지 않고. 공백기가 되는 거죠 진짜. 이거는 육아휴직을 한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회사가 있어도 육아휴직 함으로써,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법으로는 육아휴직 해가지고 승진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라고 적혀 있지만 암암리에 조직에서 육아휴직 했으니까 패스라고 눈대중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구요. 말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했으니까 승진에서 밀리고, 말하지 않아도 육아를 한 기간은 공백기니까 너는 그 시간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참여자 [G2-1]은 경력 단절 문제를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결혼을 안 낳겠다는 이유가, 솔직한 이유로 기업에서 여자라고 하거나 임신했다고 하면 뭐 나가라고 하고 책상, 자리 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결혼을 안 한다고 하고 애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이러한 상황 인식은 2.에서 다룬 저출산 담론에 대한 반응으로 연결된다.

한국 사회의 부정적 면모가 육아 과정의 어려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서 지목되기도 하였다.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애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G5-4)이 아닌 사회에서 아이가 경험할 상처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낳아서 기를 때 저 집 아이도 학원 다니고 이 집 아이도 학원 다니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을 못 보내주고 이런 것도 마음이 아파서 못할 것 같

고,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아이한테 상처 줄 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저희도 어렸을 때 학원 다니고 경쟁해왔고, 솔직히 그 세상을 애가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애 낳고 싶은 세상이면 당연히 애 낳겠죠.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아직 딱 안 낳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애 안 낳는 걸 문제로 삼을 게 아니라, 애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아닌 걸 탓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G5-4, 수도권 비정규직, 28, 남]

이러한 인식은 단지 기우가 아님을 실제 기혼 여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I2]는 출산 이후 복직을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돌봄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그는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 때 그만뒀다가, 첫째가 한 6개월? 그 때쯤에? 다시 복직,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다시 다니다가 또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그 때 또 아이가 아프면서 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좀 저출산의 원인, 문제가 아닐까. 지금. 봐줄 사람이 없고, 자꾸 원아 폭력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I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2. 여성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담론

정부와 언론이 저출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여성 참여자들은 불쾌감,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표현한다. 이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I9), “그래서 어찌라고”(G2-5)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저출산 접근법, 저출산의 문제화 방식에서 압박감과 유도, 강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저출산, 저출생 관련 보도에 대해)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너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그냥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 기사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는 **그래서 어쩌라고**. [G2-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참여자 [G6-3], [G4-3] 는 저출산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저출산은 출산을 하는 주체인 여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G4-3]은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을 비난하고 싶은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다면 신랄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요즘에는 저출산도 저출생이라고 표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가임기 여성지도만 뿌리고 저출산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출산과 출생은 차이가 있잖아요. 출산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여성이 출산을 안 해서 "아 이기적인 년들 나빠서 그래 니들이 못해서 그래"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인구가 없다, 인구절벽이다, 출생률이 낮다'에 대해 '저출생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흐름이 있는 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앞선 1장에서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런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페미니즘 관련 집회나 강의가 주로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평등 이슈와 관련

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주지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하는 민감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참여자 [G4-3]은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한 여성을 “이기적”이라고 책망하는 매스컴의 태도에 불쾌감을 표출하였다. 언론의 이러한 접근은 여성에게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 [G12-1]은 언론의 접근에서 자신이 ‘인구 위기’,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에 “일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진술한다. [G2-5]는 언론 보도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나보고 낳으라고?”). 출산할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우려는 “늑장스”를 읽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지향하는 삶이 어떤 출산을 앞두고 있다든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비혼을 선택한 어떤 여성, 특정 성별이 이기적인 한 집단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그런 (저출산과 인구 위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좀 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 앞으로 이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저기에 일조하고 있나? 나도 저기에 포함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느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분이고.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그냥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 기사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는 그래서 어찌라고. 나는 집도 차도 없고 돈도 없는 직장도 없는데 나보고 낳으라고?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웃음) 저도 약간 무책임하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늑장스가 많다고 생각해서.”[G2-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아이를 낳으라’는 메시지에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뒷받침 없이 여성에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을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고 (G12-2), 아이를 낳은 후 제도적인 지원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것도 아닌 환경에서 (G12-2, 19), 인구 위기에 다른 방향의 해결 모색도 없이 여성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G6-6). [G6-6]는 국가에게 저출산 현상이 “문제”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저출산은 자꾸, 20대 여자, 저희한테 넘기잖아요. 너희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낳게 해줘야 낳는 건데, 낳을 상황을 절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낳지? 그리고 낳고 나서 모든 뭇은 저희잖아요. 피해는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부양해야 하는 것은 저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이 애에 대한 뭐... 제도적 혜택이나 이런 걸 줄 건가? 생각해보면 아니 애초에 말이... 애 데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 똑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저는 국가에서 ‘이게 되게 문제다’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인구 위기라고 (중략)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을 늘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어떤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는 않고, 마련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애기 안 낳는다, 그래서 뭐 여성들한테 이런 막 강요하고.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차별받아온 역사, 특히 과거 선별낙태의 주된 대상이 여아였다는 사실은 여성 참여자들로 하여금 저출산의 책

임을 다시 여성에게 지우는 담론에 더욱 분노를 표하게 하였다.

(저출산 보도) 기사나 뉴스를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저걸 저렇게 큰 문제처럼 말을 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유구한 여아 낙태의 역사나, 여성이 강력범죄의 대다수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제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이 많이 희생되어 왔는데 그런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로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니까 '지금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막 동감이 되진 않아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왜 백말띠라는 얘기를 들어? 그게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때문에 낙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세다고. 여아에 90년생이면 백말띠. 그럼 기가 셀 것이다. 그럼 낙태. 이꼬르 낙태. 었던 거예요. (중략)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낙태 짚게 해놓고 지금 저출생을 운운한단 말이야? 그렇게 출산율 제한을 해놓고? 말이 너무 안 되지 않아요? **90년대 생한테는 '엄마의 자궁에서 알아서 살아남아 보세요', 해놓고 이제는 여러분의 자궁으로 알아서 아이를 낳아 보세요.** (웃음) 말이 되나...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참여자 [I3]은 저출산 담론에서 여성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로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한다. 출산과 육아에 남성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남성의 문제로 다루는 관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관련) 설문지를 받았을 때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여성... 저출산의 문제를 다 여성에게만 보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다 여성한테만 국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왜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사실은 82년생 김지영이 나오는 것도, **여성들이 이런 힘듦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출산이 발생했다, 이런 인식이 많은 거잖아요. 왜 이게 여성들 때문이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육아휴직 하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기사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남성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출산을 해야 하고 너희들이 육아를 해야 한다’라는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왜 이걸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제3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령화

이 절에서는 ‘고령화’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경험과 인식을 ‘노후 부양’을 중심으로 둘러본다.

1. 고령화 시대의 청년: 부모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청년들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양’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청년 세대는 부모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자신이 미래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의심하며 부모세대를 어떻게 부양하며 버틸지를 고민하는 고령화 시대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예산? 복지 예산? 세금 문제로 부양... 젊은 세대들이 부양할 의무를 져야 되는데.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왜냐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은데, 노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을 얼마큼 책임져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은 문제의식이 느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14,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저는 나중에 말씀하신거랑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은퇴를 하고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저희도 노후 때 솔직히 다들 직장인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 한 달에 내는 것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내가 정년퇴임을 할 나이가 된다고 하면 과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생각이 들어요.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2. 청년들이 말하는 ‘노후부양’

노후부양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세대 간 부양, 부모님에 대한 부양, 나의 노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세대 간 부양

앞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세대 간 부양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직접 세대 간 부양을 물었을 때,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 부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세대를 부양하는데 대한 부담감이 자발적인 부양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화 속에서 나타난 부양에 대한 시각은 아래와 같다.

1) 세대 간 부양에 대한 긍정적 시각

부양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당위적으로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G10-3]과 [I6]처럼 나도 노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에 주로 기반하고 있었다. 나도 언젠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므로 지금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현재 노인 분들도 저희처럼 젊은 시대가 있었을 때 했었을 거, 계속 하지 않았나 해서. 그리고 살고, 이 세상에 사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죽고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G10-3, 전라도 정규직, 25, 여]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늙으니까. 저희가 늙으면 저희보다 아래 세대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웃음) 그런... 나중에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중략) 저희도 늙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노인 분들도 똑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중략)**저는 정부 차원에서 세금 걷어서 하는 부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특히, 이런 의견을 밝힌 [G10-2], [G10-4], [G2-5], [G5-4], [I7]과 같은 참여자들의 대답 속에서는 세금이나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 노인 지원을 위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큰 거부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G10-1]은 본인도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순간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이를 점점 먹다가 보니까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노인 개개인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쨌든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뭔가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나도 내가 언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뭔가 **젊은이들이 부양을 노인 분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활동하는 게 편하니까 부양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세금이라는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나도 알게 모르게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저도 청년세대가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약간 그게 반드시 제가 제 부모님을 나중에 부양하느냐 마느냐는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세대가 지는 부양의 의무라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저는 그 정도의 의무는 해야 하지 않나. 국가라는 게 뭐 사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관계를 쌓으면서 존속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고령인구, 나중 되면 초고령 인구가 많아질 텐데 초고령 인구를 부양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인권은 진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G2-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부양) 해야죠. 생산 인구로서 스무 살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세금을 냈고, 세금을 낸 걸로 정부가 돌아갔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생산 인구가 될 수 없을 때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G5-4, 수도권 비정규직, 28, 남]

공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주택에 입주하는 거에 대

해서 부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자녀가 성장했을 때에 자녀는 그 자녀가 혼자 큰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회 배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뭐.. 크지 않은 배려라 할지라도, 물론 모든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다 받았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인구문제나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도 다음 세대, 우리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서 연구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I7, 수도권 정규직, 33, 여]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을 해야 하는 건 노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나는 누리지 못할까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지만, 과연 내가 노인이 됐을 때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일까,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S

모든 젊은 세대에 의한 무조건적인 부양 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양 부담을 나누어서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걸 청년 세대가 초고령화 인구를 부양한다. 라고 뭉뚱그려 표현하 기보다는 청년 세대 안에서도 소득이 분명 많은 세대가 있고, 분명 적은 사람들이 있고 사실 학력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에 따라서도 갈리잖아요. (중략) 어떤 조건 이상이 충족된다면 나라에 조금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총, 청년층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조건에 맞지 않게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복지혜택을 주는 세부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G2-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2) 세대 간 부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전세대의 부양에 대해 당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청년세대의 상황보다 낮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양 걱정을 하기 보다는 우선 청년 세대가 본인의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게 부모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 노인 부양이라는 게 사실 제 문제로는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문제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사실은 지금 저희 2-30대 초반, 저희 부모님이 50대 내지 60대 정도 되는데, 아직도 보게 되면 사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의 부모님 세대한테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기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원을 하기 보다는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게,** 내지 부모님이 아직 저희 세대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세대 문제로 아직은 전 잘 와 닿지 않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청년 세대들이 자기를 돌볼 수 없는데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하나를 생각해보면, **일단 자기 앞길 찾는 게 부모 세대를 위해서 위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우리는 굉장히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그 장벽 안에 들어가서 **이미 윗세대들이 누렸던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보장이 안 되어있잖아요.** 노령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노령... 인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 후세대들이 져야 할 때 과연 이게 충당이 될까? 라는 생각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또한 부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사람도 있었다. [G1-5]는 너무 당연하게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세대 간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 내려는 것 같은 반감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G5-5]도 이런 식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부양을 당연시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지금부터 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노인세대를 우리가 부양해야 되고 마치 노인을 계속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막 교육도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된다. 라고만 하는 그 이야기를 받고 받으니깐 그게 더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 같기도 하고.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게, 당장의 청년 세대들은 그 노령층이나 중장년층이 경험을 못해본 상태에서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하는가 라는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서 부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너희 젊은 세대가 우리를 부양해야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상당히 반감도 많이 갈 것 같고.**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특히 청년들이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G1-4]와 [G6-4]의 답변으로부터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미 지금 노

인세대가 집도 보유하고 있는 등 청년세대보다 가진 자원이 많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었다. 세대 간 갈등의 근저에는 부의 재분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낸 만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세금을 났을 때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안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받아가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뭐 당연히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집이라던가 자산들이 많이 있어서 고걸로 계속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후 세대에서 가져가야 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지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많이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많이 안 뺏길 거 같아요. [G1-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저는 좀 부양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린 사람이 부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386세대들이 더 재산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도 가진 거 가지고 지금 청년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거기다가 뭐 부양까지 요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G1-5]와 [G4-5], [G9-2]와 같이 지금의 노인 부양 문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과거에 비해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가 지금 백세시대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의 60세와 지금이 60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다르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지금은 좀 악순환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 분들은 부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이를 들면 부양을 받아야 돼라는 인식이 박힌 건데. 실제로 생각하면 나 자신을 부양하는 건 나 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고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데 이거를 **지금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양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지.** [G4-5, 수도권 정규직, 26, 여]

특히 [G6-4]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청년들의 경우, 관심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새로운 커뮤니티들을 접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 외에 또 다른 방식의 공동체적 해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까지 확대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좀 그런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다들 좋아졌는데, 대부분 건강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왜 계속 그런 돌봄을 원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른 세대한테 원한다기 보다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어쨌든 지금은 세대 차이가 뭐 이렇게 세계화되고, 지금은 세대차이보다. 뭐 그 뭐지. 그 문화차이보다 세대차이가 훨씬 더 크다

고 들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은 좀 뭐 아예 단절되는 거는 좀 반대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결을, 문제 해결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3) 부양의 미래

- 새로운 노인의 삶

세대 간 부양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노인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세대 간 부양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의 노인 상은 낡았고, 노인 기준 연령, 정년과 함께 노인 일자리와 삶의 양상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는 기준을 좀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전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년연장이라고 한다든지. 예전의 노인의 기준과 지금의 노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인구, 이 패러다임에서 전체적인 수명은 이렇게 길게 늘어났는데 직업에 대한 수명 연장선 정년 65세 오십 몇 세 까지는 딱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수, 기준선도 이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새롭게 바뀌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어 굿나는 일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G1-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정년퇴직 같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노인 기준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한편,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예전에 비해서 노인이라고 해도 젊으시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그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그냥 정말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부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덜 내고 소득에 따라서, 그거의 소득에 따라서 해주던지 아니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부양은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법 자체가 이제... 요새는 그래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창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복지센터 라던가 이런 뭐... 학교에서 급식을 배식해 주신다거나 이런 일자리를 좀 늘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G8-3,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2, 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그 자기가 계속해 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페이를 4, 50대에 받던 페이만큼은 못 받겠지만, 좀 더 페이를 초년생 급으로 받으면서 자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1인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략) 제 생각은 이제 개인이 책임지고 세금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I10, 수도권 정규직, 27, 남]

근데 저는 노인 분들이 이제 60세면은 퇴직, 은퇴하시고 그런 정도인

데. 솔직히 60세도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게 비단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할 수 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진 두뇌나 지식이나 경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중략) 이 사람들은 이미 60세 이상은 다 일을 못해 라고 단정 지었고. 그 상태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무조건 부양을 해야 돼 이런 사이클로 자꾸 굴러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현재 55세에서 65세라고 해도 사실 요즘은 그 분들도 젊거든요. 충분히 일 하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 뭐, 의식이나 제도만 뒷받침 된다면 새로운 일로 뭐 노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부양받아야 할 세대라고 정의 짓는 것도 사실 좀 별로라고 보고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 기타 요인 : 기술의 발전, 복지제도 등

이 외에도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 제도적인 변화 요인이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G9-2]와 [G2-5]는 기계 등 기술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부양이라는 의미가 제 그 책임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들 세대가 온 것 같고, 기계가 그걸 대체할 거라고 믿고 이제 나아가 수밖에 없는 추세라 점점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건강 쪽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하게 되고 그만큼 생명이 많이 연장되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그거를 부양이란 묶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저는 그 부담이 조금 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인력은 기술이 충당할 수 있잖아요.** 약간 과도기를 지나면, 약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조화로운 걸 찾지 않을까. 물론 그 기간에 제가 겹쳐져 있으니까 걱정이긴 하지만. [G2-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G3-4] 참여자의 경우 세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은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등 사회 문화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점점 세대가 흐를수록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쯤이 되면 사실은 어떤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하는 직업이나 나의 삶.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더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또한 복지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G11-2]와 [G6-5]는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기대했다. 특히 [G11-2]같은 경우에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충분히 더 널 의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체제를 보게 되면. 그러면 뭐랄까, 기업에게도 받아야죠. 기업이 좀 더 많이 벌고 있고, 수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우리들이 부담하면 거부감이 크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복지 쪽으로 세금이 지출된다면 거부감이 덜 하지 않을까, **지금 유럽식으로. 대신에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이 점점 늘겠죠. 나중에 50% 정도는 내야 결국엔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교육이나 대신에 세금을 났을 때 체감이 되면 그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G11-2, 강원도 비정규직, 33, 남]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선 사회보장서비스의 문제고, 제가 노인..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사로 봤을 때 예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 세종시에서 노인복지관이랑 이렇게 그 주거복합공간? 이 생겨서 위에는 다 이제 어르신들 살고 아래에는 노인 복지관부터 다 있어서 그냥 **그 주거복합공간 거기에 입주만 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더라고요.** 뭐 문화강좌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게 부양이지, 만약 청년이 어떤 부양을 원하는지. 거기에 이제 뭐 건강보험을 열심히 내라든지 이런 거라면 다르지만 **이건 국가가 우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특히 [G5-3]은 노인들에게 교육이나 병원비 등에 대한 지출 걱정이 없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연금과 같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의 복지제도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언급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잘, 실제 노인세대가 겪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약간 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직접 주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복유럽처럼 거기는 이제 교육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국가에서 다 해줘서 딱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돈이 나갈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된 거고, 국가가 그런 차원에서 재정 차원에서 집중하고 복지 같은 혜택을 조금 더 늘려 가면 연금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커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주목할 만 한 점은, 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수록 제도적 발전에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본인의 현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노후와 같은 장기적인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G4-3]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오로지 국내에서의 해결책만 고수하지 말고 이민자나 난민을 위한 적극적 포용 정책을 펼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왜 꼭 누군가를 부양을 하는가. 왜 인구가 부양을 해야 되는가.’ 자본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으로 사람이 붙어서 했던 일을 이제는 기술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꼭 국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인구들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와서 지내고 있잖아요? 난민을 받는대거나. 여러 가지 포용정책을 통해서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나. 부모님에 대한 노후

세대 간 부양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로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자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자식으로서 부양

자신의 부모님의 부양에 대해서는 성별 및 지금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답변 양상이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아직 부모님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등 노후라는 시기가 너무 먼 미래다 보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대한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성 대학생 참여자들은 상당수가 본인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상황이 나아져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대학생 참여자의 경우에는 [G1-5]만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저희 부모님은 노후준비 했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언젠가는 제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도움을 받아서 컸으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 [G2-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마찬가지로 제 살길을 찾는다. (웃음) 그 이후로는 부모님의 살길도 함께 찾아야죠.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제가 제 앞길을 (웃음) 제가 누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아니라서 뭔가 취업을 하고, 취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 우리가 무조건 노동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도 돈이 있어야 부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의 일인 것 같아요**. [G2-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하듯이 가족이라는 것은 좀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고 부모님이 노후준비가 안 되시고 어렵다, 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빛이, **빛이었던 마음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도움을 드리기는 할 거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저희는 그냥 뭐... 여행이나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게 많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이제 퇴직을 하시면 아마 연금 그런 게 나올 텐데 그걸 노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도 좀 보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부양을 하고자 하였다. 이

성향은 비수도권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 ‘부양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부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3) 부양의 현실 - 경제적 어려움 파트” 참고). 경제적 수준의 부양은 가능하지만,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치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치매 인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따지고 본다면, 사회랑 같이 해결해나갈 문제지 개인한테 맡겨선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부양은 하지만, 어... 시설이나 이런 데에 부양을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부양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돌봐드려야 하는 거면 아마 요양원으로 보낼 거.. 직접 데리고 음.. 부양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G9-3, 경상도 정규직, 26, 남]

저도 부양은 할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살진 않을 것 같아요. 근처에 살면 살지, 같이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로 껄끄러운 면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옆집에 살더라도 같이는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면 저희가 **경제적인 면이 여유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드리고**.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언젠가는 저도 모아서 부모님이 힘드실 때 조금씩 보태드리는 그 정

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살아 숨 쉬는 동안 그냥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는 용돈은 충당할 수 있지만.[G10-3, 전라도 정규직, 25, 여]

2) 부모 스스로 해결

부모 세대에서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G1-4], [G1-2], [G1-3]과 같은 대학생들의 경우, 아직 부모 세대가 은퇴 전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는데 대해 더 부담이 없어 보였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많이 기대려고 하지 자체를 않으셨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고 사랑해 주는 거지 난 너에게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고.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난 내 보험이나 그런 거를 위 해하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들었고. 부모님은 자신들이 노후 대책을 부동산 쪽으로 해서 하고 계시서. 저도 경제학과라서, 점검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 웃기지만,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G1-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국민연금도 많이 넣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크게 갱판만 안치면 먹고 사시는데 크게 지장은 안 될 거 같은데. 사실 직업 선택을 할 때 적어도 창업은 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셨고. 저도 약간 창업을 하고는 싶었는데 망설여지는 감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 같아요. 그냥 크게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는 싶지는 않아요. 가끔은 빌릴지언정. 결혼자금 같은. [G1-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저희 부모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자녀는... 그렇게나 자녀를 낳아서 내 노후를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녀 자체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G1-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집단에서도 부모들이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부모들의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덜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부모와 노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I3)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부양이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약간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지금은 일도 하고 계시긴 한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언급이라든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거든요. 넉넉하신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개인적으로 부모님은 특별히 뭘 안 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저는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지금 벌여놓으시라 퇴직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도 많이 해놓으시고. 어떻게 우리끼리 둘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웃음)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또한 앞선 답변에서 몇 번 언급되었듯이 지금의 많은 부모들은 과거와는 달리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흐름도 나타났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G1-1]은 본인의 부모가 IMF를 겪은 세대로서 그 때의 고통을 자식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

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자식은 부모님한테 영향을, 뭐 좋던 나쁘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저희도 비슷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그... 하, 사셨기에 IMF도 있었고 중간에 나라가 휘청휘청했는데(목소리 작게) 이제 그런 힘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은 힘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노후를 좀 저희 키우느라 바쁘셨지만 노후를 준비하셨고. 이제 그 와중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저희한테 안 떠밀리기 위해 지금 좀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G1-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책임감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이 부담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G6-1, 수도권 비정규직, 25, 여]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은 **자식들한테 해를, 자식 앞 길 망치지 않으려고** 본인, 부모님들이 직접 버는 경우, 끝까지 일하시는 경우 많잖아요.[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저는 아직 제 버는 거는 제가 쓰고 이제부터 너 인생을 꾸리라고 하시고. 뭐 책임이나 부양을 아직 제가 할...하기에는 조금(웃음) **본인들은 본인들의 그거는, 꾸릴 테니까 그냥 제 인생을 살으라고.** [G4-4, 수도권 정규직, 30, 여]

너희에게 간병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겠다. **임버릇처럼 말씀하시고.** 또는 내가 건강이 좋으면 내 꿈은 폐지 줍는 노인이다. 내가 자립을 하겠다,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약간 내가 더 이상 기존에 하는 기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폐지를 줍겠다, 농사를 짓겠다,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또한 앞선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모들의 이러한 모습은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는 [G3-4]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부모 세대가 벌어들이는 만큼을 자녀들이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부모의 자체적인 대비로 이어지는 듯 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한지 이제 3년 차 되는 시점인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거의 은퇴하실 시점이 되었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아버지의 연봉을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따라갈 수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도 사실은 되게 젊으셨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 오신 편이고 앞으로 노후 계획도 본인들이 경제적 측면이든 삶의 균형적인 측면이든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두 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저희한테는 지원은 못해주시지만 우리 노후는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저희 입장으로는 고맙죠. (중략) 가정 내에서 하기 보다는 결국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저 스스로 해결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어머니나 아버지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용돈 정도이지 그걸 생활비로 충족되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각자 준비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어들인 걸로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시더라고요. 자녀에게는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시기도 하고 자녀 입장에서 간단히 용돈 정도. 그래서 명절 끼거나 이럴 때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셔서 사실 그렇게 저로서는 큰 부담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G12-3,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G4-2]와 [G6-1]는 지금의 부모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즉, 과거 본인 부모의 부양책임을 당연하게 지던 질서와 지

금 자기 살 길 찾기도 여념 없는 자녀들의 불안정한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조부모 세대와 은퇴 시기는 비슷하지만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본인의 신체적 상황으로 인해 부모 세대도, 청년 세대도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상태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사실 본인들도 정말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 같긴 해요.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들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들 부양하고 형제끼리 모아서 같이 돌아가면서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세대였다가 이제 젊은 층들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부모님은 알아서 사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시면서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의지는 하시는 상황인 거죠.**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옛날 노인들보다 지금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니까 약간 신체적 부양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낮춰졌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데, 경제적 부양? 은 아무튼 정년은 비슷하잖아요, 60 그 정도로 비슷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도 같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튼 언론에서나 뭐 이렇게 우리 형제를 봐도 그렇고, 청년의 그런 돈 문제나 그런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또 정년은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 (웃음) 한 쪽은 부담되고 한 쪽은 미안하지만 어쨌든 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 같고, 두 세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G6-1, 수도권 비정규직, 25, 여]

3) 부양의 현실

- 가족 내 해결

형제, 자매가 많은 참여자들의 경우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서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미 나이가 많은 형제들이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양을 나누어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노후 부양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듯 하였다.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언니 둘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런 부담이 많이 안 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안 쓰면 따로 부모님이 하시거나, 전 막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언니 둘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편이긴 한데, 고액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 정도? [G12-3,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언니들이랑 했었어요. 했었는데, 너도 그렇고 어쨌든 돈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언니 둘은 결혼을 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도 있으니 거기서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전 이걸 가족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은 좀 다자녀... 아이들이 네 명 있다 보니까, 한 사람만 조금, 조금, 조금씩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은 한 달 생활이 괜찮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외동이면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네 명이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덜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생각은 조금 안 들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부모님 일 안 하실 거니까 용돈은 드리

자, 근데 이게 네 명이 드리다 보니까 한 달 생활이 되고, 그런데 제가 다자녀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 두 명? 아니면 두 명 미만으로 갔을 때는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부양을 할 때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존재가 많이 위안이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그쵸**. 나는 못하더라도 애는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건 사실 고맙죠. 물론 개네들도 저와 그렇게 크게 사정이 뭐... 다른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이 100을 내는 것보다 세 명이 30씩 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자매가) **셋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나중을 위해서 그냥 단 5만원씩이라도 적금을 각 매달 넣어서 나중**에 (부모님이) 정말로 진짜 수술을 하셔야하거나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돈이 정말 궁할 때 우리가 좀.. 더 보탬이 되자.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반면, 형제·자매가 없는 참여자 [G6-6]의 경우에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홀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데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G12-2]는 자녀가 본인 혼자이지만, 지금 당장 본인의 지출을 우선시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불효’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치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저는 되게 절망적이라고 보거든요. (중략) **제가 지금 제 남자친구도 외동아들이고 저도 외동딸이에요. 그럼 결혼한다고 쳐요, 그럼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네 명이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두 명이겠어요?**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제 친구들 중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용돈 얼마 정도 드려야할까, 나는 혼자인데 얼마큼을 드려야 할까? 나는 지금 혼자 온전히 다 쓰고 싶은데, 내가 불효하는 건가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이러한 차이는 부모에 대한 부양이 가족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노후에 대한 부양은 개별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겨져 개인에게 막대한 부담감을 지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G6-6]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부담을 나눠질 수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절망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G12-2]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동인 본인조차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불효”라는 데 대한 도덕적 죄책감이 생기게 된다.

부모에 대한 부양을 중요시하고, 사적 부양에 의존해 있는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가 청년들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 경제적 어려움

부양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문제였다. 즉, 부양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으나 본인의 경제 상황과 같은 현실적은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저도 (지금) 제 앞가림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뚜렷한 건 없는 것 같아요.**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연금이 따로 뭐.. 공무원이 아니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그냥 내가 더 오래 일을 해서 돈을 더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혼자서 벌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모아서 부모님이 힘드실 때 조금씩 보태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저도 일단 당장 엄마, 아빠를 부양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부양해,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일단은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부양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I8, 수도권 정규직, 29, 여]

또한 [G10-1]은 실제 부모가 은퇴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걸 보니 더 두려워졌다고 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부모의 노후에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과 나의 노후는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답답한 목소리를 토로했다. 게다가 추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노후 비용이 사실상제로섬 구조에서 청년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막상 정말 은퇴를 해서 이 물가가 워낙 상승하고 또, 예측 하지 못하는 이런 지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탄탄대로 준비했다고 해도 굉장히 부족해하시는 모습을 저는 봐요. 굉장히 예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걱정. 저를 떠나서. 저희 부모님이 이 삶을 얼마나 이렇게 영위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실제로도 아버님이 굉장히 위축되신걸 보면서 이게 곧 나의 미래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제 애를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사리 도와드리지 못하는 이런 괴리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이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구체적으로 부양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했다.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때 각자 각출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차근차근 모아서 도와드리는 것? 그거 아니면 이제, 제가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서 만약에 같이 살게 된다면, 부모님이랑. 그러면 이제 **부모님 경제활동을 못하시게 될 때 그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 그 정도는 제가 내면서 같이 사는, 그 정도 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미래에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도 부양해야 할 또 다른 가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봤던 건 그래도 한 달에 한 그래도 20만 원 정도, 2, 3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은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딱 지금 저의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특히 정규직인 집단과 비정규직인 집단 간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 집단은 현실적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정규직 집단의 경우, 일단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한 현실적인 고민이 더 강한 편으로 비춰졌다.

고민을 하죠. 엄마가 만약에 아파서 일을 그만두거나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네... 어쩔 수 없이 별... **변변한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는 제가 부양을 하고, 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아직은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막상 내 앞길도 정해서 가야하는데**, 노후까지는. [G11-5,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거동이 불편하시면 제가 방법을 다 찾아 볼 텐데 **그 전까지는 저한테만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아직까지는 그렇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들진 않거든요. 일한지 3년 정도 돼서 저보다 부모님이 아직 많이 버시고, 그 만큼 노후 대비도 두 분이서 나름 하고 계시고, 과연 내가 지금의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50이 됐을 때 그 분들이 **더 이상 연금을 받아도 한 달 삶이 부족하시다면 도와드리겠지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당신들 삶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한 달에 용돈 조금씩 드리는 것뿐이지 **이 분들의 노후를 같이 금전적으로 해드리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 같다는 생각. 어쨌든 저도 벌어서 저도 먹고 살아야하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제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G5-1, 수도권 비정규직, 27, 남]

저도 부양은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진 않는데, 당장에 부양이라는 말에 맞게 제가 만약 부모님의 가장이 된다고 하면, 돼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있는 여유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부모님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대비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정도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용돈을 드리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너의 생활도 온전치 못하데, 부모님을 도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능력이 되면 부양하고. 부모님이 너무 아무런 것도 생활이 안 될 정도라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하지만, 굳이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겠다, 아빠를 부양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지금 돈을 많이 안 버는 저희 보다는 부모님이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는... 꼭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특히 [G5-2]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양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커졌다고 이야기했다. 30대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부양하겠다고 생각했지만, 30대가 되어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부양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업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시장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나도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데 대한 현실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거의 30대 전까지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벌이에 있어서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부양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지금은 벌이에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G5-2,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심지어 [G10-4] 참여자의 경우, 지금 본인이 갚아야 하는 빚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모가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부모의 부양 부담을 짊어지는 지의 여부가 “운”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점이 안타깝게 들리는 대목이다.

오~ 나중에 갚는다고 하고 아직도 안 갚았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너의 대학 등록금도 들어가겠지? 진짜... 못 갚아요. 전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계셔서) 되게.. 그래도 **진짜 운이 좋은 거고**.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부모의 부양이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G12-4]는 이미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만 수천에 이르는 집도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G6-6]도 만약 부모의 노후 부양에 이어 아이까지 생긴다면 부부 2명 이서 도대체 몇 명을 부담해야 하나며 막대한 부담감을 표출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은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이 또 하나의 부양 책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겨져 부담감과 거부감이 생기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저희 집 상황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시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이서 이미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 주잖아요. 그거 나오는 돈 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나눠서 부담하고 있어요. 둘이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부담이 돼요. 왜냐면 두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쓰실 금액을 드려야 하는데, 거의 한 달에 아무리 안 해도 백만 원 이상은 쓰셔야 하니까 동생이랑 제가 부담하면 거의 사십에서 오십만 원 정도 나가게 되는 거죠, 매 달.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이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까지 많지 않은데도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동생도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일로 미뤄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삼천 오백만원인가, 결혼 한 번씩 할 때 그걸 실제로 만들기가 부담이 돼요. 부모님께 다 해드리고 싶지만, 내 소득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죠.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저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애라도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두 명이면 도대체 몇 명이 부담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개인으로 있어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나 뭐로나 원가가 지출 될 거란 말이죠. 노동력이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결혼도 못하겠고 애도 못 낳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 부모만 해도 정말 저는 충분히 정말 힘들거든요.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정도의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었다.

큰 질병이라든가 큰 사고가 없이 산다고 가정 했을 때는 그런 생활이 영위될 것 같지만, 만약에 갑자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사실 그때는 별로 생각해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접하신 분들을 볼 때는 거의 정말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재앙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당장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생각해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남편 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아프실 거에 대비해서 따로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실제로 최근에 시부모님이 한 분이 이제 어.. 병원 막.. 암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결론이 나긴 했는데, 검사비만 100만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사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 중에 일부는 보험처리가 되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암이 아니었는데, 물론 암이었으면 암보험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아, 진짜 바로 이게 터지는구나. 일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모아둬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11, 수도권 정규직, 26, 여]

나중에 7, 80대 돼서 부모님이 혹시 아프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때는 부양할 생각이 있는데.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어... 정확히는... 제가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지금은 일단은... 드리고 있는데, 그걸 좀 모으셔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재테크. 재테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걱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용돈 정도 드리는 정도. 근데 건강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115]

아프시면 먼저 되게 힘들잖아요. 막 들어가는 돈이나 이렇게 가족들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나, 그런 거부터 생각해서 부모님이 나이를 든다는 자체를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뭐가...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느낌? [G10-3, 전라도 정규직, 25, 여]

- 정서적 어려움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함께 언급되었다. 수명이 연장되어 길어진 만큼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담감이다. 특히, 은퇴하거나 사회적 연결망이 느슨해지는 시기가 오면 부모님에게 찾아올 정서적인 외로움까지도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였다.

특히 부모님 부양에 있어 이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언급한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있어서도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저희 부모님은. 사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저도 그분들이, 아직은 사지가 멀쩡하시고 뭐 그나마 건강하신 편이긴 하지만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지는 몰라도 너무 잦은 사고도 많고 그때랑 지금... (중략) 내가 외로워서 가는 거니까 너네는 신경 끄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때의 그게 지금 사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외로움까지도 부양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애를 키우면 애부터 해서 그런 외로움을 부양해야 하는 게 우리 세대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횡설수설 했지만 짧게 이야기 하면 조선시대에는 서른 살 정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한 70년을 그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같이 나이 먹고 같이 사는 게 힘들 거 같고. 왜냐면은 아무리 이게 엄마, 아빠가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저도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그 간극은 좁히기 힘들고, 자주 붙어 있으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나이가 먹으면 이제 밖에서는 성인 대우를 받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 잼아요. (그쵸) 그렇게 같이 사는 건 진짜 힘들 거 같고. [I8, 수도권 정규직, 29, 여]

저는 엄마한테 친구도 해줘야 하고 딸 노릇도 해줘야 하고 저는 외동 딸이니까 뭔가 가장 같은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엄마는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남편이 못한 어떤 역할도 해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문제를 빼더라도 이게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러니까 이것도 금전적인거랑 되게 다른 건데, 어떤 그런 사회적 연결망이 많이 느슨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정말 한정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사실 가족 안에서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을까? 그게 약간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양이 약간 뭔가 정기적인 돌봄 정도?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다, 그런.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 여성에게 가중되는 부담감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정서적인 부담과 함께 부양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G4-2] 참여자의 경우, 부모님이 남자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본인에게 더 책임과 의무를 지우려는 데 대한 반감이 있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의고. 그래서 많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여쭙본 적은 있어요. “노후에 엄마, 아빠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랑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일동 크게 웃음) 남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나구나. 아... (일동 웃음)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포기했어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G6-4]와 [G6-3], [G6-2]의 경우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데 대한 반감이 있었다. 특히 한 참여자는 본인의 부모님도 시부모님을 거의 10년 가까이 돌봄을 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요양원과 같이 돌봄 노동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성별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G6-2]의 경우에는 20-30대 여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동시에 시부모님에 대한 부담도 여성들에게 책임 지워져 있어 양쪽으로 이중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저희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개인이라든지 가족한테 그걸 떠넘기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특히 여성들한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런 돌봄을 하셨거든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부양이 너무 여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지워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서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고모라든가, 딸인 고모라든가 며느리가 많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요양원에 맡긴다고 해도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여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건 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그래, 많이 백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어떻게 부양한다고 쳐. 근데 내가 시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해야 될까? 만약에 왜냐면 서로서로 돌봄이라면 그래 나도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웬지 시부모님 부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하지 않고 나만 부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우리 친정 부모님도 부양하는 것 힘들어 죽겠고 시댁 부모님까지 나 혼자 케어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 뭔가 약간 되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저는 이제 아까 여자로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걸 나가더라도 시부모를 부양할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나라는 시댁을 우리가 부양하고 친부모님께서는 또 뭔가 용돈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양쪽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또 친정에서는 내가 또 결혼을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뭐 그런 뭐 농담 식으로라도 딸 낳은 부모님은 비행기에서 죽는다더라, 이렇게 그런 기대조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또 그렇게 이쪽에 애교부리고 내가 시댁에서 문화를 같이 문화를 즐겨주고. 사실 시댁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즐겨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지금 20-30대 여성들한테는 양쪽에서 굉장히 희생당하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명이고 그러면 내가 부담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공평하지 않게 셋팅되어 있는 것들을 나라가 같이 책임지고 그런 걸 돌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G6-2,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다. 나의 노후

1)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세대 간 부양과 부모님 부양에 대한 문제는 나의 노후에 대한 생각과도 관련이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해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하지만, 아직 노후 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저는 도움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지금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 나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고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이를 먹더라도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돈을 모아서 노후에는 내가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해, 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나이를 먹더라도 어떻게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게 오히려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저는 혜택을 제가 받는 시점이 한 30년, 40년쯤 뒤가 될 거 같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뭔가 주축이 되어서. 저는 딱 받은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노령화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매 달 나가는 강제로 나가는 돈도 있고. 그만큼 내가 했던 만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그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만큼. 솔직한 마음은 사실 뭐, 많이 한 느낌이 아니어서. 저희가. 제가 다른 기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전혀 느낌이 없어서. 딱 받은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G3-2, 수도권 정규직, 32, 남]

은퇴를 해서 뭐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지,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 분 말씀대로 제가 한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 포션으로** 이제 지금 삼천만 원 줬으니까 그 때 돈으로 삼천만 원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고려해서. 받고, 저도 경제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죠. [G3-1, 수도권 정규직, 30, 남]

제가 돈을 벌면은 좀... 아껴서 쓰면서 노후 준비를 천천히 하지 않을까. 좀.. 최대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안 주고 싶고, 혼자 산다고 해도 좀... 자급자족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내 노후 생활은 내가 알아서. 그렇게 그냥, 이걸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자식은 그런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변화

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G12-3,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일부 참여자의 경우, 노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들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자기 노후는... 부모님 세대랑 저희는 많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진단 생각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어지고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부양해야하는 돈이** 큰데, 지금 저희는 좀 힘들잖아요. 부모님 세대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별로 결혼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이런 생각은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청년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를 낳게 되면 노후 준비가 더욱 줄어들다는 부담감이 있어 낳기 주저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냥 열심히 잘 많이 벌고 있죠. 저축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둘째를 낳게 되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같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둘째를 낳게 되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더 못하는 것도 맞고.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특히, 대학생들은 아직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인 시기를 맞이하지 않겠다거나, 부모님이 자신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듯이 미래 그들의 자녀를 위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 개인의 노후에 대해서는 사실 전 댜 친구들한테 장난식으로 '난 오십 되면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웃으며)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장난삼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노후에 대해서 좀 어, 외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고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웃음) 농담 반의 생각을 해오면서 외면을 해왔던 것 같아요.**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저희한테 안 떠밀리기 위해 지금 좀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나도 내가 힘들지언정 내 자식은 힘들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취직하고 나서 제 미래를 ... 위해 준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식을 위해서 따로 좀 지금 제 부모님처럼 해 나갈 거 같아요.** [G1-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노후에 대해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하였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게 한 편으로는 되게 지금 아무런 그런 보장되어있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안정된 게.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서 되게 뜨거운 여름날에 지쳐서 그냥 계시는 길거리 노숙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진짜 정말 저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나는 또 직장 외에서 일하고 뭔가 무리하지 않고 있으니깐 뭔가 이게 가늘고 길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암튼 뭐 그런 생각이예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이 같은 고용 불안 상태에 처해 있는 참여자들은 노후에 대한 질문에 있어 일단 취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취업준비생 또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취업을 뒤로 하고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도 노후를 준비하려면 **취업**이 우선이니깐. [G11-3,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취업을 하고 여유롭게. [G11-4,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직업부터 정하고... [G11-5,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저도 아직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만, 자라온 환경 영향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복지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략) 일자리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아서 경기도 지역권이나 서울, 지역권마다 해주는 장려정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두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G11-1, 강원도 비정규직, 26, 남]

[I4] 참여자의 이야기와 같이 많은 청년들에게 아직 노후 준비는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나의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 할 요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기간은 길게 보면 자녀 계획과 같이 가족 구성까지는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노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적금을 든다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건 사실 노후까
지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자녀계획까지는 가면 가긴 하는데,
양육에 쓰는 돈까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늙어서까지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I4,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는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래 계획을?)
음...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막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실제로 한 만약에 애기를 낳으면 2,
3년 내에 당장 필요한 돈.** 그런... 병원에 가는 돈? 유아용품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가면 시설에 맡긴다든지, 학원에 보낸다든지 까지.
[I4,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저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까지 정도는 준비를 해둘 것 같은데, 아직은 노후, 노년에 대한
계획이 크게 있진 않아서.**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2) 구체적 노후 준비 방안

직장인들의 경우, 연금을 비롯해서 주거를 위한 저축이나 사적대비 등 구
체적인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직장이 안정적인 참
여자들일수록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주거에 대한 준비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저축을 하는 것 같... 아닌가? 제 주변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다 집 때문인데, 뭐... 보증금... 이런 거 모으려고 하는 건데, 확실히 집이 해결되는 게 제일 노후를 생각할 때 **집이 좀 해결이 되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집이 해결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I1, 수도권 정규직, 26, 여]

따로 노후를 준비할 방법은 지금 사실은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중략) 한 10년, 20년 정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뭐.. 예를 들어 미래에 있을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 모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주택 관련된 거니까 그 목적... 목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모으고 있죠, 돈을.** [I11, 수도권 정규직, 27, 남]

특히 주거문제는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상황에서도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G8-5]와 [I6]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안락한 집은 하나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G8-5] 참여자의 경우, 주택 청약에 노후 준비로 여기고 있기도 하였다.

노후에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생활비 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좀... 많이 연금 같은 거, 좀 많이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쓸 수... 나가는 돈이지만,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G8-5,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1, 여]

꿈은 내 집 마련? 집이라도 있으면 노후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젊었을 때나 이사 다니지, 나이 들면 한 곳에 있는 게...”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 공적 연금

직장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별도의 논의로 하고, 자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을 언급하였다.

국가에서 강제로 하고 있는 세금에 포함되어있는 그거와, 개인적으로 금융사를 통해서... 복리은행... 복리 금융 투자 상품 하나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단,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도 있고.. (중략) 네, 주변에 많이. 적금이라든지, 공격적인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I10, 수도권 정규직, 27, 남]

- 사적 대비

청년들은 생각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 주식이나 저축을 통해 개인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저는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신한 알파리치라는 리츠 주식이 있는 데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거의 흔들림 없고 대신 배당이 7% 1년에 두 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테크 공부를 조금 이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적금 식으로 넣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배당주라도 해외배당이면 뭐든 그런 식으로 배당을 받아서 내가 노후에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별로 믿질 못하겠어서, 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참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가 되면 고갈이 될 거다, 라고 점점... 고갈

이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금보다는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중략) (저축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G11-2, 강원도 비정규직, 33, 남]

따로 하는 것은 딱히 없어요. 없고, 월급의 어느 정도 적금을 붓는 수준? 미래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서 미래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를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G5-2,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 사회적 해결

윗세대의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본인의 노후에도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노인 세대가 받는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노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이게 부양이라고.. 하면 좀 물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낸 만큼이라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낸 만큼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양육을 안해서가 아니라, 자금 자체가 그 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면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길러주는 느낌인데, 뭔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보면 윗세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낸 것 그대로 받는 건데 양육이라고 해서 좀.. 뭔가 그러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지금의 윗세대가 받는 지원이라던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노년에도 받으면 좋겠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래요.

[111, 수도권 정규직, 27, 남]

앞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만약에 자식이 생기더라도 딱히 자식한테 그런 걸 기대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할 것은 제가 챙기면서 산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대비한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아까도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정책 같은걸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노후를 위해서 돈을 지금부터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놓는 건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중에 노후에 대비되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하는 그쪽에 투표를 하는 쪽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G5-4, 수도권 비정규직, 28, 남]

제4절 소결

청년들이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본 장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에게 ‘인구 위기’란 언론과 정부 발표에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실재하는 현상으로 체감하고 있느냐와 별개로, 청년들은 이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

가적, 정부적 차원에서의 ‘위기’임은 인식하지만, 인구 위기를 문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인구 위기’ 담론의 노출에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이것이 “세뇌”로까지 느껴졌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이를 출산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서의 ‘인구 위기’ 체감과 인구 위기 담론에 대한 태도는 ‘인구 위기’에의 대처와 전망으로 연결되어, 정부의 해결 의지에 냉소적인 태도나 불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출산’을 통해 인구를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인정하고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이에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청년들의 저출산에 대한 언술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저출산 현상을 조망적 관점으로 파악하거나, 자신 혹은 주변 경험을 토대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 참여자의 입장이었는데, 이는 (저)출산을 ‘자신의 이야기’로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왜 출산하지 않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인 부담은 대표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부담은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만족과 연결되는 기회비용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부담은 출산 후 노동수입의 변동과도 관련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 노동자에게 ‘비출산’을 결심케 하는 요인이 된다. 아이에게 한국 사회의 부정적 면모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서 지목되었다.

한편 정부와 언론이 저출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여성 참여자들이 표출하는 불쾌감, 당혹감, 분노는 여성 청년들이 저출산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저출산 관련 보도와 발표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책망, 유도, 압박과 강요를 받는다. 정부가 제대로 된 뒷받침 없이, 심지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차별받아 온 여성에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데에 부당함을 느꼈다. 저출산 담론이 ‘저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역시 제기된다.

청년들의 고령화에 대한 언술은 노후와 부양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상이했지만, 노인 세대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었다.

세대 간 부양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동의 의견 중에는 당위적인 의무보다는 나도 받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냄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에 입각한 입장이 자주 등장하였다. 비동의 의견으로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에는 자신의 앞가림도 힘든 형편이라는 것, 오히려 윗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보다 부유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오는 반감이 진술되었다. 한편 지금의 노인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는데,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그리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술의 발전과 복지제도가 개인적 부양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본인 부모님의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아직 20~30대 청년들로서 부모님 세대의 연령이 50~6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라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 부양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지

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이전 세대에 대해 부양을 했거나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세대에까지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려는 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형제·자매의 수가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으로 부양의 수행이 여전히 가족 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 측면의 부담이 대표적인 부양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부양에 있어서 부모들이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의존하려고 하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서적인 기대에 부담을 호소한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경제적인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돌봄’ 부양은 대개 여성 가족에게 지워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청년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본인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부모의 ‘폐 끼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윗세대의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본인의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연구 참여자 청년들은 ‘인구 위기’에 자체는 다소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문제로서의 체감도 높지 않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 진입했을 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밀도 높게 발언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에서 ‘부양’보다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내고 부모를 돌보는 ‘부양’은 이미 주어진 현실인 데 반해 아이를 낳는 것은 미래의 부담을 연상시킨다. 출산은 추상적 차원에서는 ‘고령화’사회의 해소로 이어지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노인 부양의 부담에 아이 양육의 부담이 곁해지는 양상으로 나

타난다. 더불어 출산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저출산과 고령화 담화에서 모두 제기되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타파해야 하는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가 그에 맞춰 적응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모습은 연구 참여자 청년들에게 나타난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아이 낳음을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제 4 장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1절 원가족과 지인의 영향

제2절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

제3절 소결

4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

제1절 원가족과 지인의 영향

앞 절에서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이 청년들의 가족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발견된 주요 요인들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이다. 원래 속해있었던 자연발생적인 가족, 그리고 친구나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 동료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SNS, TV 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들이다.

1. 원가족의 영향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혼이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원 가족의 모습이다. [G3-3]은 가정적인 아버지, 자녀에게는 독립적인 가족 내 분위기로 현재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가정적이셨거든요.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를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대신 주말에 집에 오셔서 다 하고 가셨거든요. 외부 활동 안하시고, 취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존중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되게 헌신적인데 자식들한테는 독립적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나와 사니까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적이긴 한데, 구성원 자체에는 알아서 살라고 해야하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별로 행복한 가정이 되진 않겠구나, 지금처럼 저희 가정만큼 살면 별 탈 없이 알아서...
[G3-3, 수도권 정규직, 25, 남]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집이 많이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때는 가족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이러면서 솔직히 아버지와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집 안에 사업이 조금, 제가 청소년기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때는 차리리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은 접으시고 그냥 평범한 일을 하시는데 여가 생활도 있고, 그 때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리니까 어머니가 놀려 가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 때 많이 놀러갔고 그 때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딱 **경제력 보다는 저는 그래서 평범한 삶을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억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러니까.
[G9-5, 경상도 정규직, 31, 남]

반면, 부모님의 다툼이 잦거나, 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을 본 경우 등 원가족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나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루에 한 세 네 번은 싸우세요. 항상 약하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짜잘하게. 저희 아버지가 칠 십 거의 다 되어가시는데, 좀 나이가 많으세요. 약간 제가 봐도 어리숙한 행동을 하시지, 투정 부리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시고요, 어머니는 듣자마자 바로 쏟아 부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런 모습 보면 결혼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저는 경험이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생활 하는 거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크다

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진짜 나중에 엄청 성인이 되어서 그런 영향이 크잖아요. 옛날에 학대를 받았던 아이도 나중에 자신의 자녀한테 학대를 가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가정생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희 가족을 보면서 좀... 결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도 나중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저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과정에서 도대체 결혼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딸이 셋이고 친가 쪽 조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오래 부양을 하시고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시고. (웃음) 이걸 보니까, 씨 그리고 **시월드 헬게이트가 존재하고 부모 네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거를 보니까 씨 결혼을 해서 누구 좋으라고 결혼을 해서 이 생고생을 하나? 이거를 너무 많이 봐서, 결혼을 왜 해 안 해 막 난 연애만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결혼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옆집에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G4-1, 수도권 정규직, 32, 여]

[G3-4]의 경우, 원가족보다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미 가정을 꾸린 [G9-4]는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자신의 아이와는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저는 저희 집안이 반면교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대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거부장적이고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에버랜드 가자고 하면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살갑게 안 해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너네 아빠는 너한테 잘 해주냐, 초등학교 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결혼해서 애 낳은 애들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인스타그램 지 팔래미 손잡고 구경 가고 그래요. 그런 애들한테 술 한 잔 하면서 잘 하나고 물어보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게.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반면교사로. **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애기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친하게 안 지내고... 그렇다고 나쁜 사** 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계속 자라면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장인어른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나면 엄청 친하게는 잘 못 하겠거든요.** 그 때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가고 이제, 그냥 저희 가족만... 와이프랑 저랑 애랑만 있어도 그렇게 엄청 말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지내다 보니까 말이 많고 화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일 마치고 오면 이제, 저는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하고 와이프는 애 본다고 피곤하고. 이러다보면 서로 그냥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걸 해소하려는 생각이 많아요.**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2. 주변인의 영향(친구, 직장동료 등)

원가족의 영향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직장 및 주변 기혼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이미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난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집에 들어가기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아이가 있는 지인들의 육아로 인한 고충 토로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분들은 다 자식들도 있고 나이들도 있고 하신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뭐.. 계속 직장에 있으려고 하시고. 그런 게 한 열 명중에 아홉 분이 그러시니까 어릴 때 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결혼은 당연히 저도 하고 싶고 하는데, 선배들 이야기나 형들 이야기, 누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깐 좋고, 그 이후에 너무 힘드시니까. [G4-4, 수도권 정규직, 30, 여]

남자애들은 다 전쟁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하고 아직 (중략) 주변에서 같이 모이면 커플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데려오는데 저희가 같이 있어서 애를 같이 놀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루 같이 소풍가서 놀았더니 내일도 우리 만나면 안 될까? 애들 좀 대신 봐주면 안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애들이 **늘 애 키우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고.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다 그래요. 너는 현명할 줄 알았다고. **결혼한 애들한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 먼저 결혼한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엄청 해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하기 전에 회사를 들어가서 옆에 대리님이 앉아 계신데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 일이 없는데. 그래서 '대리님 왜 퇴근 안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때 대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육아는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주변에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행복하게 사는 결혼한 집을 보면, 저렇게 살면 되게 좋겠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또 결**

혼이 대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나이에는 대부분 아직 결혼을 안했으니까 나이 드신 비혼 분들 보면 저렇게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 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외로운 건 가정에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 젊게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특히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워킹맘들을 보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체감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회사의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워킹맘의 모습을 본인과 동일시하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와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대책과 육아지원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지만, 참여자들이 지인을 통해 들은 육아 현실은 결코 낙관적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여성들에게 자아실현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워킹 맘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거예요. 끝나고 데리러 가야지 긴장 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야근이라도 해야 되면 뭐 가족모임을 빠지고 야근을 해야 되면 그거대로 눈치 보이고. 한 사람에게 썩워지는 프레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우먼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슈퍼우먼이 되어야 할 만큼, 희생을 해야 할 만큼 그게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그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날 부양해 줄 것도 아니고. [G4-1, 수도권 정규직, 32, 여]

회사에 그래도 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중에 여자

분들이 있으신데,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중략) 결혼 하셔도 육아를 메인으로 안하십니까? 그런 쪽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육아나 출산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많은 것들은 접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죠. [G4-4, 수도권 정규직, 30, 여]

직장을 그만 둔 친구들도 있고 쉬고 있는 그런 이제... 엄마들 볼 때, 어... 그리고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경단녀로 계속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신은 행복할 수 있는데, 옆에서 감정 대입을 해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걱정된다기보다, 그러한 현실이 뭐랄까... 내가 출산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I7, 수도권 정규직, 33, 여]

한편, 주변 기혼자의 영향을 받아 결혼을 하고 싶다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I12]는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지인들의 자녀를 보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 친구가 있어 보니까 여자 친구가 있으니까 좋네. 주고받는 게 있네. 교회 안에서도 약간 교회는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말씀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결혼도 하고 형들은 이제 애 낳고 주변에 애기도 예쁘고 (웃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애기도. 내 아이가 아닌데 저렇게 이쁘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낳은 아이는... 또 형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애기가 생기면. 행복해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I12, 수도권 비정규직, 27, 남]

제2절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

1.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

가. 결혼

1) 결혼의 의미

결혼의 의미에 대해 청년들은 과거의 결혼과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9-1]의 경우 부모님 세대의 결혼을 희생이라고 정의 내리는 반면, 현재는 과거와 달리 각자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G6-3]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장점을 결혼의 의미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G2-4]와 [G5-5]는 결혼을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G2-4]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측면에서 결혼이 의미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G5-5]는 결혼을 상대와 엮어주는 법적인 장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사랑의 결실, 행복, 동반자 찾기로 설명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여성에게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거나, ‘똑똑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대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의 의미를 각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생각할 때, 제도 자체에 초점을 두는지, 결혼 후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결혼의 의미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 결혼을 하시면 그냥 어찌보면 제 **개인적으로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희생도 희생이지만, 희생 보다는 **요즘은 애를 낳고도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G9-1, 경상도 정규직, 30, 남]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 혼자 남는다는 게 저에게 주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저한테는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결혼 정도는, 한 명이 혼자 살때에도 분명 감당해야 하는 어떤 고통이 있고 또 둘이 살때에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건데, 사실 둘이 살면서도 결혼 제도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결혼이라는 제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내가 얻는 일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은 이 정도 이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결혼의 본질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는 행위가 있으면 결혼이라는 게 그런 제도가 처음 생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략) 시작은 사랑이 아니고 솔직히 사랑하면 동거만 해도 되는데, **굳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집안의 대를 잇고 자손을 번영하기 위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야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하니까 가문에 돈도 벌어다 주고 그렇죠. 특히 양반이나 귀족들은 대를 잇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이름을 남긴다는 거에 혈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는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옛날보다. 그럼 **결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동거가 사실혼에 대한 법적인 제도도 점점 늘려가는 이유가 그런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별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G2-4, 수도권 대학생, 23, 여]

아직까지도 결혼은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할만한, 만나서 **결혼을 할만한 상대방** **줘주는 법적인 장치**로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의무나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띄면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G5-5,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2) 꿈꾸는 결혼의 모습

청년들이 꿈꾸는 결혼 후 모습은 출산과 연관지어 표현되고 있었다. 결혼 후 갖고 싶은 자녀 수를 상상하곤 하였다. 한편, [G3-2]와 [G3-3]은 결혼을 선택지로 두고 비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결혼을 한다면 한 두명 정도는 낳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결혼하기 전에는 출산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고 지금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낳을 거면 **최소 두 명?**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결혼 하면 저도 애를 갖고 싶으니까, 저도 두 명? 딱 두 명. 4인 가족으로 하고 와이프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벌고. 맞벌이로. 외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 (중략) 외동이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중략) 네. 삼 십 정도? 남자들은. [G3-1, 수도권 정규직, 30, 남]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해서 출산과 육아까지 한다는 가정을 하면 아이는 낳고 싶어요. 혼자 보다는 **둘 셋 정도는 낳고 싶긴 한데**, 1인 가구도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결혼 안한다는 가정도 하고 있어서.** 진짜 선택인 것 같아요. **결혼 안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비어있다?** 그

런 느낌 보다는 하나의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의 수라고 하면 그냥 제가 만약에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을 아이들에게 분배를 하느냐. 양육 태도라던가... 나중에 배우자가 생겼을 때, 양육을 했을 때 서로 가치관도 맞아야 하고 하는데.. 여럿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여럿이 있으면 굳이 부모가 손을 안대도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양육 태도인거고. 만약에 여러 명 있다, 라고 하면 각각 한 명한테 들어가는 자산이 $1/n$ 이 되는 거죠. 그건 선택을 하는 것뿐이고, 사교육 덜 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3-3, 수도권 정규직, 25, 남]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할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 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굶아있어요. 체력이 돼도 한 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전 아무튼 최소 한 명? 두 명씩 말씀하셔서 놀라긴 했어요. 저는 한 명. [G3-2, 수도권 정규직, 32, 남]

저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애는 낳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생각 자체를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게.. 중학교? 이때부터 나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 라고 계속 부모님이나 오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낳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지금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 내가 낳은 새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당최 나 같은 아들, 딸 볼 수가 없다.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3) 결혼의 조건

결혼의 조건으로는 경제적 여건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 [G3-4], [G3-1], [G8-2], [G10-2], [I10]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결혼의 조건으로 꼽았다. 하지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준의 경제력을 언급한 것이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염두에 두고 경제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어야지 결혼 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있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에서 아 재가 결혼하더라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정도가 있어야 상대방 부모님도 허락이 가능한 거고 그게 제일 걱정일 것 같거든요.** 그런 가족적인 환경들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금액으로 딱 연봉이 오천만이다, 육천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한 기준은 내 힘으로 전세 대출을 받던지 그래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월에 부모님한테 드리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 그 때가 되었을 때 뽀뽀하게 결혼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가서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저는 경제적인 면과 개인의 소양으로 따지면 **개인의 소양은 내가 아무 것도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결혼하는 게 가장 좋대요.** 더 똑똑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이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라는 것은 필요한데, 사실 그 선은 모르겠고. 돈 150 이렇게 버는 이분들을 마치 이런 게 아니고,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거기서 **결혼을 할 때 집이나 생활이나 그 쉼집 내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이 되었을 때 최소한. 그거 같아요.** (중략) 의식주가 있잖아요, 내가 밥 안 굶고,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삼시 세끼 된장국에 밥 먹고, 계산기를 두

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겠다. 그 정도는 되었을 때, 그게 선이지.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반포 자이에서 이려고 살아야지. 이거랑, 음성에서 이거랑.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G3-1, 수도권 정규직, 30, 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돈인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드니까, 돈에 대한 안정적인 거랑 성격일 것 같아요. 가치관. 그래도 사람마다 사는 게 성격이 다르긴 하더라도, 맞아야 그걸 하잖아요. 서로 친구든 뭐든. 그래서 저는 성격이랑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저는 그냥 저 자신과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차이나도 그 사람이 살았던 거에 대한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게 너무 틀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싸움의 유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비슷한 사람이면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저도 비슷한데, 어... 일단 **가치관이나 약간 서로 분노하는 지점 같은 것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평생 같이할 사람을 찾는 건데, 그게 힘들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니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을 절대 뺄 수가 없죠.**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집 값도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꼭 봐야하는 것 같아요.** [G10-2, 전라도 정규직, 32, 여]

일단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신이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요즘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인턴 직급을 먼저 수행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뛰고 열심히, 빨리 출근하고.. 그런 노력만 했어요. [I10, 수도권 정규직, 27, 남]

[G12-3], [G12-4], [G4-1]은 배우자 부모님의 성향이나 배우자 가족의 분위기를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질서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결혼 후 배우자의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다 보니 결혼의 조건으로 시댁을 염두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도 경제적인 걸 많이 보는 것 같고,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권이 있는지 그런 부분. 언니들의 두 사례를 봤을 때는 시댁이 되게 중요하더라. (웃음) 시댁 분위기가 다른데, 한쪽은 되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는 정말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댁 배우자의 가족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남편의 인성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 인성.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잘해주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G12-3,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했어요. 내가 살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평생 살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인성이 어떤가.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비치는가가 중요했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정말 본성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었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저만의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중요했어요. 부부 관계가 화목한지, 두 분이 그리고 이분들이 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많이 봤어요. 믿어주시는 편인지, 간섭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중략) 제가 또 물어본 게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집은 기독교예요. 거기는 불교인데,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조율대상이 된거죠. [G12-4, 강원도 비정규직, 30, 여]

“둘 다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댁이 정상적이면.**” [G4-1, 수도권 정규직, 32, 여]

이 외에도 결혼의 조건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자립 여부, 독립 여부를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본인이 본인 구실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본인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요즘은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저 그 상대방에 대한 조건인거고. 그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좋다는 가정 하에, 성격이 맞는다는 가정 하에 조건이 딱히 없는 거 같아요. [G4-5, 수도권 정규직, 26, 여]

4) 결혼 시기

결혼 시기와 관련해서는 답변의 방식이 흥미로웠다. 결혼 시기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참여자들이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언제쯤 결혼을 예상하는 지에 대해서는 30대 초반~중반 정도라도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결혼 적령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연차가 쌓여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고 소득을 어느 정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이 결혼하기 적절한 연령대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G9-2]는 ‘결혼 적령기’라는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혼을 하는 연령이라기 보다 아이를 낳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누군가를 압박하는 말이라는 것이었다. [G9-3] 또

한 적령기를 누군가 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결혼 적령기라는 게 어른들이 만들어 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하자면,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라는 말로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적령기** 라는 말은 어... 조금... 쓰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옥죄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저도 따로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적령기..지 따로 누가 정해주거나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G9-3, 경상도 정규직, 26, 남]

5) 비혼을 선택한 이유

한편, 비혼을 선택한 참여자들의 경우,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혼을 통해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의무에 대한 우려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였다.

(결혼 생각이) 사실 없어요. (중략)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이 됐던, MBA가 됐던, 사실 MBA가 제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외국에 나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사실 많이 없고, **결혼이라는 게 저랑 이 친구랑 이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잖아요.** 과연 그 시댁에서 용인을 해줄 것인가. [15, 수도권 정규직, 28, 여]

6) 동거에 대한 생각

청년들은 동거에 대해 과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0년 40.5%에서 2018년 56.4%로 높아졌다.(송승환, 2018.11.07.)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년들 또한 동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G9-4]는 동거인에게는 법적 보호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기에 결혼 제도에 포섭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G9-2]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일단은 어떻게 막... 누구한테 알리는 측면에서는 조금 여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가 동거했다고 하면 그래? 뭐 동거 했어? 이러는데, 여자 입장에서 두세 번 동거를 했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니까. **동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면 한 번 짬은 꼭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정?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동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동거라는 게 그니까 일단 결혼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거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게 굳이 뭐..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면 안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든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법적 책임을 전혀 못 지잖아요. 그럼 수술도 못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둘 중 하나라면 차라리 결혼이 낫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동거도 자기들만 괜찮다, 라고 하면, 그리고

부모님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사실혼 관계가 유리알처럼 굉장히 약한 관계다보니까, 주변의 조그마한 외압에도 깨지기 쉬운데, 그 관계를 억지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사람의 배우자 입장에서. 그니까 **결혼 준비 단계 있어서의 동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어... 사실혼 관계로서의 동거를 하면서 법적 지위라든지 책임 이런 게 없이 가는 건 사실상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만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요.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나. 출산

1) 출산이 갖는 의미

인터뷰 참여자 중 출산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없었다. 남성 참여자인 [G5-2]조차도 여성에게는 출산이 힘든 일이며, 자신이 여자였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공감하였다.

고생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자에게 고생길인게, 몸이 다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자였어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고생길이고, 충분한 합의와 계획에 따른 출산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해요. [G5-2, 수도권 비정규직, 31, 남]

수도권 대학생 여성 집단에서는 출산을 본능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G2-1]은 본능적 측면이 있다고 느낀다고 진술했고, [G2-4] 또한 [G2-1]의 의견에 동의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생산 방식 하에서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본능? 본성?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어쨌든 사람이 그런 본능으로 인해 태어났으니 그걸 본능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좀 본능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G2-1, 수도권 대학생, 24, 여]

출산은 사실 저도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처음에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간이 몇 명 없을 때. 지구상에. 근데 본인들이 살아가고 생존하려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식들이 농사를 지어줘야 되고 약간 그런 사회적인 기능 때문에. 그리고 국가라는 게 세워지고부터는 노동자가 많아야 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게 다 맞물려서 종족번식과 다 뜻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좋은 기회.. 그래서 약간 출산에 대한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다수의 인간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식으로 돈을 벌고 다른 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2-4, 수도권 대학생, 23, 여]

한편,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가족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출산을 희생으로 규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는 출산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이기예, 타인이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제가 가족이 대학병원에 분만실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접하는 편이에요. 뭐...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들이 겪는 힘든 과정을... (중략) 현실은

정말 장애를 얻는 사람도 많이 있고, 평생을 투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해서, 그런 나이대에 출산을 해도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건데, 그런걸 보면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인거잖아요. 애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정말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그래서 누군가가 섰볼리 왜 안 낳냐, 왜 어쩌냐 이렇게 의무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결혼과 다르게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참여자 외, 다른 참여자들 또한 출산의 의미를 설명할 때 ‘책임감’, ‘희생’, ‘귀찮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비출산을 선택한 이유

출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관점이 있는 가운데, 비출산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더러 있었다. [I5]는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낳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10-3] 역시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출산이 망설여진다고 하였다.

물론 애기를 되게 귀엽고 막 제 친구들 애기 낳은 거 보면 저도 이거 저거 해주고 싶고 한데, 과연 저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결론은 항상, 아니야. 우리는 애를 안 낳을 거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중략)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좀 있었다면, 저희 세대에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포기하게 되는 세대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 개는 아무 선택권도 없었을 거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계속 악순환 같은 느낌인 것 같은 게, 부모님.. **제가 이제 부모가 된다면 자녀가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출산하기가 선뜻 마음먹지 않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G10-3, 전라도 정규직, 25, 여]

한편, 자신의 직업이 출산을 택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직업이 간호사였던 참여자 [G10-2]는 임신을 할 때에도 순서를 정해서 임신을 해야 하는 환경을 언급하며 직업군이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G10-4] 또한 야근이 일상인 자신의 삶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직업군하고 출산, 육아랑 결혼이랑 되게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업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원래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간호사 출신인... 병원에서도 예약제라고 해요. 임신 예약제. 그래서 말을 하세요, 대놓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출산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병원들도 있었고,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출퇴근이 확실하게 시간이 정해진 분들은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크잖아요. 출산을 하고도. 근데 저... 제 쪽은 야근도 되게 많아요. 거의 일상이 야근이라서, 그렇게 되면 너무... 음... 힘들지 않을까.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G10-5]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망설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많은 참여자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를 상상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경제력 측면에서 출산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내 노후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키우고 누구랑 같이 사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어지고 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으니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경제 상황이 바탕이 된다. 하면 이제 하고 싶은데, 이 바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G10-5, 전라도 정규직, 31, 여]

제가 만약에 출산을 하게,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정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고달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만 해도 굉장히 [G10-1, 전라도 정규직, 32, 여]

특히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G10-4]는 경력단절을 맞게 되면 생계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출산이 자신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I6]의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그 여성들이 출산 전 맡았던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이 더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 이후 다시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제가 아닌 정규 일자리를 갖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출산이란, 직업적 성취와 출산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양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저는 평생이 보장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경력 단절하고 이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잡아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게 되도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직종이어서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당장 결혼하고 뭐, 출산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와 달지가 않는다고 해야 하나. [G10-4, 전라도 정규직, 27, 여]

예전에 했던 자리로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할리스 커피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는 게 경력단절여성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경력단절된 여성 분들이 다 바리스타를 하던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육아를 아무리.. **맞벌이부부라고 하지만, 뭐.. 남자분들보다 여자 분들이 더 많이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회사에 예전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게 애들이 좀 커서 학교를 다니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릴 때는 많이 비율 수가 없니까..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요즘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 일을...계속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오히려 **애를 낳으면 커리어가 끊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하고** 거기서 더 한 번 나가서 과연 내가 애를 낳으면 애는 이 사회에서 행복할까?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이처럼 출산에 대해서는 경력 형성의 문제, 육아의 문제 등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나 사회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예견하여 출산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참여자들이 많았다.

다. 공동체: 비혼 공동체/파트너십

결혼, 출산에 대해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사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에,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아서

안 되며,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은 결혼 외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앞서 언급했듯이 참여자들은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가치관의 차이, 경험,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물론 있었으나, 대체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안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도 제도로써 이들의 삶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G3-4]는 다양한 형태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히려 개인의 선택이니까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옆에 누구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중략) 이게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 지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들이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형태들을 보장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제도든 법이든 뒷받침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살아가는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2)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의 공동체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결혼에 대해 명확한 거부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또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G8-1]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울 것 같이라며 미래에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G6-4] 또한 결혼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음.. 그래도 혼자 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도움...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싫어요. (중략) 저는 그냥 친한 친구도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찾으면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전 그거일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유가 되고 서로 의견이 맞는다면 반려동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G8-1,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1, 여]

맥시мум은 세 명 정도 같이 사는 거? 성별 따라 관계없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생활 태도라든지 그런 음식 먹는 거라든지. **그냥 생활 태도에 잘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보다는. 그런 걸 더 선호하고 있고,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순간부터 여성한테는 백전백패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파트너십으로 같이 사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G6-4]는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답답하게 느껴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최근 마을 공동체, 세어하우스 등을 보며 가족 외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하였다. 이는 [I9]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I9]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복지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처럼 약간 돈 아니면 가족한테 좀 많이 의지하려고 하시고 약간 그런 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이거 외에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한동안 있다가 몇 년 전 부터는 수혜공동체라든지 이런 데를 알게 돼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가족 외의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같은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아는 지인, 아는 사람들과 공용 주택? 약간 셰어하우스처럼 사는 거? 방 따로 쓰고 거실이나 주방만 같이 쓰고. 그래서 한 건물에 이렇게 두, 세 명 정도. 지인들이랑 같이 각자 살되, 내 하나만 공유해서 그렇게 사는? (웃음) 그럼 월세 부담 줄고 괜찮, 방 세 개짜리. 제 지인들이랑 사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서구로 이사 오라고.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G4-3]의 경우 동성커플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제도의 미비로 인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제도가 갖춰진다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억압의 상징으로, 또는 그저 제도에 불과하다고 느껴지지만, 소수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딱히 뭐 나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어, 글썄요 이게 법적 혼인이 되려면 법이 바뀌면 될 거 같아요. 저는 결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게 하나 있고. 일단 가족을 만드는 게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이게 너무 그냥 개인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반자와 행복하게 산다.”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가 가족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들이 각자 어떠한 결혼, 출산을 상상하고 가족 형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청년들이 미래의 가족상을 그리는 데 있어 정책은 그다지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원 가족은 큰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의 불화, 형제자매의 불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사와 육아부담을 전담하는 어머니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아버지의 모습 등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직장 상사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 또한 결혼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육아하는 가정의 경우, 유독 현실적 어려움이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하였다. 주변으로부터 일부 긍정적 영향을 받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기혼 가정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거부감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였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은 원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었다. 반면, 여성이 겪는 육아와 경력단절의 고통을 체감한 여성 청년들의 경우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적었지만, 결혼과 비혼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고 있었다. 이는 3장에서 인구감소 및 1인가구의 증가가 새로운 문화를 출현시킬 것이라는 맥락과도 이어질 수 있다. 즉, 1인가구 및 비혼 문화의 확대는 ‘외로운 청년’을 늘리기보다는 관심사나 필요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함께 할 만 한 배우자의 존재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남성들의 경우 마음이 잘 맞는 동반자의 존재 자체만 언급되었다면, 여성들의 경우 시댁, 즉 배우자의 원 가족 분위기 역시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짧은 결혼의 조건은 경제적 요건과 주거였다.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은 청년들의 경제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결혼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들 결혼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참여자들의 대답 속에 본인이 염두에 둔 결혼 시기는 있는 것처럼 보였다. 즉, 구조적으로는 결혼 시기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은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야 한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혼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선택’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서는 비혼이란 현재 처한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비혼을 선택한 경우, 배우자의 존재나 평등한 질서, 경제력, 주거, 경력단절과 육아문제가 완화된다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이 본인의 가족을 형성하는 데 원 가족과 주변의 관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변의 기혼 가정 및 육아 가정 중 본인의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가족 형성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등한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자란 청년일수록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점 역시도 주목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혼자 늙어 죽을 셈이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곧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혼인 청년들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러한 방식이 제도 안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제1절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

제2절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

제3절 소결

5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 생각

청년들에게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많은 경우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 떠올렸다. 실제로 정부는 제1차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비롯한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증가시켜왔다(이삼식, 2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인구정책의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앞서 다룬 바와 같다. 청년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출생이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G1-5) 것이며, 사회 전체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출생에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은 단편적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성별 간의 견해차가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뭔가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중에 ‘할마·할빠’ 정책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손주들을 봐주면 일정의 금액,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구요. 그럼 노년의 삶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분들은 육아해서 다 키워냈는데 다시 손주들을 육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개인적으로만 치중을 해서 오히려 보고 더 낳기 싫어지는 기분. [G2-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왜

이 세대에는 그게 왜 어려울까?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어서. 좀 저출산이 출생, 결혼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적 문제까지 같이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어요. [G2-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일단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저출산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나라에서는 그런 걸 안보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넣으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안 낳아. 빨리 낳아.' 이러고만 있으니깐.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뭐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이 너무 단편적인 거 같아요. 단기적이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장기적인 문제잖아요.** (중략) 아이를 키우는 뭐 태어나서부터 이제 커가는 과정에 모든 부분에서 꼭 경제적인 부분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책 자체가 다양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정말로 머릿수만 늘리려는 정책들만 나오는 것 같고, 솔직히 첫째 가졌을 때 얼마 주고 이런 게 돈을 주는 건 정말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방법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중략) 그런 것보다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하고.**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흥미로운 부분은 청년들에게 출산이 '개인적인 일'로만 한정하여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G2-2), “사회가 전반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G9-2)와 같이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청년들이지만(경향신문, 2019.

09.07.; 뉴스1, 2019.09.14.), 이들은 사회 속의 개인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5장에서는 이와 같이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후 이들이 기대하는 정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제1절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

지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근본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례로 든 정책은 조금씩 달랐다. 또한 청년들은 인구정책을 떠올렸을 때에 정책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하기도 하고,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관련된 내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엮여있긴 했지만, 크게 ‘경제적 지원정책의 한계’,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평가’, ‘인구정책 대상으로서의 분노’, ‘인구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경제적 지원정책의 한계

많은 청년들은 인구정책 중 출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떠올렸다. 20대 청년들은 주로 출산에 따라 지급되는 “몇 십 만원”(G2-4), “금 몇 돈”(G1-4) 등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몇 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은 “최악”(G1-4)이며, “조금 지원”(I11)은 될 수 있어도 아이를 낳을 동기는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적 결혼, 출산과 거리가 있는 대학생들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인구정책이 출산을 반대에는 전혀 효과가 없

을 것임이 예견된다.

국가차원에서는 지금 출산을 하면 몇 십 만원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일생일대에 엄마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뭐 꿈을 포기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G2-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애를 키울 수도 있는 사회적 다른 여건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나온 단편적인 거 셋째를 낳으면 금 몇 돈을 준다. 이런 거 최악이었던 거 같거든요. 별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많이 없다고 느끼고. (중략) 자기네들 투표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느낌. [G1-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보통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고 두 명 낳으면 얼마 주고, 세 명 낳으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뭔가 혹 삼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요즘에 수당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육아수당이나 뭐 출산 수당이나... 아니면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라던가, 그런 경제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낳게끔 할 만한 동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낳은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은 될 순 있어도... [I11, 수도권 정규직, 27, 남]

30대 청년들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20대 청년보다 다양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경험 또는 주변의 사례를 통해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수당 외에도 주거관련 지원정책,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언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G3-4)으로 평가하였다.

집 그런 대출 조건에 신혼부부 주택 보금자리 대출이나 자녀가 꼭 있어야지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대출들이 되게 최근에 되게 이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국가가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막상 실상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신혼부부와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그게 지금 병원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급여화 되어있는 진료 과목이 있고 비보험, 돈을 더 내야하는 급여가 있는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산모한테 혜택을 주는. **사소한 의료 쪽에서는 그런 사소한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위에서 [G10-2]는 현재 신혼부부 주택 보금자리 대출, 유자녀 가구에 게 주어지는 대출 정책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유자녀 기혼 여성인 [I2]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I2]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신청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을 제출하는 등 상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모순적이고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요. 이상적인 건 그건 거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드니까. 요즘에는 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막 있던데요. 그 조건들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 받을 때도 그 원천징수 같은 거랑? 어쨌든 얼마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서류 같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대출받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빌려가는 건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 맞는데, 돈이 당장.. 그런 게 없는데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I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2.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생각

청년들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청년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있어 “정책상으로는 남성도 출산휴가가 되”(I10)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직장에서의 간접경험을 통해 남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인정을 안 해”(I10)주거나, “출산휴가 가면 보통 조만간 돌아오고 나서 조만간 퇴사”(G9-4)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언급한 참여자들이 모두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출산휴가 사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저보다 선배 중에 이제... 출산... 남자 분인데, 와이프가 출산을 연년생으로 두 명을 낳았어요. 정책상으로는 남성도 출산휴가가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못 받는 부분을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웃음) 생각이 드네요. [I10, 수도권 정규직, 27, 남]

저희 쪽에서는 출산휴가 가면 보통 나중에 퇴사를 해요. 왜 그런지는 다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남자들 출산휴가 가면 보통 조만간 돌아오고 나서 조만간 퇴사를 하죠.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한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언급하는 데 있어 단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남성들은 대부분 ‘출산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육아휴직’이라고 주로 표현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드문 현실이 단어선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출산·육아 관련 휴직 사용, 양육 참여가 증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그 이후의 아동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한 여성들은 육아휴직이 “꼭 있어야 하는 제도”(G2-2)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쓴 그분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G2-2), “승진에서 밀릴”(I3)뿐 아니라 “면접에서 또 떨어지는”(I3) 계기가 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결국 여성들에게 있어 “애를 낳으면 난 (일을) 못하겠구나.”(G8-2)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출산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하는 제도이고 사실 육아휴직 쓰는 게 그렇게 눈치 보여서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에 있어 보니까 그 육아휴직 쓴 그분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건 알지만 못 쓰는 사람도 많고. [G2-2,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법으로는 ‘육아휴직 해가지고 승진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지만 암암리에 조직에서 육아휴직 했으니까 패스라고 눈대중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구요. 말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했으니까 승진에서 밀리고, 말하지 않아도 육아를 한 기간은 공백기니까 너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결국에는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애를 낳으면 난 못 하겠구나, 일을 못 하겠구나.’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나 혹은 기업 사회들의 어떠한 인식이 좀...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회사 자체, 위에서가 ‘여자가 임신하면 일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실제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은 그림의 떡이었다. [I2]는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겪으면서 공무원이 왜 좋은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제가.. 저도 공무원에 대해서 여태 좋게 생각 안했었는데...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요. 복지 같은 거는 확실히 국가에서 일하는 거니까 다 지원이 되고... 확실하잖아요. 그런거는... 하아.. 왜 다 공무원 공무원 하는 지 알겠더라고요. [I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실제로 통계청(2019g)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2.8%), 공기업(21.7%), 대기업(17.4%) 순이라고 한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24%로 평균을 웃돌았다. 공기업 선호도는 20.9%, 대기업은 15.6%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I2]의 발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한

국사회에서 그나마 눈치 안보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이는 청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5년 연속 1위이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의 안정성에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신뢰할 만한 육아·보육지원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사실상 있는 지 없는 지의 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이테일리, 2020.01.02).

3. 인구정책 대상으로서의 분노

인구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극렬한 분노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2016년 12월에 공개된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지자체 간의 출산율 경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08.25.), 지도에 가임기 여성 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을 하나의 인간이 아닌 ‘출산 기계’ 혹은 ‘가축’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오마이뉴스, 2016.12.29.; 중앙일보, 2016.12.29.). 이후 행정자치부 사이트에서는 출산지도가 사라졌지만, 여성들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여성들은 “출산의 도구”(I5)나 “동물”(G4-1), “자원 취급”(G4-2)을 당하는 데에 “불합리하다”(G4-1)고 느꼈으며, 심지어는 “강간해서 애 낳으라는 건가”(G4-2)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출산에 대해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G6-3) 같다는 느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이라고 호칭을 그냥 공적인 문서에다가 호칭을 쓴 거는, 1번 **여자는 가임의 도구가 아닌데. 출산의 도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쓰지?** 2번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지도로 만들었을까?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너무 동물 말하는 거 같아요. 막 개구리는 사월부터 유월까지 산란기입니다. (일동웃음) 그리고 여기에는 개체가 부족하니까 이 동네에 개체를 옮겨야 합니다. (웃음) 이런 거 생각나고. 너무 동물 취급하는 거 같아서 씨 뭐지 이게?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어요. [G4-1, 수도권 정규직, 32, 여]

거기 가서 강간하라는 건가? 강간해서 애 낳으라는 건가? 애를 낳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성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약간 등급을 나누는 거 같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여자 못 낳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의도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중략) **제가 왜 기분이 나빴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자원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요즘에는 저출산도 저출생이라고 표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가임기 여성지도만 뿌리고 저출산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남성들은 출산지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모두 출산지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출산지도가 가임기 여성의 수를 표시한 지도라는 데 대해서는 강원도 20대 남성들만 “상품화”(G11-5), “약간 불편함”(G11-5)과 같은 비교적 간결한 대답이 있었고, 충청도, 경상도 지역의 20, 30대 남성들은 모두 의견이 없었다. 수도권 직장인 남성 또한 들어본 적이 없는 경

우가 많았고, 관련한 의견은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목적은 모르겠”(G3-3)다는 수준에 그쳤다.

되게 상품화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노골적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좀 불편한? [G11-5,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가축 같은. [G11-3, 강원도 비정규직, 25, 남]

그걸 그냥 산부인과에서 여성 개인이 가서 자신의 생체 나이? 이런 걸 했을 때는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이걸 정책상 고려를 해야 하는 건가? 보건복지부에서 진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 하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했다고 하면 도저히 목적을 모르겠어요. [G3-3, 수도권 정규직, 25, 남]

그러나 수도권 남성 대학생집단에서는 출산지도를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언급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을 알고 있었다. 학교 수업, 관련 시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했으며, 용어 사용에 있어 “조심해야겠구나”(G1-5)라는 생각까지 이어졌다고 대답하였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대학가에서 공유되는 분위기의 차이, 수도권에서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각종 집회와 시위의 현상이 성 평등 관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으로나마 남성들의 성 평등 인식이 청년이라는 범주 내에서도 지역,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지만, 그 저출산율이 심각하다고 해서 예전에 정부에서 내놔던 데이터인지 지표인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시군구별로 아마 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20대 가임기 여성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굉장

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략) ‘굉장히 사람을 너무 수단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G1-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5, 남]

교과서에서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임기 여성분들의, 가임, 그분들에게는 그게 단순히 ‘자신을 수단이나 공장처럼 느껴지면은 기분이 나쁠겠다.’ 싶어서 ‘이런 거는 표현도 조심해야 하고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그 때부터 인식을 했어요. [G1-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학교 수업에서 접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접했을 때 ‘이게 문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가임기 여성, ‘나 임신 가능한 기간이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된 소리 하는 거야.’라고 넘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여성 도구화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아 그랬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 같긴 해요. [G1-5,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남]

4. 정책 소외를 느끼는 청년들

앞서 여성청년들은 ‘출산의 도구’로써 정책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한편으로 정책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의 경우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청년들은 가점으로는 절대 못 이”(G4-2)기고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결혼 안 하면 너네 못살게 한다.”(G6-5) 느낌을 받는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고, 소외되는 것도 싫다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말이지만, 개인의 삶을 존중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는

점에서 상통한다.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직장인들이었다. 이는 많은 여성청년들이 비혼을 고려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비혼을 고려할 경우 정형화되지 않은 삶의 방식,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독립을 목전에 둔 직장인 여성들에게서 청년 주거정책의 1인 가구 배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 동성애 등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배제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우리한테 뭐 청년을 위해 뭐 요새는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부양도 하고 출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요구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그게 굉장히 적고, (중략)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 안하면 너네 못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왜 청년들은 집 안 사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약 같은 것도 보면은 일반 청년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부부 특공(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그게 제일 많고. 아니면은 다른 특공 대상들이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일반 청년들은 가점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그래서 그냥 마음 맞는 친구랑 둘이 주거를 하면 맞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주거정책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혼을 해야되는구나.’ 라는걸 느꼈어요. 신혼부부 위주로 너무 되어 있고, 신혼부부가 이성... 이성이고 유자녀인, 이성 유자녀인 부부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동성이거나, 제 친구이거나, 제가 입양을 했건 **뭘 하건 다 안되는 거예요. 다 안돼.**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학교를 벗어나면서 교육정책의 대상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성의 경우 직장 내에서 출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방식에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여자 [G4-4]는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정책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싱글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관련 정책들이 “그분들(임신, 출산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그냥 계속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임신,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약간의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참여자의 응답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참여자 [I9]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작은 파이”를 두고 모두가 “너넨 아이가 있으니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유자녀 가정에 더 많은 정책이 적용되는 건 불만이 아니지만, 유자녀 가정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정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즉, 비혼 청년들도 독립하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G4-4)다고 생각하다 보니 청년정책이 기혼청년들에게만 집중되었다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다녀보면은 수당, 휴가, 뭐 복지 포인트 모든 거의 기준은 ‘그냥 배우자가 있다.’, ‘부양할 사람이 있다.’ 그거거든요. 진짜 **미혼인, 싱글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그 분들을 보호하고 그런 프레임에서 만들어졌겠죠. 기존의 정책들이. 저는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육아, 임신, 출산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배려를 받고 뭐 부양하시는 분들은 부양하시는 대로 배려받고. 그렇게 해서 빠지시면 저는 그냥 계속 회사에서 일하는 거

예요. 저 혼자 8시간, 9 to 6로 근무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데 뭐 너도 언젠가 하면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G4-4, 수도권 정규직, 30, 여]

이 방 안에 여성 1인 가구도 있고 독립 생활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아니, 동성애자가 아니라 LGBTQ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고 해봐요. 신혼부부 있고. 근데 이 방 안에 이 작은 파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 파이를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파이 가지고 나눠 먹어. 근데 약간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고, ‘그래도 너넨 아이가 있으니까 너네가 먼저 먹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중략) **‘이 사람들(유자녀 기혼 가정을 제외한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 (받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파이가 이 사람들(유자녀 기혼 가정)한테 간다고 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 건 아니예요.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한편, 참여자 [G4-4]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출산·양육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출산·양육 휴가를 아이를 낳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표현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반적으로 출산·양육 휴가의 사용이 퇴사와 동일시되는 비정규직에 속하는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의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들에게서는 스스로가 정책에서 소외된 것 같다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결혼 의사가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언젠가는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관련 정책 자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

청년들은 바라는 인구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해주었다. 이들은 지금의 인구위기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쉬웠던 점, 정책에 담겼으면 하는 부분을 말해주었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부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에서 인용된 내용과 연결하여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청년들이 언급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성 평등한 사회문화의 확립’, ‘다양한 가족의 형태 인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인구위기와 관련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아닌 인구위기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

청년들은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 중 하나로 ‘개인의 행복 증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 본인의 행복이기도 하지만 훗날 아이를 낳는 미래를 상상하였을 때 자녀의 행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애를 키우는데도 옛날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G9-4)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의 사회가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참여자 [G2-1]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아이를 옳게 기르고 싶어하”는데 “사회가 옳지 않고 차별과 편견에 찌들어 있”어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 [I5]는 본인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사회에서는 “애들은 고통받을 거고, 그걸 키우는 부모들도 되게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참여자 [G2-1]은 차별금지법 등

을 통해 아이가 옹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좀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보았다.

저는 사회가 문제라서 저출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애들 키우는 데도 옛날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는 다 뛰어놀고 하는데, 요새는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힘들어해서 다... 출산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니까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 저는 어차피 여유롭고 하면 인구는 늘 것** 같거든요. [G9-4, 경상도 정규직, 33, 남]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아이를 옹게 기르고 싶어하잖아요. 막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옹지 않고 차별과 편견에 찌들어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좀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를 정확히 시키고. [G2-1,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4, 여]

교육 제도로도 계속 바뀌고 뭐, 저만 생각해도 저랑 제 친구들 생각해도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고 (중략) 어차피 애들은 고통받을 거고, 그걸 키우는 부모들도 되게 고통받을 거고...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앞서 참여자 [G9-4]는 인구위기의 주요한 문제를 아이들의 교육비라는 경제적 차원으로 파악했지만,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생활이) 여유롭고 하면 인구는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은 지금 사회가 “개개인의 삶이라는 데 더 집중되

는 사회”(I11)이고, “1인으로 살 때도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껴야지 또 (그 다음을) 생각”(G6-3)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지금의 삶이 각박하지 않아야 미래를 상상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청년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청년들에게 인구정책은 지금 살아가는 인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이제 개개인의 삶이라는 데 더 집중되는 사회인데 뭔가 이제 나라, 조직, 약간 이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돈을 주면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가장 큰 건 좀...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I11, 수도권 정규직, 27, 남]

약간 지금 방향은 ‘신혼부부 되고 출산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1인으로 살 때도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껴야지 그다음 또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걸 하면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좀 생각의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윗세대랑.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2.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청년들은 제도적으로 명시된 출산·양육 휴가가 ‘회사 분위기 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휴가, 나아가서는 보육시설의 보장에 있어 청년들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출산휴가가 퇴사 수순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G9-2)고, 중소기업이라도 출산휴가 보장을 “무조건 의무화”(G8-5)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아가 참여자 [G2-3]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를 안 낳아야 겠다”는 거라며 “회식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기업에서 무조건 일단 어린이집”을 제공하는 등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퇴사하고, 퇴사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출산휴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건 동일하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만약에 진짜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그런 거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업의 책임을 물린다든지** 그런 제도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기업에서의 압박? 그런 압박감도 있으면 진짜 안 돼. 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너무 모순적인 그런 방향인 것 같고. [G8-5,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1, 여]

저는 기업에서 **무조건 일단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회식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되지. 제가 어학연수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미국은 이제 학교를 무조건 차로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그 아빠인 분이 회사에 갔다가 아이를 픽업하러 중간에 애 학교를 가고 이러는 거예요. (중략)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를 안 낳아야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아이를 낳으면 회사도 못 다니게 되는 거고 진짜 우울증 오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을 환경을 좀 뭔가 낫게, 좋게 해주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G2-3,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3. 성 평등한 사회문화의 확립

성 평등하지 않은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도 상세히 다루었지만, 어떤 맥락에서 청년들의 제안이 나타났는지 알기 위해 직장에서의 차별과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장에서의 차별은 일·가정 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부부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부분에 다루고자 한다.

여성청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여자가 애를 낳아서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인식”(G12-2), “여자는 일시적으로 좀 (일을) 다니다 시집가고, 애 낳으면 그만둘 사람”(G4-3)이라는 생각이 잔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자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이 빠르고”(G4-3), “남자가 많이 버니까 여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I3)어진다. 청년여성들에게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지역, 노동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뀌고,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걸) 정말 많이 어른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저희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저희보다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저희를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여자가 애를 낳아서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G12-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

직장 내에서. 뭐 남성은 가족의 부양자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이 빠르고 약간 그런 거.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그 가부장제 안에서 깔려있는 거잖아요. 여성이 일시적으로 좀 다니다 시집가고 애 낳으면 그만

둘 사람. 그러니까 유리천장. 맨날 그게 너무 루틴처럼 배겨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으로서 존중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개인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거기에 맞춰 줘야지. (중략) 개인, 개별화해서 이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월급을 주는 거고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복리후생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기업문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제도적으로 애기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누가 애를 낳고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또 그게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 남녀임금격차잖아요. **남자가 많이 버니까 여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I3, 수도권 비정규직, 27, 여]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I5) 느낌을 받았다. 성별 간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대상이 어떤 성인지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대우, 여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후에 육아를 전담했던 참여자 [I9] 친구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맘충 지나간다고” 욕을 들어야 하였다.

그냥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면 좀 해결이 하나씩 될 것 같아요. (중략) 여자들은 당연히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꾸 이분화하게 되면 끝이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우리랑 남자랑 동등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 택시 안에서도 맘껏 잘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술 먹고 돌아다녀도 막.. 술 먹고 여자애가 쓰러져있으면 ‘저런 여자애들은 성폭행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폭행당해도 싹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이랑 남성이랑 범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을 한다든가. 막 진짜 여자가 남자 죽이니까 세상이 마녀사냥

을 했으면서, 동일한 일이 남자 여자 바뀌어서 났을 때는 ‘원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여자를, 여성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뭔가...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제 친구만 해도 다 경단녀인데요. (중략) 맘충 지나간다고 엄청 욕을 욕을 하고. 애초에 모든 교통수단이나 애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일(1)도 아닌데, 사회적 시선도 구린 상황에서 애를... 애를 낳는다?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성차별이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여자[G12-2]는 지금까지 사회문화 및 정책을 형성해 온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저희(청년)를 아예 이해를 못”(G12-2)해서 사회가 바뀌었음에도 성차별적인 정책 기조와 사회 분위기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여성들은 이러한 “인식이 바뀌”(G12-2)고,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I5)아야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요하다. 참여자 [G4-3]은 기업에서 사람을 도구나 돌봄 제공자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서 존중” 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해진다면 여성을 비롯한 다른 누구도 가정 내 돌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임금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우리사회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여성이 돌봄에 특화되었다는 편견이 없는 때를 가정한다.

4.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개인에 대한 존중은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도 포함한다. 개인이 생각하는 결혼이 “기존 세대가 받아들이는 결혼”(G6-3)과 다르고, “지금 20, 30대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많”(I6)아진다는 점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도의 가족”(I6), 즉 일종의 법적 “안전망”(G6-3) 차원에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청년들도 있었다.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 ‘결혼’이라는 한 가지 방식에서 벗어나 이성 간의 결속을 피하지만 가족 간의 결합은 거부하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살고 싶은”(G6-3) 사람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많이 논의가 되었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략) **그런 법 같은 게 있으면 뭔가 다른 식으로 살고 싶은 분들도 좀 안전망을 가지면서 살 수도 있고** 또 그냥 이성애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결혼과 기존 세대가 받아들이는 결혼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Ningul처럼 다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있다면 결혼 대신에 그런 결속을 택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G6-3,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가족의 형태로 인정되는 게 결혼이나 혈연 말고도 동거인? 그런 것도 가족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뜨잖아요. 동거인이라고 해도. 근데 그게 진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도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닌 사람들

이 많잖아요. [I6, 수도권 비정규직, 26, 여]

참여자 I5는 각종 축하, 휴가 면에서 기혼자와 비혼자 간의 차이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이 과거의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와 다른 가족 형태를 제도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면, 비혼식은 이를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 비혼식은 기혼자들이 결혼식을 통해 습득하는 휴가, 축의금 등을 비혼자들도 향유하겠다는 실용적인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조금, 비혼식을 하면 어떠냐. 그런 걸 제안을 했어요. 왜냐면 비혼 선언 하신 분도 많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누구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막 러쉬 이런데도 보면 비혼 축하선물, 비혼파티, 비혼을 선언하면 그거에 맞는 휴가도 주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점점 확산될거라고 생각해요. [I5, 수도권 정규직, 25, 여]

또한, 청년들은 기존에 정책대상으로 통용되는 ‘정상가족’이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였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가족의 한 형태로 논의되어 오긴 했으나, 정책적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G9-2)기 때문이다.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은 하나의 가족형태로 명명되어 왔지만,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에게 정책이 집중됨으로써 청년들에게 이들을 소외시킨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차별적인 시선도 너무 강하”(I9)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참여자들은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 대해 “좀 힘이 들어가야 되”(G9-2)고, 아이를 가진 미혼모가

정에게도 “집”(I9)을 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랐다.

정상적으로 부모가 있는 가정에 지원 쪽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지원도 좀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출산을 장려하려면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미혼모가 낳는 아이들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사회에서 지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너무 강하고 (중략) 정상가족이 아니어도,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으면 여기서 집 줬으면 좋겠고. [I9, 수도권 비정규직, 29, 여]

5. 인구위기 해결 방안의 다양화

인구위기의 해결 방안이 저출산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준 청년들도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진행에 따라 부족해진 부양인구문제는 “자본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이 부양을 할 수도 있”(G4-3)으며, 아예 “AI가 (부양 역할을) 대체”(G6-4)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지역 간 인구수 차이도 인구위기보다는 “재분배의 문제”(G6-4)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세계화가 많이 됐”(G6-4)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해결”(G6-6)하지 않고, “난민을 받”(G4-3)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내 출산율 제고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인구위기 해결을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여성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에 ‘인구위기 해법으로 제시되어온 출산’에 대한 부담 혹은 거부감이 여성들로 하여금 인구위기 해결방식을 보다 적극적

으로 고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인구가 부양을 해야 되는가?’ 자본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으로 사람이 붙어서 했던 일을 이제는 기술이라 든가 자원이라든가. 꼭 국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인구들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와서 지내고 있잖아요? 난민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포용정책을 통해서. [G4-3, 수도권 정규직, 33, 여]

지방에 가면 그런 게(인구감소가) 확실히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인구위권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재분배의 문제지.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 적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에 인구, 젊은 사람들이 늘어날까? 전혀 아니잖아요. (중략) 요새는 세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이주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유입되면 인구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약간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 그 위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그 부양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시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 약간 좀 많이 쓸모가 덜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G6-4,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이상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넘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호주나 이런데 보면 되게 외국인 노동자 부족하니까 거꾸로 오라고 하잖아요, (중략)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게 해결을 하지? 왜 애만 낳으면. 왜 애기만 낳으라고 하지?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G6-6, 수도권 비정규직, 32, 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들이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 기대하는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들을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을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동일시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해당 정책의 사례로는 출산지원금, 주거지원, 산모지원 등을 꼽았지만 하나같이 출산을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이 사회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장기적인 과업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은 단편적, 단기적인 접근만 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는 본인 스스로가 성인으로서의 이행기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강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양육부담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내에서 출산, 양육휴가를 사용하면 승진배제, 퇴사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학습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청년의 경우 ‘출산의 도구’로써 인구정책 대상이 되었다는 데에 분노하는 한편,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소외감을 느꼈다. 전자는 출산지도와 같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원 취급 한다는 데 대한 반발로, 여성들은 지역, 나이, 노동지위를 막론하고 분개하였다.

남성들은 수도권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출산지도의 존재를 몰랐다. 성평등 인식이 지역,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이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은 많은 여성청년들이 비혼을 고려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대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책내용보다 정책의 방향성이 주로 언급되었다. 청년들은 청년 본인과 혹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옳은 사회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사회와 개인의 행복, 삶에 대한 보장이 선행될 때에 미래를 상상할 여력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조하였는데, 출산·양육 휴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음에도 회사 내 분위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부부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잔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사회문화와 정책을 형성해온 기성세대가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여성들은 기존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고, 모두를 개인으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은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 가족에 대한 형태도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가족 형태의 제도적 인정을 위해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비혼식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년여성들은 인구위기 해결 방안에 있어 국내 여성인구의 출산율 제고를 거부하며 재분배, 이민정책, 기술을 통한 돌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 6 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제4절 마치며 : 변화하는 삶의 형태 ‘느슨한 연대’

제1절 결론

1. 요약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2028년 이후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언론, 학계에서는 ‘인구 충격’, ‘인구 절벽’, ‘인구 전쟁’, ‘인구 쇼크’ 등 인구 위기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 2005년 이후 제1차, 2차,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인구 정책들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시행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다. 출산율은 더 낮아져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에 진입한 나라가 됐다. 게다가 정부 대책과 정치인과 전문가 집단이 던지는 메시지들은 청년들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인구 정책과 청년의 삶이 괴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이다. 이 중, 성별, 거주지(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생·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분류하여 모집하였다. 그 결과, 4~5명으로 구성된 12개 그룹과 FGI를 진행했고, 15명의 청년과 각각 1:1 인터뷰를 진행하여 청년 총 74명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청

년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에게 인구 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구 위기’와 청년들이 맞닥뜨린 삶의 위기는 달랐다. 당장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몇십 년 후에나 닥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그다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혹은 새로운 사회적 흐름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도 인구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재분배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기술발전, 이민 등과 같이 출산장려 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강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경력 단절 등의 기회비용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로 인해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여성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저출산 현상이 당연한 것,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저출산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정부나 언론의 행태가 성차별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가 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 보도들이 비혼을 선택한 여성을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물으며 출산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여성 청년들에게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기보다 가부장제 속에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실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정부가 극심한 양극화, 억압적인 기업문화 등 가족 구성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실패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넷째,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과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청년들의 가족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심지어 청년 본인의 노후도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돌봄의 책임이 청년 개인에게 지워져 있다보니, 선택의 영역인 결혼과 출산은 비혼과 비출산을 통해 선택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이어 두 번째는 가족 구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요약하였다.

첫째,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삶'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들의 바람과는 다르다. 특히 청년들이 성장해 온 원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은 청년들의 바람이 환상에 가깝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족 중심주의 속에서 가사 부담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떠맡아온 어머니의 삶과 조언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결혼 생활과 육아 과정을 보면서 개인의 삶과 병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의 존재이다. 물질적 조건으로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준의 경제력이며, 비물질적 조건으로는 원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나를 평등한 관점에서 존중해주는 태도이다.

셋째, 청년들은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삶이 침해된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경력의 유지 등 자아 성취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청년들은 지금의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한 뒤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기에, 지금의 결혼 제도 하에서는 본인의 주체성이 제대로 보장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등장이 예견된다. 비혼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향후 친구나 관심사가 비슷한 지인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양하면서도 공통의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살아가는, 필요에 의한 느슨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한편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청년들의 행동 변화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들

어가는 장기적인 비용과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1~2년이 아니라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일이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과 체력, 육아에 필요한 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이미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 여건상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을 사회의 보조적 역할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채용에서부터 인사고과까지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승진은 ‘유리천장’에 막혀 있고,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주어진 돌봄의 부담은 여성의 직업적 성취와 양립되기 어렵다. 동시에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속에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돌봄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되는 메시지들조차 여성의 노동을 하나의 가치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출산과 육아의 부수적인 차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배제시키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 선택의 문제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기존의 정책들은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청년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지 않

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하는 만큼 정책도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합의 : 청년들의 생각

가. 기성세대와 생각의 차이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다. 기성세대와 생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지점이다.

첫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성세대가 제시하는 해법과 청년들의 생각은 전혀 방향이 달랐다. 기존의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주로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유인책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청년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년들은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생산성의 상승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인구 증가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인구 감소의 일정 부분은 기술력의 발전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간 청년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를 요구받았다.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접하면서 기계를 통해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은 이민정책을 인구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청년들이 말하는 이민 정책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외국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 정책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프랑스도 과거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를 확대할 수 있었다(경향신문, 2019.02.14.). 물론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순혈주의 속에서 국내에서의 해결책만 찾기보다는 외부에서의 해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는 데에는 그들이 기성세대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구 문제 해법을 상상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둘째,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에는 남성의 79.5%와 여성의 67.9%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남성의 52.8%, 여성의 43.5%로 감소하였다(손승영, 2018). 출산에 대한 의향도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있어 남성은 66.2%, 여성은 52.2%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김기현, 2016) 2018년 기준 남성은 38.8%, 여성은 49.3%(김기현, 2018)로 하락하였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겨졌던 반면, 지금은 ‘선택’ 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성세대에게 결혼이란 본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하기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이뤄 대를 잇기 위함’의 목적이 컸다. 따라서 개인

의 의사보다 집안끼리의 논의를 통해 ‘중매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금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바라본다. 아이는 그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또한 자손을 잇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지금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사는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맞춰나갈 수 있는지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가 변화하면서 결혼 생활의 변화된 방식과 관습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 조상에게까지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나와 배우자 간 사적인 영역인 출산에 대한 간섭이 들어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남자는 정규직 주 노동자,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성별 분업이 익숙한 기성세대와 성평등 교육으로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시월드’라는 신조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며느라기’라는 웹툰이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자아낸 것은 과거에도 암묵적으로 일어났던 고부갈등의 반복이 아니다. 더 이상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 인구문제의 본질 : 재분배

인구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인구 수의 증가나 감소가 아니라 재분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인구 수가 늘어나든 줄어든든, 결국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는지가 중요

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수가 부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부의 양극화 구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사회의 위기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대한 비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가족계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불균등한 재분배, 격차의 문제였다. 돈이 없어서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까봐 벌써부터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 격차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보니 아이가 나와 같은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아이에게 미안해서 혹은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이 두려워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청년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어 대학 졸업 후까지 거의 십여년을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버텨내야 했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자녀의 대학 진학→전문직 또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세습과 그 격차들”(조귀동, 2020)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격차사회인 ‘헬조선’ 속에서 ‘노오오오력’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다.

또한 가족 구성, 부모의 부양을 논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것, 일상을 영위하는 것조차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지속가능하기에 다른 문제를 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결국 청년세대에게 체감되지도 않는 인구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격차사회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한국의 인구정책이 ‘인구 수 억제’에서 ‘인구 수 증가’로 방향을 전환한 지 약 15년 정도가 지났다. 그 사이에 제1~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까지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숏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들 각각이 노동시장에서부터 육아환경, 보육제도, 주거, 건강분야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계획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 15년간 출산율은 더 낮아졌고, 인구 감소 시점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의 내용이 문제였을까? 지난 4장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의 조성, 안정적인 주거환경,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만한 소득과 노동조건이 갖추어진 일자리, 공적노후보장제도, 기타 복지제도의 강화 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 이미 많은 정부기관과 국책연구소,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이다. 가장 처음 발표되었던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로 표현되었던 내용이 가장 최근 발표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서는 “영유아 돌봄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 대대적 확충,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 등 주거지원정책도 제2차 기본 계획에서부터 계속 포함되었다.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지적했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

방,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각종 지원책들 역시도 제1차~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꾸준히 포함되어 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보여주기 식 정책”,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인구감소가 문제이니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 “머릿수만 늘리려는 정책”,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안 낳아, 빨리 낳아 이려는 정책” 등이다.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생색만 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뒤집어 바뀌지 않는 한”과 같은 말도 언급된다.

이처럼 청년 당사자들과 정책 간 괴리감이 왜 발생하는 가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제도들이 형식상으로는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을지언정 현실에서는 거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서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까지 현행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 다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이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부터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빠짐없이 등장한 제도이다. 하지만 2017년 각 사업체의 활용률은 7.2%에 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더 안타까운 건 이 수치가 전체 일자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체들은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어 이 통계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통계청, 2019a).

이 밖에도 출산전후휴가제도의 활용률은 13.2%,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7.1%,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6.0%, 난임치료휴가제도는 1.0%

로 처참한 수준이다.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결과가 아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든 하지 않든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사내에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와 같이 애초에 제도적으로 쓸 수 없는 환경이거나,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 ‘근로자 수의 적음’,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여기에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야근 및 회식 문화,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경력 단절의 우려까지 더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여성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면서 채용상의 성차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신청되도록 통합서식을 개발하고, 육아휴직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하며, 노사정 협력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부담들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런 제도들에 대한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1인당 1,488곳을 담당해야 한다(서울경제, 2019.07.0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의무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어렵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이라는 불분명한 방식에 맡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다.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너무 적다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수백대 1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5.8%에 불과하다.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54.6%로 절반 이상이다(유해미 외, 2019). 사실상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 어린이집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약 1만원으로 양 부모가 모두 직장인인 가정이 한 달간 하루 종일 이용한다면, 한달간 월급을 모조리 아이돌봄서비스에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마저도 낮은 처우로 인해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질도 담보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맡길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전국에서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독 아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안정성과 잘 갖춰진 돌봄 인프라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잘 갖춰진 보육 서비스, 돌봄 인프라라는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회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주거지원제도도 마찬가지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은 수치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도는 높지 않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보다 내가 ‘운’이 좋아야 당첨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첨된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많아봤자 사회에서 일한 시간이 약 5년 정도일 신혼부부, 특히 그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이 보증금 몇억을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또다시 빚쟁이가 되어 저축보다 전세대출 상환과 월세 부담에 급급하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 6년 후에는 나가야 한다. 그나마 아이 한 명이 생기면 10년까지 가능한데,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공간이 넓어지기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몇 년 더 살기를 보장해줄 뿐이다. 결국 부모의 도움 없이 더 안정적이고 넓은 집에서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제도는 훨씬 더 미흡하다.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양육’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보면, 비혼 및 동거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보호는 해당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가 없는 동거 가족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법적 보호자 제도의 개선이나 주거지원 같은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제도적 수용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수준이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도 비혼 및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담겼는데, 4년이 지난 2018년 말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도 여전히 기초 연구와 공론화를 시행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것이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가족 권리를 인정하는 법과 제도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이 더디다. ‘은퇴와 나이 들이 걱정되지 않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의 방향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불신의 원인인 낮은 급여와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 추진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의 반대로 인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이 좌절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노사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첫째 아이 출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의 단절 기간 중 6개월은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여전히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크레딧으로 경력단절의 공백을 메우기란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하지만, 증가하는 노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요양보호사의 수와 낮은 처우,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둘째, 정부 및 전문가 집단의 감수성 부재를 들 수 있다. 그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는 노동, 주거, 보육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었더라도 실제 관료나 정치인, 전문가 집단의 행동은 청년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고학력 여성의 하향 결혼을 유도하겠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지자체의 맞선 주도 프로그램, ‘출산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등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와 정치인, 전문가 집단의 행동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탓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물론, 기혼부부의 출산율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만남’, ‘결혼’을 장려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왜 만남을 갖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청년들의 ‘맞선’을 주도하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모습, 청년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쌓아놓은 ‘고학력’을 문제의 원인으로 폄하하는 태도 등은 청년들이 실망하기에 충분하였다.

‘출산력’으로 사람을 수치화해서 명명하는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결혼과 출산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투입-산출식의 태도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인구정책에 아무리 그럴듯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진정성이 있는지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차 기본계획 42.2조, 2차 기본계획 109.9조, 3차 기본계획 197.5조까지 약 350조에 이르는 돈이 지출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학교에 국악과 연극 등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저출산과 크게 관련 없는 사업들도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포함된다(머니투데이, 18/04/04). 실제로 저출산 예산의 30% 가량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실제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되었다(고기석 외, 2016).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범위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존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나 교육 예산들도 저출산·고령화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되더라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비판했던 출산장려금과 같이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들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적으로 반짝 현금성 지원을 해주기보다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주거지원, 보육 서비스 및 돌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교육제도의 개편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설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금지원 정책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소요될 뿐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출산장려금 조차도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의 모호함과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는 모습들은 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한국의 복지 예산 자체 규모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정적 예산 속에서 실적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저출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되거나 현금성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주의는 가정을 형성하는 데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남성을 주생계부양자로 간주해오면서 여성의 노동은 가정 내에서의 돌봄으로 한정되었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고, 양육 또한 부모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가부장적 문화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육아나 노후와 같은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문제들에 대응하는 일차적 책임은 개별 가족, 특히 그 안에서 여성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여성의 노동은 육아에 따르는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거나 돌봄 노동에 국한되어 제대로 된 처우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로서 여성의 단독지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최정원, 2019). 게다가 애초에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주체로 상정하여 채용상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차별과 승진의 어려움 등 여성에게 불리한 직장문화로 인해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들에서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채용이 이루어지는 요인 중 하나 또한 육아와 가사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노동시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가정 내 가사분담 실태를 보면, 인식적으로는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2008년에는 32.4%였으나 10년 후인 2018년에는 59.1%로 크게 늘었다. 반면, 실제로 가사를 얼마나 분담했는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2008년에는 8.7%, 2018년에는 20.2%에 불과하다(최정원, 2019).

인식상으로는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이나 성차별 채용으로 성별 격차가 벌어져 있고, 육아나 가사분담은 여전히 여성들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훨씬 더 많이) 남편 측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여성들이다. 제사나 명절날 노동을 주로 맡고, 시부모의 돌봄을 담당하는 것도 여성들인 것이다. 이는 ‘82년생 김지영’이나 ‘며느라기’ 등 영화나 웹툰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성들 역시 남성이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해온 문화 속에서 경제적 자원 확보의 주체로 상정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혼에 소극적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가족을 형성하는 데 부담을 지우는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경력 형성 및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결혼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위 네 가지 요인들은 현행 인구정책과 청년 당사자가 처한 현실 간 괴리

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기 원하는 청년들조차도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 가족 형성을 포기하게 만든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은 결국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한 청년들은 이기적인 청년이라며 비난하고, 정책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수많은 인구·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청년들에게는 ‘왜 아이를 안 낳아?’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되려 청년들은 ‘아이를 낳으면 내 삶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아이를 왜 낳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인구정책이 청년의 삶과 함께 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

가. 패러다임의 전환 : ‘결혼’과 ‘가족’의 의미 재구성

인구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변화해야 한다. 남아 선호사상과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가족은 주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으로 상정되어 여성의 노동은 ‘바깥일을 하는’ 남성을 지원하는 가정 내 돌봄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감당했던 돌봄을 공적 영역에서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자 의무로 간주되어 평가절하되었다.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권은 침해되기 일쑤

였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일과 돌봄,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철인이 되어야만 하였다.

이처럼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의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했듯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평등한 사람들끼리의 결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부양하는 관점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개인들이 만나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고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으로 간주되었다. 그 가운데 여성들은 배우자 집안의 질서를 강요받고, 출가외인으로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까지 떠안곤 하였다. 이로 인해 결혼 대신 동거, 또는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를 타파하지 않는 한,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들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출산’과 ‘육아’의 전단계로 여겨진다. 가부장제 질서는 출산과 육아를 오롯이 여성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만든다.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신의 경력 형성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없으며,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가사노동이 가족 공동의 책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돌봄의 경우, 공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여성에게만 지워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평등 정책의 확립은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스웨덴은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출산·육아 중이더라도 남녀에 상관없이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육아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때 휴직수당

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분산되도록 하였다(장선화, 2019). 한국의 청년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출산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을 통해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가능하도록 스웨덴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김희경, 2017).

‘결혼’이란 마음이 맞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구성원을 각 개인으로서 존중한다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가족의 형태가 한 부모인지, 여러 구성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가 가족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 제안들은 패러다임 전환과 병행되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더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세부 정책

1) 기존 제도들의 실효성 확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들만이라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출산/양육지원, 주거지원과 노후소득보장제도까지 제도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노사정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미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들이 허울로 그치지 않도록 의무적인 제도들의 준수를 적발하고

강제해야 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 병행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의무사항조차도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총괄기구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위 측에서조차도 스스로가 자문 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제안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서울경제, 2020. 02. 05).

게다가 입지도 불안정하다. 정권에 따라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되는가 하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오는 등 소속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실제 영향력이 더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 정치적인 도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실제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017년 첫 회의가 마지막이었으며, 2016년도에 작성된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간위원들 간 4차례 서면이 오간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서울경제, 2020. 02. 05). 정부가 인구 위기라고,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는 것과는 달리 제대로 작동되는 총괄기구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총괄기구의 개편과 감시기구의 설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던 부분들은 개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위주로 재배분되어야 한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각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절실하다. 결국 모든 것은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적절한 규모인지, 또한 적합한 용도에 쓰이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더 나아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 이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2)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꾸준한 교육

다양한 삶의 형태를 편견없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별 간 편견이나 구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과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 간에 역할 구분이 없고,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역할을 고정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다양한 성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또한 1인 가구, 비혼, 비출산, 동거, 동성, 다문화 등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여야 한다.

기존에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결혼이란 사랑하는 두 남녀의 결합이고, 가족이란 아빠 엄마로 구성된 4인의 정상가족 형태로

한정지어 아빠는 항상 일을 하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는 형태로 비춰졌다. 이런 형태가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시켜 계속해서 문화를 재생산하였다. 최근 가정 교과서에서 가사분담 관련해서는 공동부담으로 서술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의 모습으로 상정되는 것은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로 구성된 정상가족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해외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르웨이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별 간의 차이 없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성역할’, ‘가족과 다른 형태의 함께 살기’ 등 성평등과 다양성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윤정 외, 2017). 한국도 삶의 선택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의무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교육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남성 대학생 집단과의 인터뷰에서도 교육이 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잘 드러났다. 다른 남성 집단에 비해 수도권 남성 대학생 집단은 출산지도도 알고 있었고,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에 대한 인지가 여성들과 유사하였다. 이들이 관련 내용들을 접한 주요 경로 중 하나는 학교 수업이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페미니즘 관련 집회를 상대적으로 자주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대학 분위기와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는 교육이 인식을 전인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상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3)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생활동반자법이란 현행 법률상 이성과 혼인과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 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권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자녀의 성(姓)의 승계 등 법률혼 상의 부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미 스웨덴(동거법), 프랑스(시민연대계약 PACS), 독일(파트너등록 법), 네덜란드(동반자등록법)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대상은 상이하지만(동성커플에만 한정하는 경우, 동거 및 혼외출산도 포함하는 경우 등) 기존 혼인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시되고 있다(중앙일보, 2018. 03. 30).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2014년 진선 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준비한 바 있으며,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도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률혼 이외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은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부부만 대상으로 하는 난임극복지원사업,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될 경우 보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 혹은 법정 대리인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 사실혼·동거 커플은 시신도 내어주지 않아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송효진, 2019) 등 단지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혼인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표 1-6-1〉 새로운 공동체의 유형

기존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내가 선택된 관계	내가 선택한 관계
호구조사부터 시작하는 관계 나이·결혼여부·학력과 직급으로 정의되는 관계 상하관계 또는 참견과 경쟁의 관계	제한적이고 선택된 관계 정제되고 필터링된 관계 특정 관심사로 모인 관계
'관심사'를 제외하고 모두 공유하는 관계	'관심사'만 공유하는 관계

자료: 엄한결·이원희·박현영·이예은·구지원·김정구·정유라(2019). 2020 트렌드 노트- 혼자만의 시간간, 북스톤.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정해진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조차도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혈연관계에 기반한 가족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유형이 점차 늘어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피로 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내가 직접 선택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바뀌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가족주의에 기반한 법과 제도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청년들이 삶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복지국가들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해왔고, 그 결과 안정적인 인구 구조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다른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똑같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동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이다. 프랑스가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한 이후 출산율 상승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던 것은 제도 도입의 출발이 출산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보조였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삶과 정책이 함께 갔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논의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사회적 욕구의 변화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경우, 출산율 상승과 같은 인구학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가족 구성이라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4) 일·생활 균형의 확대 : 생활휴가제도의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출산 및 육아 가정을 주 대상으로 일과 돌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나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갖는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구조상, 일 외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 일수는 연 15일로, OECD 평균 휴가일수인 2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사용일수도 5.4일로 낮지만, 절대적인 휴가 일수가 부족한 것이다(통계청, 2019e). 일·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게는 지금의 육아·출산 휴가가 ‘법적’ 배우자가 ‘출산 및 육아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는 ‘직계존비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육아나 출산, 간병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사유는 다양하다. 반려동물에게 일이 생겼을 때, 이사를 했을 때 등 1인 가구에서부터 동거,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식은 기존의 연차를 늘리는 방식, 새로운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59명에 대한 그룹인터뷰와 15명에 대한 1:1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뷰 위주의 질적 연구다 보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내다보니 질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구조 배열에 따라 민감하게 응답이 갈리는 경우

가 있었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종종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다(진미정·정혜은, 2010).

둘째, 개념의 의미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비혼”이라는 개념에서 비롯하는데, 비혼이라는 개념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에는 “결혼에 대한 적극적 거부”를 포함하여 결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자발성과 적극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비혼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개념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참여자들은 비혼의 초기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본인이 비혼주의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 한 반면, 몇몇 참여자들은 최근 개념으로 비혼을 이야기하며 본인이 비혼주의자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의 취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혼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인구문제와 인구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혼동이 있었다.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부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문제와 인구감소를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이나 육아 등의 주제는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한번쯤 고민해 보직한 주제이다. 또한 최근의 페미니즘 흐름까지 더해져 많은 여성 청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가 본 보고서에 많이 담기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진들도 여성들로 구성되어 인터뷰 과정에서 남성 청년들과의 라포 형성이 어려워 발언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

제4절 마치며 : 변화하는 삶의 형태 ‘느슨한 연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나 각종 언론에서는 ‘국가적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다.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들의 변화로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족, 결혼관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부모나 미래의 자녀에 대한 가족 부양에서부터 결혼, 출산 문제 등 가족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고민한다. 부모 부양을 당연시하지 않고, 자신의 앞가림 여부에 따라 부양을 할 수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 역시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도 중요했지만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은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즉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성향이었다. 또한 출산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나의 커리어, 나의 생활이 얼마나 방해받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즉, 지금 청년들이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중시하였다면, 지금은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 또한 완전히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비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청년들도 영원히 혼자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슷한 관심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성향, 즉, 내가 방해받을 만큼의 관계에 얽매이려 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두고 ‘느슨한 연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느슨한 연대란 ‘서로 연결되

어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연대한다'는 개념(염한결 외, 2019)으로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하여 지나친 관계 중심주의를 요구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지친 청년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관계 때문에 개인의 삶을 희생하기보다, 이 관계들이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비판이자,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원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저출산·고령화 계획이 수립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정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에게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자 할 때,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인구문제에 대응해 왔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인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공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결혼이나 출산, 양육, 노후 부양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가족 구성권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복지국가들은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가족이나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일수록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물론 수백 년의 고민을 거쳐 온 복지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민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들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출산이나 결혼 장려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산, 결혼은 개 개인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청년’으로 비추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상황에서 본인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부의 불평등 구조의 하단에서 일상을 아등바등 살고 있다.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 오히려 이기적인 청년이라고 비난하는 주체들은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상위에 위치해 있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도 갑의 위치에 서 있어 누군가를 비난할 여유가 있는 기성 세대들일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74명의 청년들과 FGI와 1:1 인터뷰 방식으로 이야기한 내용이다. 전국에 있는 천만 명의 청년들 중 극히 일부인 이들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연구진에게도,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에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가 많다. 주변 친구들, 지인들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은 결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돌봄에 대한 책임과 성 불평등이 집

약된 ‘정상가족’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 구성의 기회비용이 내 삶의 포기과 동일시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대한 존중보다 출산과 양육,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 ‘희생’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비혼과 비출산이다. 청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인지, 지금처럼 과거와의 똑같은 형태를 강요하면서 청년들을 비난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국, 모든 것들은 정부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제 2 부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고령화와 젠더 관련 기존 논의

제3장 고령자 주요 현황 및 성별 비교

제4장 전문가 조사

제5장 결론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에서 여성 비율이 높으며, 후기 고령 인구로 갈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에 있어 고령화 문제에는 저출산 이슈와는 달리 젠더 관점¹⁾에서의 접근과 고찰은 아직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젠더 이슈는 인구구조의 측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젠더 불평등의 결과로서의 여성 고령자의 소득·빈곤의 문제, 고령사회 돌봄과 젠더 이슈, 고령화와 가족 변화의 역동에 따른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젠더 불평등은 여성의 생애 과정에서 누적되면 결국 여성의 노후 소득의 불평등, 빈곤으로 이어진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돌봄의 문제는 돌봄의 제공에 있어서 젠더 불평등의 문제와 돌봄 자원의 확보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¹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 가족 관계 변화의 역동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부양, 돌봄, 노후 소득 보장 등 다양한 접점에 있어 젠더 이슈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에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고령사회와 젠더 불평등의

1) 배은경(2016:12)에 의하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이란, 사람을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고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기계적 평등을 따지는 시대착오적인 일차원성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중층적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젠더를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젠더/섹스의 교차성 패러다임의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발굴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노후 소득보장과 노후 빈곤의 문제는 고령층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젠더 불평등의 결과로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젠더 관점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여성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돌봄수혜자로서의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돌봄을 위해 공적·사적 돌봄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의 역동이 고령 사회의 젠더 관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고령사회 젠더 이슈에 대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노후 소득보장, 돌봄, 가족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젠더 이슈를 ‘소득보장’, ‘돌봄’,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탐색·고찰하여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제도에 있어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고령사회에 대응한 젠더 이슈 관련 국내외 논의를 고찰하였다.

둘째, 고령화와 젠더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진단을 위하여 선행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령 관련 현황 및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고령화와 여성 노인 관련 연구 관련 국내외 논의, 선행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노인실태조사 결과 및 국민노후보장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연금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고령사회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방향과 젠더 아젠다 발굴을 위하여 「고령사회와 젠더 포럼」을 총4회로 개최·운영하였다.

〈표 2-1-1〉 「고령사회와 젠더 포럼」 운영 개요

「고령사회와 젠더 포럼」 운영			
회차	주제	참석자	일시 및 장소
제1차 포럼	고령사회 젠더 이슈-젠더 관점에서 본 고령화 정책	발제: 정순돌(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진	2019.10.15. 10:00~12: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제2차 포럼	고령화와 젠더 이슈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합의	발제: 김상현(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연구진	2019.11.6. 15:00~18: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제3차 포럼	고령사회 가족 변화에 따른 젠더 이슈 (가족법 이슈와 후견, 상속 등 사례중심으로)	발제: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연구진	2019.11.27. 12:30~1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
제4차 포럼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와 대응 과제 (돌봄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2019.11.27. 14:30~1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

넷째,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정책 및 법제 대응 과제/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2-1-2〉 전문가 조사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 노년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족법, 사회복지법, 법여성학 등 관련 학계 및 실무·법조계, 정책 관련 전문가 등(52명)○ 조사방법 : 이메일·FAX 조사○ 조사내용 :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 과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제 2 장

고령화와 젠더 관련 기존 논의

제1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내 논의

제2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제 동향

2

고령화와 젠더 관련 기존 논의 <<

제1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내 논의

영역별로 여성 노인의 취약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개별 영역에서의 문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해 온 연구들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고찰한 본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1. 영역별 논의

장미혜 외(2013)는 여성 노인 노후 빈곤현황을 살펴보고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성인지적 공적연금제도 체계 구축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김재호 외(2014) 및 황남희(2016) 등의 연구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과제 및 연금사각지대 해소 등 과제들을 제언하고 있다. 김영미(2014)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여성의 수급권 확대와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크레딧 제도 및 분할연금방식의 개선, 부양가족 연금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 돌봄정책 연구는 주로 돌봄제공에 있어서의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김은지 외(2017)는 여성가족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모색하면서 노인돌봄 영역에 있어서도 돌봄사회화를 근간으로 하되 성평등관점이 반영되어

야 한다고 한다. 석재은(2018)은 돌봄정의를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서 돌봄수혜자의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구성하고,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최인희 외(2018)는 노인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를 통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특성에 대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요양보호사 근로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족의 돌봄경감 지원 및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윤홍식·안세아(2010)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재상품화에 따른 가족 내 돌봄제공, 세대 간 소득이전, 가족관계, 사회관계, 전통적 성역할과의 관계”를 분석·추정하였다.

한편, 김동식 외(2018)은 노인돌봄과 노인학대의 이슈 및 관련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정경희(2014)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과 가구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과제를 고찰하였으며, 박성정 외(2015)는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노년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장혜경 외(2013)는 미래가족변화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을 제언하면서 노인과 관련하여 노인돌봄,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가족법영역에서 부양 및 상속법의 현황과 쟁점,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 고령과 젠더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고령 관련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가장 최근의 고찰로는 정순돌(2018)의 연구가 있다. 정순돌(2018)은 젠더 관점에서 선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노인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에서 3차 저출산 고

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중 고령화정책을 경제적 정책, 노인돌봄정책, 사회참여와 확대 혹은 기타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젠더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젠더 관점이 통합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순돌(2018)은 위 글에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중 고령화정책에 있어 “공적연금강화와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체계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 노인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 참여가 배제되어온 여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 노인 돌봄서비스에 있어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에 있어 역시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여성 노인들만이 부양의무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정책 영역 등에 있어서도 예컨대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모델에 있어서도 은퇴한 남성 위주의 설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명용(2014)은 여성 측면에서 본 고령화의 실상과 고령화의 특징과 젠더 이슈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명용(2014:19)은 노년기 일반적 특성과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취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노년기 특성과 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되고 불평등하게 경험된다는 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고령화의 문제는 중첩적이고 복합적이며 전 생애에 걸쳐 누적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노인 관련 정책의 개별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에 대한 고찰 및 해소를 위한 개별 연구들은 진행이 되어 왔으나,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있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관련 몇몇 연구들에서는 고령화

젠더 이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및 현행 정책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제 동향

1. 고령화에 대한 국제 논의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국제사회의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1982년의 제1차 유엔세계고령화총회에서 비엔나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제2차 유엔세계고령화총회에서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이 이후 국제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기본 출발선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3개 영역, 18개 분야, 35개 목표, 234개의 세부행동이 포함되어있다(정가원 외, 2017).

하단의 표를 살펴보면 1) 노인과 개발, 2)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3)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3개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1) 노인과 개발 영역 하에 사회와 발전에의 적극적인 참여, 일과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지식·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세대 간 연대, 빈곤해소, 소득보장, 비상사태 대응의 8개 분야 및 14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2)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영역 하에 전생애에 걸친 건강 및 복지 증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노인과 HIV/AIDS, 돌봄 제공자 및 의료종사자를 위한 훈련, 노인의 정신건강 욕구, 노인과 장애의 6개 분야 및 13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영역에는 주거와 환경, 돌봄 제공자에 대

한 지원, 방임·학대·폭력, 노화에 대한 이미지의 4개 분야 및 8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1) 노인과 개발 영역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 및 소득 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2)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영역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3)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영역은 노인의 인권 및 돌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1〉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방향	
분 야	목 표
I. 노인과 개발(Older Persons and Development)	
1. 사회와 발전에의 적극적인 참여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기여에 대한 인식(10개 행동) 의사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노인의 참여(3개 행동)
2. 일과 노동력의 고령화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 대한 취직기회(14개 행동)
3.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개선(8개 행동) 농촌지역 노인의 소외현상 완화(5개 행동) 고령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로의 통합(7개 행동)
4. 지식,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성	일생동안 직업지도 및 알선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재훈련 기회에 대한 공평한 부여 (8개 행동) 연륜에 따른 경험 증대의 이점을 인식하여, 전 연령대의 잠재력과 전문성 활용(6개 행동)
5. 세대 간 연대	세대 간 형평성(equity)과 호혜를 통한 연대강화(7개 행동)
6. 빈곤해소	노인 빈곤감소(8개 행동)
7.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사회보장제도과 빈곤예방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사회보장제도(연금, 장애보험, 의료보험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추진 (8개 행동) 모든 노인(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을 위한 충분한 최저소득 보장(5개 행동)
8. 응급상황	자연재해와 기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시(이후) 노인의 음식, 주거지, 의료, 기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12개 행동)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 재건 및 복원과 사회구조 재건 시 노인의 기여 제고(6개 행동)
II.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Advancing Health and Well-Being into Old Age)	
9. 전생애에 걸친 건강 및 복지 증진	노인의 질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의 누적 효과 및 이에 따른 잠재적 의존성 감소(8개 행동) 노인의 질병(ill-health)예방 정책 개발(10개 행동) 음식물과 적절한 영양 상태에 대한 모든 노인의 접근(9개 행동)

주요방향	
분 야	목 표
10.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노인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하여 연령, 성별 혹은 기타 분야(언어장벽 포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제거(7개 행동) 노인의 요구 충족을 위한 일차 의료서비스의 발전·강화와 노인의 참여 증진(5개 행동) 노인 필요에 부합하는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개발 (6개 행동) 일차 및 장기 의료서비스 개발 및 강화과정에서의 노인 참여(4개 행동)
11. 노인과 HIV/AIDS	HIV/AIDS 고령 감염자와 감염자 혹은 그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하여, HIV/AIDS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개선(2개 행동) HIV/AIDS 노인과 그 수발자를 위한 부양, 처치, 의료,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및 훈련 제공(3개 행동) HIV/AIDS를 포함한 만성질환 어린이의 수발자와 부모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개발을 위한 노인의 기여 제고 및 인식 (4개 행동)
12. 돌봄 제공자 및 의료 종사자를 위한 훈련	의료종사자와 전문보조원을 위하여, 노인의 요구에 대한 개선된 정보와 훈련 제공(3개 행동)
13. 노인의 정신건강 욕구	예방부터 조기치료, 치료 제공, 정신건강 문제 관리까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10개 행동)
14. 노인과 장애	장애 노인의 전 생애에 걸친 기능능력의 최대치 유지 및 참여 증진(10개 행동)
III.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Ensuring Enabl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s)	
15. 주거와 환경	노인의 개인 선호와 지불가능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인친화 지역사회(Ageing in Place) 추진(10개 행동) 노인, 특히 장애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와 환경 디자인 개선(4개 행동) 노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교통수단 이용가능성 개선(3개 행동)
16.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수발자에 대한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통하여,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10개 행동) 노인, 특히 고령여성의 수발자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4개 행동)
17. 방임 학대 및 폭력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방치, 학대, 폭력 제거(7개 행동) 노인 학대문제를 다루기위한 지원서비스 구축(5개 행동)
18. 노화에 대한 이미지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과 기타 주요 공헌에 대해 사회적 인식고양(8개 행동)

자료: United Nations(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유엔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42회기 결의안에 의거하여 유엔 회원국이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5년 주기의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제1차 주기(2003-2007), 제2차 주기(2008-2012), 제3차 주기(2013-2017)에 대한 점검이 각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행점검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지역별로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가원 외, 2017).

2. 성평등 관점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국제 논의

본 절에서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유엔유럽위원회와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이행실태 점검 전략 및 지표를 검토하고 특히 성평등 관점이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유엔유럽위원회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전략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8번째 전략이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정가원 외, 2017).

〈표 2-2-2〉 유엔유럽경제위원회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지역 이행전략
(The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RIS)

구분	정의	전략	고려사항
RIS Commitment 1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사회와 경제가 인구학적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령화를 모든 정책 영역에서 주류화 함	- 고령화를 주류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국가, 지방,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고령화 이슈가 계획이나 정책의 개발 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 고령화가 주류화된 영역, 연령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고령화 정책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시행되는지, 정책의 개발에 있어 노인의 참여, 정책의 개발에 있어 시민 단체와 민간영역의 참여 및 정책의 운영에 있어 그들의 역할

구분	정의	전략	고려사항
RIS Commitment 2	사회 내 노인의 통합과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설명해야 함	- 언론홍보, 교육내용 등 노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지지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노인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 중요한 소비집단으로서의 노인의 수요, 관심, 선호사항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통로,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고 사회, 문화, 경제에 노인의 참여를 지지할 수 있는 활동, 노인(특히 여성 노인)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 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체계 및 기관,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노인의 기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존재하는지
		-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지하고 세대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노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설명해야 함	- 연령통합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설,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설명해야 함	- 언론캠페인,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주 인센티브,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노력 등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RIS Commitment 3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증진시켜야 함	- 성장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해야 함. 세대 간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사회보장체계(특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해야 함	- 특히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적 전략,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분	정의	전략	고려사항
RIS Commitment 4	인구학적 변화 및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변화시켜야 함	- 사회보장체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해야 함. 사회적 보호의 기본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학적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 직장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체계를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지 기술해야 함. 생애주기별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설명해야 함	- 모든 노인의 충분한 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노인의 다양한 사회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독립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 사회보장체계가 여성과 남성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RIS Commitment 5	노동시장이 인구 고령화의 경제 및 사회적 결과에 대응해야 함	-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를 설명해야 함 -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기술해야 함 - 퇴직연령을 늦추고 퇴직을 보다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를 기술해야 함	- 취업지원, 훈련, 상담 등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내용, 교육과 고용 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고용을 저해하는 원인 해소 - 고용지속을 어렵게 하는 역인센티브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교육·훈련급여와 연금 등의 혜택에서 차별적 상황을 철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 -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기퇴직과 연관된 인센티브의 철폐, 점진적인 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
RIS Commitment 6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설명해야 함 - 전체 인구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기술해야 함	- 퇴직인구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기관을 변화시킨 조치, 퇴직준비 프로그램, 노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법 개발,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과정 개발 - 교육기관과 고용자 간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전체 연령의 노동자를 위한 현장 직무훈련을 제공, 정규교육시스

구분	정의	전략	고려사항
			템을 일찍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재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정규학교가 보다 성인지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한 조치
RIS Commitment 7	전체 연령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독립적 생활을 보장해야 함	-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각 정책분야에 고령화 관련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술해야 함	
		-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해야 함	- 특히 지방 거주자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율하고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 치매 노인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돌봄 제공자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 모든 연령을 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지원을 회원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모든 연령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원국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기술해야 함	
RIS Commitment 8	고령화 사회의 성주류화를 도모해야 함	-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기술해야 함	- 성별 구분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조치, 여성의 경제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회보장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가정 내 돌봄부담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나눠가지도록 촉진하는 조치
RIS Commitment 9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고 세대 간 연대를 증진	-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므로 회원국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변화하는	- 변화하는 인구학적 환경에 부응하여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른 연령대의 가

구분	정의	전략	고려사항
	시켜야 함	역할과 필요에 대응하고 세대간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족구성원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 노인의 가정, 지역사회, 전체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 증가하고 있는 가족 내 노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노인돌봄에 있어 지역사회, 기관, 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 회원국은 또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결과에 가족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야 함	-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가족친화적 정책 및 서비스, 가족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변화
RIS Commitment 10	지역적 협력을 통한 유럽지역이행전략의 적용과 후속조치를 증진시켜야 함	- 지역적 협력, 시민사회의 동참, 유럽경제위원회 담당자와의 협조를 통해 유럽지역 이행전략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은 설명해야 함	- 유럽경제위원회의 다른 회원국과 고령화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 유럽경제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제3차 주기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국가별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회원국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성평등 관점의 적용은 II. 노인과 개발, III.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IV.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영역 중 성별로 구분된 관련 통계수치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주류화를 지역 이행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의 개인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적 노력을 점검하는 방식과는 달리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성별 분리통계 제출방식은 다소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2-2-3〉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 제3차 주기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

구분	3차 설문내용	
I. 국가정책 및 MIPAA 이행 기반	I-1. 고령화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존재가 있는가, 있다면 위원회의 이름, 언제 세워졌는지, 주요 기능, 정부 내 위치, 연락처, 웹사이트 등의 정보 기술	
	I-2. 고령화에 대한 국가계획	1-2-1.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이 있는가, 있다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 개정되었다면 그 내용, 해당 법령의 영문 번역과 웹사이트 링크 주소
		1-2-2. (1-2-1. 있는 경우) 법률 시행을 위해 할당된 재원과 어느 부처에서 해당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1-2-3. 고령화에 대한 국가정책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세워진 시점, 수정 또는 개정되었다면 관련 정보
		1-2-4. (1-2-1. 혹은 1-2-2. 있는 경우) 법률 또는 정책/계획에 젠더와 장애 관련 이슈가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고려되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
		1-2-5. (1-2-1, 1-2-2 가 없는 경우에만 답변) 관련 정책 또는 제도 입법화를 위한 노력/준비상황
	I-3. (있다면) 고령화에 대한 국가계획, 정책 등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체계에 대한 설명 모니터링 체계 내에 노인과 그들의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지	
	I-4. 2012년 이후 국가내 고령화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어느 부처/기관에서 언제 어떤 내용의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웹사이트 링크 주소 첨부	
	I-5. 예산분배	1-5-1. 정부예산중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1-5-2. 위의 예산 중 노인/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
		1-5-3. 2012년 이후 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여부 증액되었다면 %로 설명
		1-5-4. 세부항목별 예산 비중: 1-11까지 순위를 매기시오. · 고령연금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따로 구분) · 노인 건강관리 · 노인성질환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강화 · 장기요양 서비스 관리 · 수발자 훈련/지원 · 노인 친화주택 지원 · 고령화에 대한 연구 · 노인에 대한 비상시 지원 · 노인 방임, 폭력, 학대 방지 ·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 참여

구분	3차 설문내용	
		· 강화 매커니즘 조성/발전 · 기타
	I-6. MIPAA 3차주기 이행점검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할 조치/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	
	I-7. MIPAA를 이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경험하였던 어려움/도전에 대한 평가(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시오)	· 정책 개발 능력 부족(절대 경험하지 않음/수시로 경험/항상 경험) · 고령화이슈의 선순위 선점 어려움(절대/수시로/항상) · 예산지원 부족(절대/수시로/항상) · 고령화 관련분야 인력부족(절대/수시로/항상) · 각 부처 내 고령화이슈 focal point 부재(절대/수시로/항상) · 부처간 협조체계가 약함(절대/수시로/항상) · 국제기관으로부터 지원부족(절대/수시로/항상) · 상향식 리뷰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노인과 고령화 관련 조직 지원부족(절대/수시로/항상) · 기타(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면 설명)
II. 노인과 개발	II-1.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수립/결정의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취하였다면 해당 조치의 이름, 언제부터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치의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2.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가? 만약 노력이 있었다면 해당 조치(정책, 프로그램)의 이름, 언제부터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치의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3.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	II-3-1. 노인을 위한 연금체계(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름, 각 연금의 수급자, 수급액(달러로는 얼마인지도 기술), 수급자 선정기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과와 한계 등 자세하게 설명
		II-3-2. (위치이동/III-2-1.)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름, 각 연금의 수급자, 수급액(달러로는 얼마인지도 기술), 수급자 선정기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과와 한계 등 자세하게 설명
		II-3-3. 비공식분야(informal sector)에서 일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문항삭제)
		II-3-4. 노인을 위한 기타 소득보조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정책의 이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4. 일하고자 하는 노인의 취업기회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을 위해 공식/비공식 분야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노력이 있었다면 이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5. 인도주의적 재난구호 프로그램에 노인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노인이 구호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구분	3차 설문내용	
	II-6. 시골거주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7. 정부가 법적 정년을 명시하고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면 이름, 2002년 이후 정년(퇴직 연령)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 우리나라 정년/퇴직 연령에 관한 경과	
	II-8. 다음 지표에 대해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 수치, 연도, 출처를 기재	·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 수와 비율(가능하다면 성별, 연령, 빈곤정도에 따른 구분-전체 노인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정리) ·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 수와 비율(가능하다면 성별, 연령, 빈곤정도에 따른 구분-전체 노인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정리)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의 수와 비율(가능하다면 성별, 연령, 빈곤정도에 따른 구분) · 사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의 수와 비율(가능하다면 성별, 연령, 빈곤정도에 따른 구분) · 가장 최근의 선거에 투표한 노인의 숫자와 비율(전체 투표권자 대비), 성별에 따른 노인의 투표율 · 공식적/비공식적 분야에 고용된 노인의 수와 비율(가능하다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 · 정부에 의해 규정된 남녀 정년(퇴직 연령)
III.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III-2. 노인에게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가	III-1. 노인의 건강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1. (위치이동/2차 II-2-2.)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격, 보험 커버리지, 보험료 등),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2. 노인의 1차 및 2차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필수 의약품 및 노인 위한 치료조치 등 포함),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3. 노인 대상 1차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내 서비스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4. 의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질병, 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는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5. 노인의 자기관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개발 시 노인의 참여증진을 위한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2-6. 기타(추가적으로 기재될 내용이 있다면 기술)

구분	3차 설문내용	
	III-3. 나이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 접근(공급자와 약품)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4.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부의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5. HIV양성 노인 및 가족보호자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6. 노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치매, 기타 심리사회적 장애 등) 정부의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7. 장애를 가진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 보조공학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가 있는지,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II-8.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의 참여보장	
	III-9. 다음 지표에 관한 정부의 데이터 유무(수치, 연도, 출처를 함께 기재)	· 노인성질환, 노인진료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의 숫자와 비율(성별에 따른 구분) · 성별에 따른 비건강수명 ·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비율 · 노인성질환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공공/민간)의 수와 비율 · 성별과 연령에 따른 노인의 정신관련 질환 발생수와 비율 · 15-59세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노인 장애율
IV.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IV-1. 노령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 환경 관련 정부의 조치	IV-1-1. 노인 친화 공공 거주시설 공급 등 노인친화 지역사회(Ageing in Place)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1-2. 노인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2. 공식/비공식 돌봄자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교육 및 인증프로그램,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3. 노인을 위한 케어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기준 및 모니터링 절차,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4. 노인을 돌보는 가족(특히 고령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5. 노인 방임, 학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V-6. 노인의 인권, 권위, 지혜, 생산성과 기타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 이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분	3차 설문내용
IV-7. 다음 지표에 관한 정부의 데이터 유무(수치, 연도, 출처 함께 기재)	· 깨끗한 물, 위생, 전기를 갖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와 비율(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와 비율(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 · 방치, 학대, 폭력 신고 노인의 수와 비율(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 · 영양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의 수와 비율(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2016: 2~15)-정가원, 황정임, 김해람(2017).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 실태와 한계 및 발전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p.40~44에서 재인용.

3. 여성 노인의 이중위험에 관한 논의(Double Jeopardy Hypothesis)

다음으로는 상기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이중위험 가설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중위험 가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지위를 두 가지 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 한 가지를 가지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가설로 해외의 노년학자들은 이를 여성이라는 지위와 노인이라는 지위를 함께 가지는 여성 노인 또는 소수인종이라는 지위와 노인이라는 지위를 함께 가지는 소수인종 노인에게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노인인 사람이 남성이면서 노인이거나 남성이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 혹은 여성이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주장으로 실제 이 가설을 검증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Chappell & Havens, 1980). Ferraro & Farmer(1996) 등도 소수인종 노인이 백인노인에 비해 전일생애 걸쳐 건강의 불평등을 더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중위험 가설은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aging as leveler” 가설과는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고령자 주요 현황 및 성별 비교

제1절 노인 인구 현황

제2절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제3절 경제상태

제4절 건강

제5절 부양/돌봄 교환 실태

제6절 소결

3

고령자 주요 현황 및 성별 비교 <<

본 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주요 현황들을 경제활동 및 노후 준비, 경제상태, 건강,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노인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민노후보장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연금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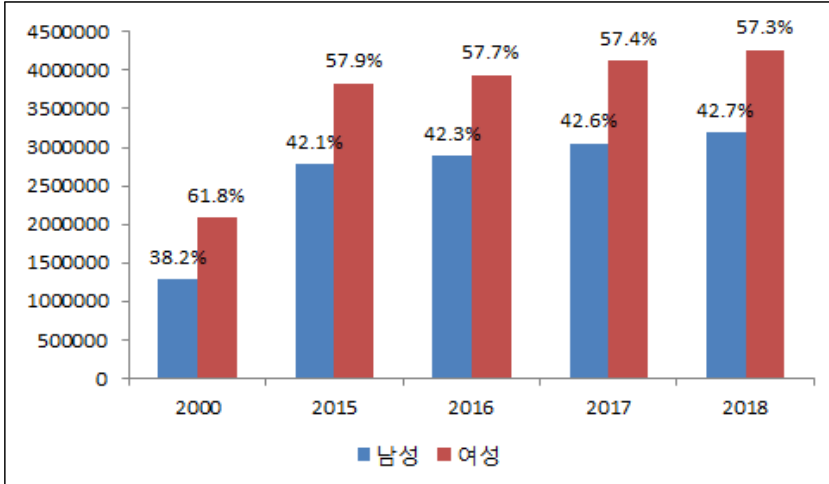
제1절 노인 인구 현황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에 65세 이상 남성 인구는 총 1,289,038명, 여성은 2,085,523명으로 총 3,374,561명이었던 반면, 2015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600백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남성 노인은 3,188,342명, 여성은 4,266,807명으로 총 7,380,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참고).

65세 노인 인구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여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남성 노인이 38.2%, 여성 노인이 61.8%를 차지한 것이 2018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42.7%로 상승하였고 여성은 57.3%로 줄어들었다([그림 3-1]참고).

[그림 2-3-1] 65세 이상 인구 성별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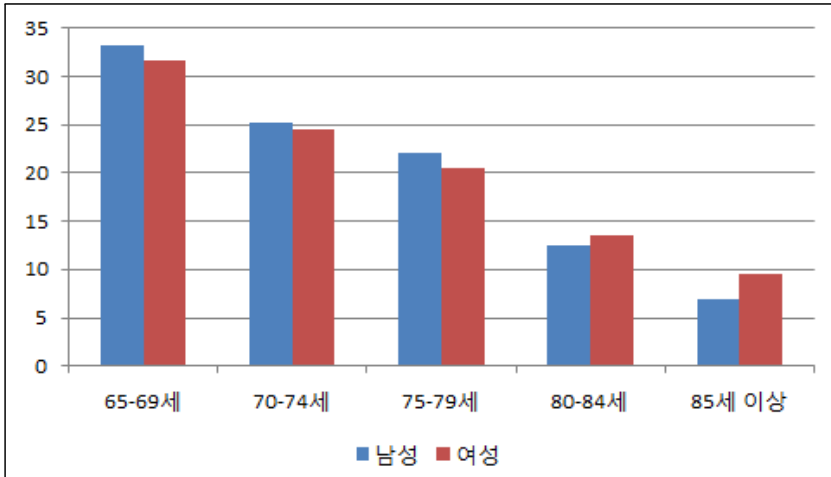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22). 2018 고령자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65세 이상 노인을 연령별로 성비 구성을 살펴본 결과, 65세부터 79세까지의 연령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80세 이상의 연령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2016년 통계청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6년 더 오래 살게 되며²⁾,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수리스크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2) e-나라 지표, '기대수명'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19.10.7. 인출

[그림 2-3-2] 65세 이상 연령별 성비 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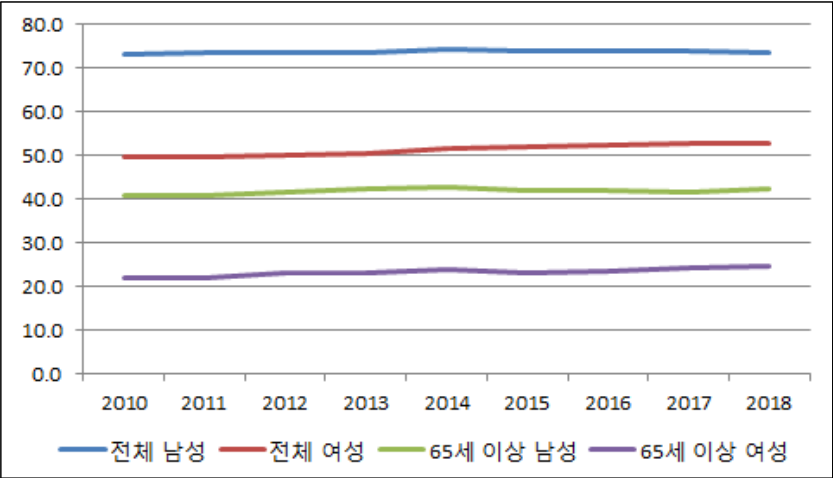
자료: 정순돌(2019). 고령사회 젠더 이슈- 젠더 관점에서 본 고령화 정책. 제1차 고령사회젠더 아젠다 포럼 발표자료.재구성.

제2절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한 전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여율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성별 차이가 약 2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65세 이상 남성은 40%대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여성은 20%대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3]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성별 비교

(단위 : %)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2010-2018)', 연구진 재구성.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 에서 2019. 11. 05. 인출

65세 이상 노인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이 23.7%, 여성이 9.3%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이 56.5%, 여성이 51.6%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이 19.8%, 여성이 39.1%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2-3-1> 노인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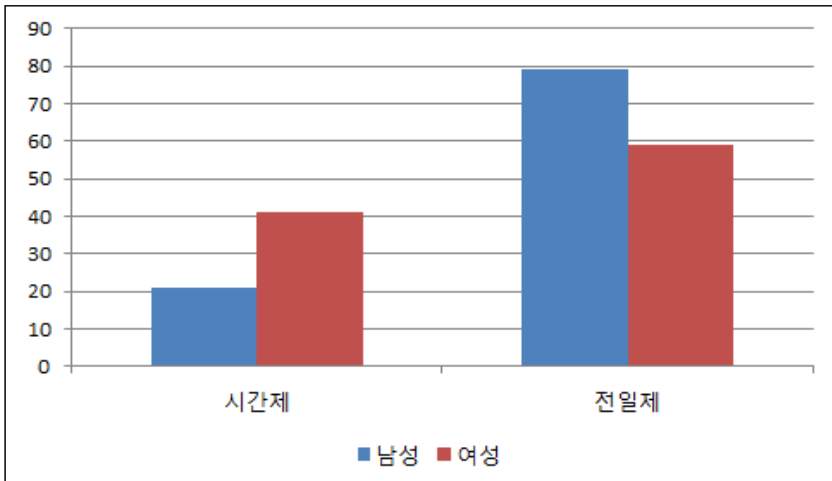
성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17.5	54.4	28.2
남성	23.7	56.5	19.8
여성	9.3	51.6	39.1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분석.

현재 일자리의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이 79.1%로 여성의 비율 5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반대로 시간제의 비율이 41.1%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4] 노인 현재일자리 근무형태 성별 비교

(단위 :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분석.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업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자영업자(39.1%), 상용근로자(38.8%), 일용근로자(11.6%)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32.9%)가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20.5%), 상용근로자(16.3%)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용 안정성에 있어 성별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2-3-2〉 노인 최장기간 동안 일한 직업에서의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단위 : %)

성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기타
전체	26.9	9.1	12.4	3.7	29.3	17.6	1.0	0.1
남성	38.8	4.0	11.6	5.5	39.1	0.5	0.4	0.0
여성	16.3	13.7	13.1	2.0	20.5	32.9	1.4	0.1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85에서 재구성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남성은 평균 은퇴연령은 64.1세, 여성은 57.9세로 약 6.2년 정도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사유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 모두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을 채웠기 때문에 은퇴를 한 비율이 19.0%로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아/수발/돌봄/결혼 등의 이유로 은퇴를 한 비율이 23.0%로 은퇴 사유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표 2-3-3〉 노인 은퇴사유 성별 비교

(단위: %)

은퇴 사유	전체	남성	여성
정년	8.0	19.0	1.8
사업악화/ 해고	13.0	15.3	10.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	38.9	40.1	38.3
육아/수발/돌봄/결혼	14.1	2.4	23.0
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12.6	11.8	13.1
가계 여유	1.7	1.5	1.7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10.8	9.2	11.7
기타	0.9	0.8	0.3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분석.

노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은 절반 이상의 비율인 57.4%가 독립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3.4%만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36.0%, 여성의 14.8%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의 방법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부동산 운용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공적연금의 의존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3-4〉 노인 노후준비 성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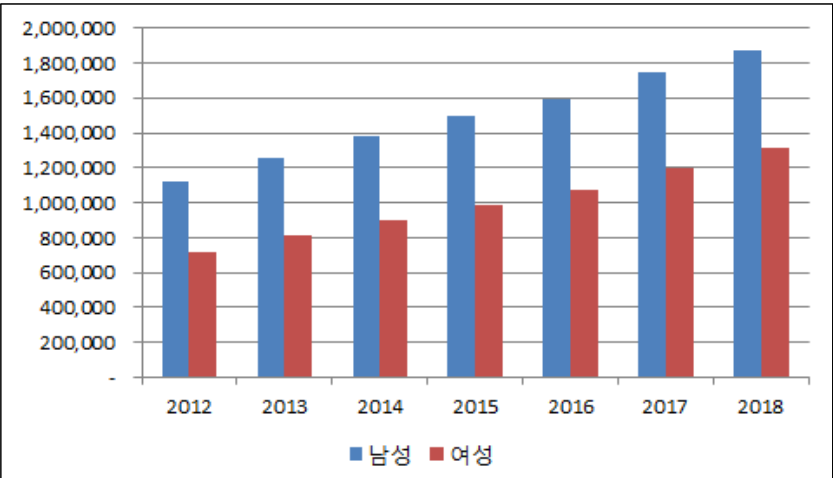
	경제적 독립여부	노후준비 비율	노후준비 방법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개인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전체	37.3	24.8	41.0	17.1	0.7	1.6	11.9	23.3	4.3
남성	57.4	36.0	50.0	20.6	1.1	2.4	10.4	15.7	-
여성	23.4	14.8	21.7	9.6	-	-	15.1	38.8	13.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분석.

노인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의존도가 높는데, 이는 국민연금 통계의 결과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자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남성 수급자는 1,875,294명, 여성 수급자는 1,311,086명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금 수급자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대비 남성의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8년 기준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5]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성별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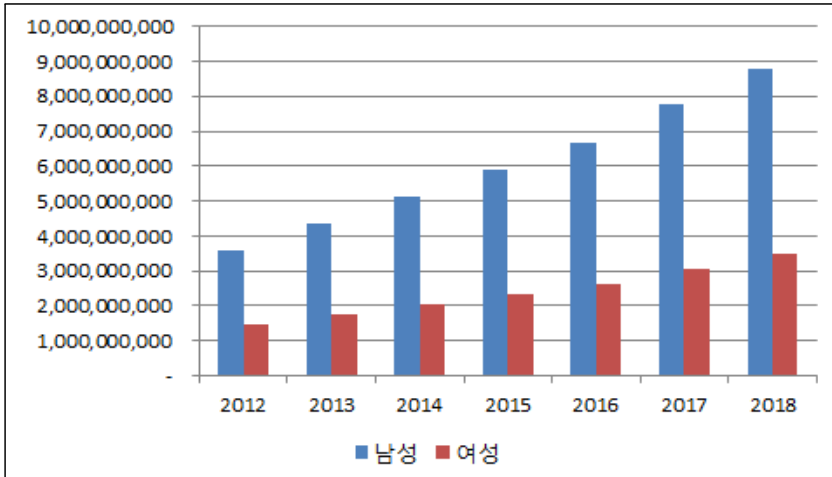


자료: KOSIS, '2018년 국민연금통계', 연구진 재구성.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4&conn_path=I2 에서 2019. 11. 07. 인출

연금 지급액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12년에 남성의 연금 지급액이 약 36억원, 여성이 15억원이었다면 2018년에는 88억원, 여성은 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지급액의 성별격차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림 2-3-6] 국민연금 지급액 추이 성별 비교

(단위: 원)



자료: KOSIS, '2018년 국민연금통계', 연구진 재구성.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5&conn_path=I2 에서 2019. 11. 07. 인출.

제3절 경제상태

노인의 개인소득 항목별 보유 비율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유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남성 보유 비율은 각각 24.1%, 35.2%인 반면, 여성은 7.9%, 14.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보유 비율에서도 남성은 54.1%가 보유한 반면, 여성은 20.1%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의 보유 비율은 남성이 62%, 여성이 73.5%로 여성의 보유 비율이 더 높았다.

개인소득 기준에서 소득 금액은 성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총소득은 남성이 1,697만원, 여성은 792만원으로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의 비율은 46.7%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남성이 253.6만원, 여성은 84.8만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33.2% 수준이었으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금액의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성별 차이가 컸다.

〈표 2-3-5〉 노인 소득항목별 보유 비율 및 금액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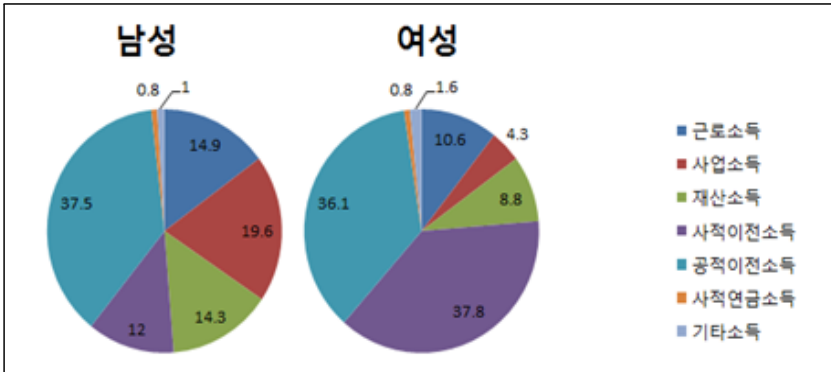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소득항목		보유 비율			소득 금액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비율(%)
총소득					1,176.5	1,697.1	791.9	46.7
근로소득		17.1	19.9	15	156.2	253.6	84.3	33.2
사업소득		14.8	24.1	7.9	160.4	331.8	33.8	10.2
재산소득		23.5	35.2	14.8	143.3	243.1	69.6	28.6
사적이전 소득		93.4	92	94.4	258.4	203.2	299.2	147.2
공적 이전 소득	공적연금	34.6	54.1	20.1	434.7	636.1	285.9	44.9
	기초연금	68.6	62	73.5				
	기타 공적급여	16.9	24.3	11.4				
사적연금소득		1.3	1.5	1.1	9.1	12.9	6.3	48.8
기타소득		4.2	4.2	4.1	14.2	16.4	12.6	76.8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26-427 에서 재구성.

각 소득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7] 노인 소득항목별 구성비 성별 비교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28에서 재구성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였을 때, 모든 자산 영역에서 남성의 보유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규모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보유 비율은 남성이 93.8%, 여성이 89.5%로 나타났으며, 자산의 규모는 남성이 27,892만원, 여성이 22,075만원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부동산자산규모 비율은 79.1%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역시 남성의 보유 비율은 92.6%, 여성은 90.8%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규모는 남성이 4,195만원, 여성이 3,216만원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자산 규모 비율이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의 경우, 보유 비율이 남성은 53.0%, 여성은 38.3%로 다른 자산항목에 비해 성별 차이가 크게 났다. 기타자산의 규모는 남성이 1,156만원, 여성은 633만원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자산 규모 비율이 54.8%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2-3-6〉 노인 자산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단위: %, 만원)

자산	성별	보유 비율(%)	자산규모	
			규모(만원)	남성 대비 여성 비율(%)
부동산자산	전체	91.3	24,546.2	79.1
	남성	93.8	27,891.8	
	여성	89.5	22,074.7	
금융자산	전체	91.6	3,631.8	76.6
	남성	92.6	4,195.1	
	여성	90.8	3,215.5	
기타자산	전체	44.6	855.3	54.8
	남성	53.0	1,155.8	
	여성	38.3	633.4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37~441에서 재구성.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31.7%, 여성이 27.1%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 부채 규모도 남성은 2,725만원, 여성은 2,173만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부채 규모 비율은 79.7%로 나타났다.

〈표 2-3-7〉 노인 부채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단위: %, 만원)

성별	보유 비율(%)	부채규모	
		규모(만원)	남성 대비 여성 비율(%)
전체	29.0	2,408.4	79.7
남성	31.7	2,726.4	
여성	27.1	2,173.6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43에서 재구성

노인의 경제활동과 노후준비실태, 그리고 경제상태의 결과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들은 결국 여성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여성 노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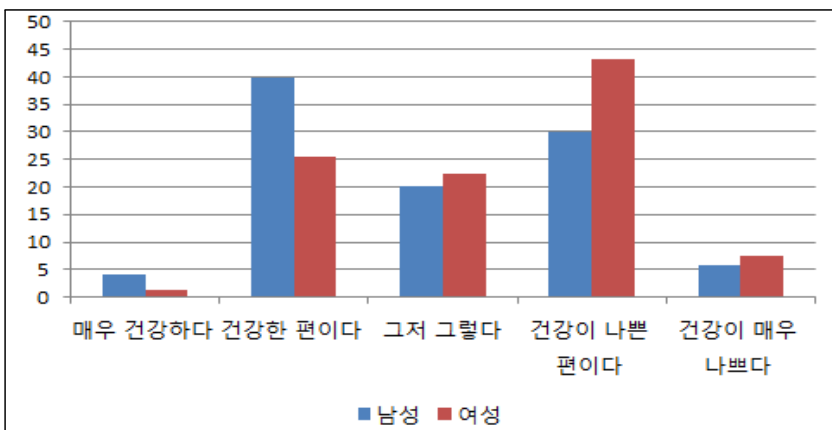
절대빈곤율은 남성보다 높으며 가구주 단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가구주 여성 노인은 60.9%, 가구주 남성 노인은 41.7%로 빈곤율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장미혜 외, 2013). 상대빈곤율 결과에서도 역시 남성은 38.7%에 반해 여성은 51.8%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윤석명 외, 2017).

제4절 건강

주관적인 평소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이 44.0%, 여성이 26.8%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이 35.9%, 여성이 50.8%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8] 노인 평소건강상태 성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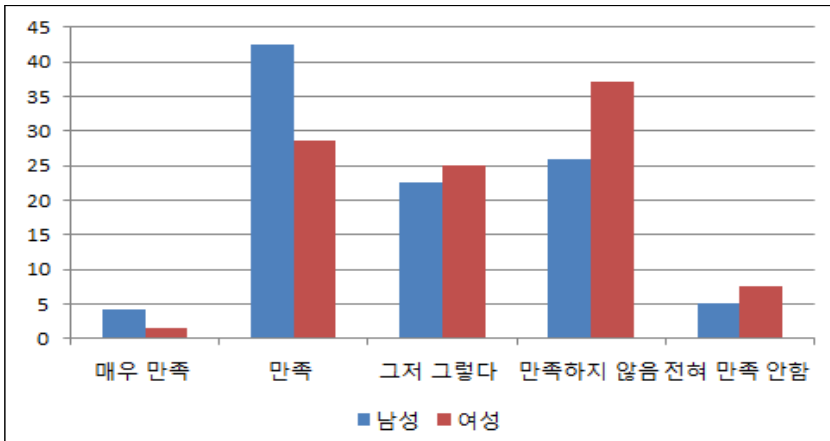


자료: KOSIS, '2017년 노인실태조사', 연구진 재구성.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5&conn_path=I2 에서 2019. 11. 10 인출.

건강상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비율이 남성은 46.5%, 여성은 30.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이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 31.0%, 여성이 44.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9]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 성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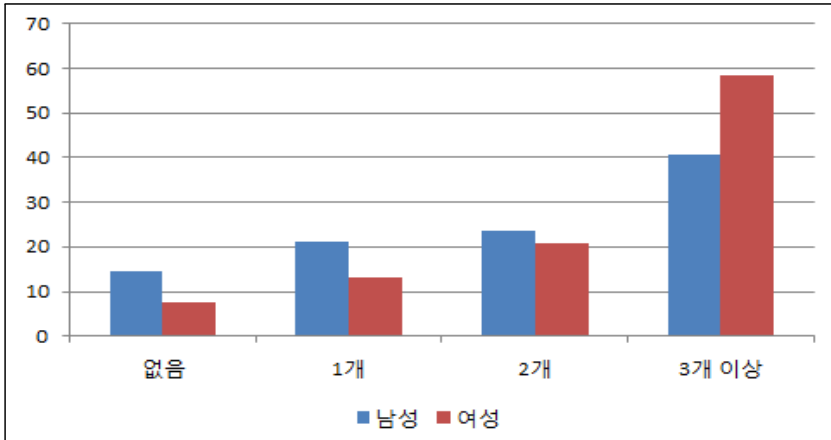


자료: KOSIS, '2017년 노인실태조사', 연구진 재구성.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06&conn_path= 에서 2019. 11. 10. 인출.

객관적인 건강상태의 결과에서도 여성의 건강상태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남성은 만성질환이 없다는 비율이 14.6%, 여성은 7.4%로 남성이 더 높았다. 만성질환이 있다고 한 응답에서 남성은 평균 2.3개, 여성은 3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남성의 비율은 40.6%, 여성은 58.6%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높았다.

[그림 2-3-10] 노인 만성질환 개수 성별 비교

(단위 : %)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2에서 재구성.

실제 만성질환 유병률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질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 치매 등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뇌졸중,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암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3-8〉 노인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 성별 비교

(단위: %)

만성질환 종류	전체	남성	여성
고혈압	59.0	55.3	61.7
뇌졸중(중풍, 뇌경색)	7.1	8.6	5.9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29.5	21.9	35.1
협심증, 심근경색증	7.0	8.2	6.1
기타 심장질환	6.6	5.6	7.4
당뇨병	23.2	22.7	23.6
갑상선 질환	3.3	1.0	4.9

만성질환 종류	전체	남성	여성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33.1	17.1	45.0
골다공증	13.0	1.6	21.5
요통, 좌골신경통	24.1	15.6	30.5
백내장	7.1	5.1	8.6
녹내장	2.4	2.3	2.5
암(악성신생물)	3.8	4.5	3.2
위·십이지장궤양	9.1	7.6	10.3
만성신장질환	1.9	2.2	1.6
빈혈	2.1	1.7	2.4
피부병	1.9	2.5	1.5
우울증	3.0	1.9	3.8
치매	1.5	1.1	1.8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1.7	1.6	1.7
불면증	3.5	2.6	4.3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13에서 재구성

제5절 부양/돌봄 교환 실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돌봄/부양 교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수혜여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3%, 93.8%인 반면, 여성은 80.7%, 54.0%로 남성보다 수혜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서 도구적 지원이라 함은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가사일을 포함한다. 여성은 특히 도구적 지원 수혜를 받은 비율이 낮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2.7%라고 응답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수혜율의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배우자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제공자 역할 여부에서는 여성이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구적 지원 제공률 결과에서는 남성이

61.2%, 여성이 93.6%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로부터 간병·수발·병원동행을 지원받는 비율과 제공하는 비율은 도구적 지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남성의 수혜율은 66.6%, 여성은 56.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던 반면 제공률은 남성이 59.5%, 여성이 69.0%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3-9〉 노인 배우자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단위: %)

구분	성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서적 지원 수혜	전체	16.8	68.2	10.8	4.2
	남성	18.7	69.6	9.1	2.7
	여성	14.4	66.3	13.1	6.2
정서적 지원 제공	전체	16.0	70.2	10.8	3.0
	남성	15.8	70.1	10.9	3.2
	여성	16.2	70.3	10.7	2.8
도구적 지원 수혜	전체	30.1	46.6	14.2	9.1
	남성	44.5	49.3	3.5	2.7
	여성	10.9	43.1	28.5	17.5
도구적 지원 제공	전체	25.4	49.7	17.4	7.4
	남성	11.4	49.8	27.3	11.5
	여성	44.1	49.5	4.4	2.1
간병·수발·병원동행 수혜	전체	14.9	47.2	21.0	16.9
	남자	18.3	48.3	18.8	14.6
	여자	10.5	45.8	23.8	19.9
간병·수발·병원동행 제공	전체	14.7	48.8	21.7	14.7
	남자	12.1	47.4	24.6	15.9
	여자	18.3	50.7	17.9	13.2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4~225, p.227~228, p.230~231에서 재구성

부모와의 부양/돌봄 교환 결과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체로 수혜를 받는 비율이 낮고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차이가 있었다. 도구적 지원과 간병·수발·병원동행 지원 역시 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제공률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여성은 돌봄의 수혜를 남성에 비해 받지 못하면서 배우자와 부모의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표 2-3-10〉 노인 부모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단위: %)

구분	성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서적 지원 수혜	전체	1.2	20.8	44.2	33.8
	남성	0.8	18.6	44.4	36.2
	여성	1.8	23.8	44.0	30.5
정서적 지원 제공	전체	6.1	37.7	33.5	22.7
	남성	5.9	34.4	33.9	25.8
	여성	6.4	42.0	33.2	18.4
도구적 지원 수혜	전체	1.5	5.7	26.9	65.9
	남성	1.8	6.2	24.9	67.1
	여성	1.1	4.9	29.7	64.3
도구적 지원 제공	전체	9.1	19.3	23.3	48.3
	남성	5.9	17.8	24.5	51.8
	여성	13.5	21.4	21.7	43.4
간병·수발·병원동행 수혜	전체	0.9	3.1	26.0	70.0
	남자	1.3	3.4	25.3	70.0
	여자	0.4	2.8	26.9	70.0
간병·수발·병원동행 제공	전체	10.6	29.4	21.6	38.4
	남자	11.4	28.9	20.9	38.8
	여자	9.6	29.9	22.4	38.1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6~261에서 재구성.

제6절 소결

본 장에서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경제상태, 건강, 돌봄 영역 등에서의 주요현황을 성별 차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은퇴연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사유에 있어서도 남성은 상대적으로 정년을 채웠기 때문에 은퇴를 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돌봄/육아/결혼 등의 이유로 은퇴를 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서의 성별 차이는 연금 수령에의 성별 차이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남성의 연금 수급 비율과 연금 수령액 모두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소득항목 중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 보유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소득 금액 역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소득 모두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컸다. 자산 역시 남성의 보유 비율과 자산규모 모두 남성이 높았으며 남성 대비 여성의 자산 규모 비율은 부동산자산이 79.1%, 금융자산이 76.6%, 기타자산이 54.8%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건강만족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만성질환의 개수와 종류별 유병률 등의 객관적인 결과에서도 여성의 유병률 개수와 비율이 대체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책임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배우자와의 부양/돌봄 교환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수혜율은 낮고 제공률

은 높았으며 부모와의 부양/돌봄 교환 관계에서도 여성의 수혜율은 남성보다 낮고 제공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 인구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경제, 건강, 돌봄 영역 모두에서 사실상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때,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미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경력 및 환경의 차이는 근로기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이탈한 이후에도 연금수령 비율과 연금수령액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진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노후에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후 준비 부족문제와 장수리스크는 결국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빈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여성 노인의 건강 취약성 역시 부양과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돌봄의 제공자 역할을 할 뿐, 정작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제 4 장

전문가 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분석

4

전문가 조사 <<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전문가 조사는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슈 및 젠더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 과정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설계

조사참여자는 노년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족법, 사회복지법, 법여성학 등 관련 학계 및 실무·법조계,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FAX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52명(유효표본 기준)이었다.

〈표 2-4-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노년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족법, 사회복지법, 법여성학 등 관련 학계 및 실무·법조계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지역	전국	
표본크기	총 52명 (유효표본 기준) · 공공기관 종사자 : 12명 · 연구기관 종사자 : 8명 · 비영리기관 : 2명	· 대학·학계 연구자 : 26명 · 업계·실무자 : 2명 · 기타 : 2명
조사방법	E-MAIL · FAX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1월 25일 ~ 2019년 12월 4일 (약 10일)	
조사기관	한국갤럽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4-2〉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
전 체		52	100.0
성별	남성	8	15.4
	여성	44	84.6
연령	만30세~39세 미만	3	5.8
	만40세~49세 미만	17	32.7
	만50세~59세 미만	26	50.0
	만60세 이상	6	11.5
소속 기관	공공기관	12	23.1
	대학/학계	26	50.0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제외)	8	15.4
	업계실무자	2	3.8
	비영리기관	2	3.8
종사 기간	기타	2	3.8
	10년 미만	8	15.4
	10 ~ 14년	15	28.8
	15 ~ 19년	9	17.3
	20 ~ 29년	17	32.7
	30년 이상	3	5.8

3. 조사 항목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3〉 조사항목

구분	내용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 평가	·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동의 여부 ·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 평가 ·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 평가

구분	내용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응답자의 전문분야와 가장 관련있는 영역(7개 영역 중 2개 선택)	
	소득 보장	·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소득보장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건강 지원	·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건강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요양 및 돌봄	·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경제활동 및 지원	· 경제활동 및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경제활동 및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안전	·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안전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관계망 형성	· 관계형성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 여부 ·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 관계망 형성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 관련 추가·보완할 과제	·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 관련 추가/보완 되어야 할 영역과 과제	
응답자 특성	성별 / 연령 / 소속 / 소속기관 / 해당분야 종사기간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중요도 평가

가.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 영역 동의 여부

전문가들에게 본 조사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관련하여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판) 및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으로 1) 노후 소득보장 2) 고령자 건강의료 3) 요양 및 돌봄 4) 경제활동 참여 지원 5) 사회참여 활동 지원 6) 안전(학대) 7)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등) 총 7개 영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92.3%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2-4-4〉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 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	100(52명)	92.3(48명)	7.7(4명)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N=4)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보장영역이 필요하다”, “‘관계망 형성’은 ‘사회참여 활동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어도 될 것 같다. 혹은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더 큰 범주로 ‘지역사회 참여’로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는 의견, “7개의 현안 및 정책설정에 동의하지만 ‘고령화’는 항상 ‘저출산’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저출산 또는 가족정책’ 또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근본적 관점이 세대 갈등 관점이자 선별

적 복지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방식으로선 문제를 계속 유예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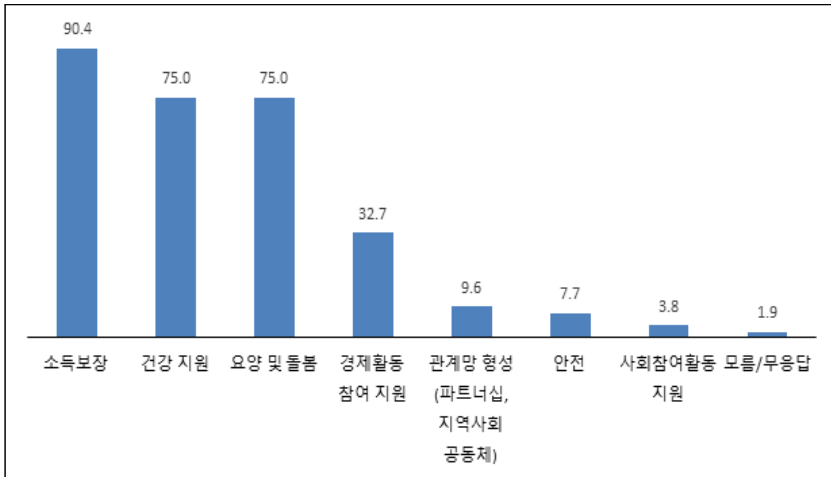
나.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위에서 제시된 7개의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의 중요도 순위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소득보장, 2순위는 건강지원과 요양 및 돌봄을 들었다. 3순위로는 요양 및 돌봄 영역을 응답했으며, 4순위 이하는 경제활동 참여 지원,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안전, 사회참여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³⁾

(단위: %)



3)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상위 3개의 순위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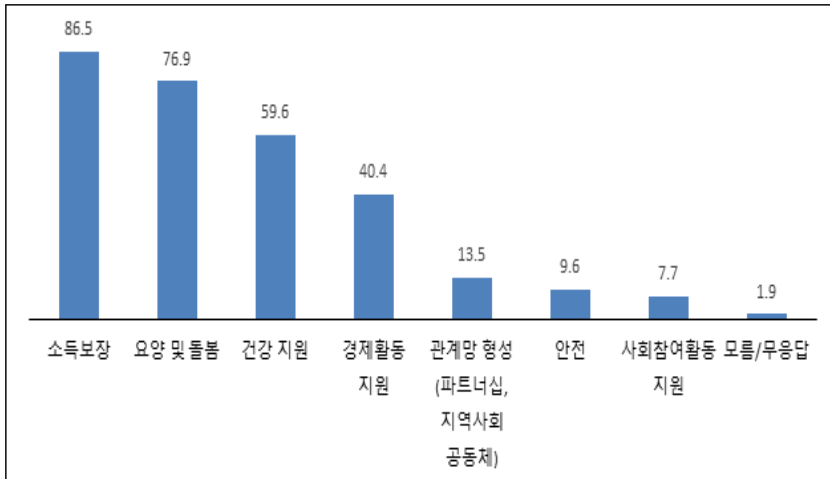
다.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위 7개의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중요도와 순위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소득보장 영역, 2순위로 요양 및 돌봄 영역, 3순위로 건강지원 영역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4순위 이하로는 경제활동지원,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 순으로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그림 2-4-2]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⁴⁾

(단위: %)



소득보장 영역은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 모두에 가장 순위가

4)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상위 3개의 순위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높았다. 요양 및 돌봄 영역과 건강지원 영역 또한 공통적으로 중요도의 순위에 있어 3위 이내를 차지하였는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도에 있어서는 요양 및 돌봄 영역이 건강지원 영역보다 중요도가 더 높아 일반적 중요도와 순위의 차이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2. 고령사회 영역별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와 가장 관련이 있는 2개의 영역을 선택하여, 해당 분야 고령사회 정책 영역별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영역별로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 있어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제도, 그리고 해당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영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후 소득보장 영역

노후 소득보장 영역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모두 응답하였다.

〈표 2-4-5〉 노후 소득보장 정책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아니다	계
전 체	(12)	100.0	100.0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자 중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행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노동시장 혹은 경제활동 경력에 있어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즉, 1차적 노후 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노동시장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으며 무급노동, 경력단절이 많은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어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구조가 1인 1연금이 아닌 1가구 1연금 구조로 되어 있어, 여성이 혼인 상태에 따라 가입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가구 대표성의 문제 등 국민연금 가입구조에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이유로 응답 되었다.

그리고 현행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빈곤의 정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친 것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의 특성과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정책이 구성될 여지가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6〉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12)

구 분	내 용
노후소득보장이 노동 시장경제활동을 전제 로 하고 있으나,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 무급노동에 대부분의 인생을 보낸 여성 노인에 대한 고려 미흡하다. - 1차적 노후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 활동을 전제로 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다. - 연금의 가입자가 남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적 능력의 성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 공적연금의 경우 사회보험 방식의 설계로 인해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는데,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문턱도 높고 진입 이후 낮은 임금수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승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구 분	내 용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여성 노인의 경우 평생 사회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정보 측면에서도 여성 노인들이 배제되어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공적 제도에 접촉하기 어렵다. - 경제활동을 수행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설계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장려, 보장되지 않아 노동정책과 노후소득보장의 정합성 결여되어 있다. 연금제도에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취약 하므로 전업돌봄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은 고용기간 기준 년 수를 다 채울 경우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은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환급받으며, 그 금액이 적다. 지역가입자로 유도하는 정책 방안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상당수가 1인 노인여성이라는 점에서 소득보장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현재 여성 노인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공적노후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연금 또는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여성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 노년 이전의 경제활동이나 유족 급여 등 혼인을 기초로 한 설계로 여성의 상대적 빈곤 또는 가구 대표성 문제 또는 양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되어 있다. - 소득보장과 관련해 특별히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가입 구조에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배우자(남편)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같은 당연가입자일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적용제외자가 되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된다. 즉, 혼인상태에 따라 가입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여성 연금 수급자는 남성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상황이며,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연금 수준이 낮다. 가입구조부터 제도의 특성 모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개인연금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빈곤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현행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빈곤의 정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친 것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의 특성과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정책이 구성될 여지가 없었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가구 단위 보장이 아닌 개인 단위 보장으로의 개편으로 제도전환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크레딧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과 이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연금 수급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급여 수준도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크레딧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경제활동/노동시장에서의 경력과 연관되어 설계되어 있는 만큼, 여성의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차별받지 않고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수준과 승진에서도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러한 취지이다.

나아가, “혼인, 미혼, 이혼 등의 삶의 패턴화에 따라 연금제도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유도하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병행하여, 노년기 생활 구성을 기획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든 노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는 방식의 공적연금 및 기초수급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2-4-7〉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N=10)

구 분	내 용
개인별 연금	-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1가구 1연금 가입구조 개편) - 현행 기초연금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 기본소득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 연금 2층 체계가 시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별 연금 가입이 필요하다. - 가구 중심의 설계에서 개인 단위의 설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적용의 보편화를 통해 노년기와 노년기 이전의

구 분	내 용
	경제활동의 유동성에 대응하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분리하여 중복으로 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동 양육/교육비 등 자녀 관련 현금지원의 체계적 정비 및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크레딧 제도 등 보완	-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입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임의가입 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등) -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크레딧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이 될 세대에게도 돌봄노동 가치인정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의 출산이나 경력단절로 인한 공적연금 지원 혜택을 보다 확대하여 출산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적용을 확대하고, 총출산 크레딧 인정기간을 현행 50개월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연금제도에 돌봄크레딧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경제 활동에서의 상황 개선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연금과 연동시킬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향될 때 비로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모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 미혼, 이혼 등의 삶의 패턴화에 따라 연금제도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유도하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병행하여, 노년기 생활 구성을 기획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은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차별받지 않고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수준과 승진에서도 차별받지않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경제활동 참여, 고용이력 유지 지원 강화해야 한다.
기타	- 모든 노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는 방식의 공적연금 및 기초수급제도가 필요하다. 여성 노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 저소득가구(여성 한부모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등)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가입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급여수준 충분성 제고해야 한다.(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 참조) - 성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층 중 여성이 많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노후 소득보장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는 여성의 공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

보하고 급여 수준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단위로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돌봄 크레딧 제도의 확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노후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결여된 젠더 관점의 정책 보완을 위해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젠더 분석 및 매년 젠더 추이 분석을 통해 보완 방안 모색, 노후 빈곤에 있어 성별 특성 고려한 정책 방안 보완, 소득보장의 다양화 등이 과제들로 제시되었다.

〈표 2-4-8〉 노후 소득보장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 및 과제

(N=10)

구 분	내 용
여성의 연금 수급권 및 급여 수준 보장 (종합)	- 여성들의 연금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수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 수급권 확보와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이 중요하다.
개인별 노후 소득 보장	- 1인 1 연금 보장이 필요하다. 전업주부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구당 보장이 아닌 개인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개별단위로 지급되는 소득보장 정책(기초연금 또는 기본소득) 도입이 고령 젠더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크레딧 제도 등 보완	- 출산, 양육, 돌봄 크레딧의 설계가 필요하다. -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출산크레딧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연금 수급권 및 연금 수준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에서는 출산,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시기에, 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젠더 관점을 반영 한 정책 보완	- 여성의 삶의 유형이 남성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반영한 소득보장 방식의 다양화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젠더 분석 및 매년 젠더 추이 분석을 통해, 연금제도의 돌봄/요양제도와와의 연계 방안 모색해야 한다. 유동성에 대응하는 고용보험의 완전한 재편과 젠더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노후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아동 양육/교육비 보편적 지원을 통한 전/노년기 세대의 스스로의 노후 소득이 준비되어야 한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나.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의 60%는 현행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표 2-4-9〉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5)	40.0	60.0	100.0

현행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현행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연령이나 소득 등의 특성은 고려되고 있으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다. 관련하여 “에이지즘이 노인 생애에서 부각되면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생애보다도 건강에서의 성별 차이는 매우 심각하고, 무엇보다 그 동안 이전 생애에서 누적된 젠더규범과 성별 역할에 의한 건강영향이 노년기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생물학적 정책 설정은 사회적 성으로서 젠더와 성별에 의한 누적된 건강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후기 고령자에 있어 여성 비율이 높으나 건강 지원 정책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2-4-10〉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5)

구 분	내 용
건강 지원 정책에서 성별 특성 고려가 부족	- 건강정책에서 성별 특성의 고려는 중요하나, 대체로 특정/일부 건강 영역에서만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강증진기본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성별 지표가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인의 경우, 생애적 측면에서 그리고 건강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지만, 성별은 어느 생애보다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생애이기도 하다. 보통 에이지즘이 노인 생애에서 부각되면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어느 생애보다도 건강에서의 성별 차이는 매우 심각하고, 무엇보다 그 동안 이전 생애에서 누적된 젠더구분과 성별 역할에 의한 건강영향이 노년기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생물학적 정책 설정은 사회적으로 젠더와 성별에 의한 누적된 건강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 현행 정책은 연령대별, 질환별, 소득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고령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 여성들은 건강수명이 짧고, 질병에 걸리는 기간이 긴데, 이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부족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건강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제도에 대하여 응답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단계별/생애주기별 욕구 내지 수요를 파악하여 성별/젠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고령자 건강 정책에 있어 성별 분리 통계생산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관련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적 성 규범이 이들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부분을 제도 베이스로 작동되는지 평가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존 제도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재설정하고, 필요시 정책개발을 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노년기 건강 문제, 건강증진활동 참여 방식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제도/건강증진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시 성별 특성 고려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11〉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N=3)

구 분	내 용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함	- 무엇보다 이들이 지닌 사회경제적 자원이 이전 생애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자본에 있어 젠더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는 시기이므로(남성에게서의 성 역할에서 매우 혼돈이 있으므로) 모든 관련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적 성 규범이 이들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부분을 제도 베이스로 작동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에 따라 기존 제도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재설정하고, 필요시 정책개발을 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 성별에 따라 노년기 건강 문제, 건강증진활동 참여 방식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제도/건강증진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시 성별 특성 고려한 관점이 필요하다.
단계별/생애주기별 욕구/수요 파악 및 성별 고려한 정책 필요	- 노인 내에서도 초, 중, 후기로 구분하여 이들의 생애에 따른 건강 수요를 파악하되, 이 역시 성별/젠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거동이 불편해지는 단계별로 필요한 요구를 파악해,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근력을 키우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움직임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 생산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건강정책에서 성별을 구분한 통계생산은 기본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건강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는 성별에 따른 정책개발 및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응답한 전문가들 중에 특히 여성 후기 고령자의 건강의료 지원 정책 및 관련하여 지역 사회 연관 프로그램 개발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밖에, 성별을 고려한 고령자 특화 건강의료 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노년 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2-4-12〉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 및 과제

(N=4)

구 분	내 용
성별에 따른 정책 개발 및 특화 서비스 필요	- 여성 후기 고령인구(고령자)의 건강 문제 파악과 의료 이용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거주 여성 노인의 건강 증진, 재활 정책, 노-노 케어를 하고 있는 여성 간병 가족원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해야 한다. - 80대가 넘어서면 여성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므로 여성에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노년을 위한 요가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령대가 되면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노인을 위한 PT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 적십자사 등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노인을 위한, 성별에 차이나는 체력과 근력 키우는 운동 및 활동
기타	- 고령자 질병(치매 포함) 예방 및 관리, ICT 기반 스마트 헬스 케어 - 집에서 환자를 주치의가 방문하여 상태를 살피고, 진료 및 요양지원을 해주는 제도. - ‘건강한 노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⁵⁾.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다.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 중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2%였다.

〈표 2-4-13〉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38)	15.8	84.2	100.0

5) 노인 학대 관련 의견은 아래 안전 영역으로 분류하였음.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고령자 요양 및 돌봄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하여 “현재 돌봄서비스,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수급 자격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역량이 떨어지는 남성 노인의 특성이나 남성에 비해 경제적 의존수준이 높은 여성 노인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 “주로 배우자가 돌봄을 하거나,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돌봄체계이다. 공식적인 돌봄제도도 성별로 차이나는 돌봄 욕구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성은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돌보는 존재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에 민감하지 못하다”, “여성은 돌봄을 더 많이 제공하고 더 적은 돌봄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이 요양 및 돌봄 정책에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후기 고령자의 경우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더 많은 데, 이에 대한 지원 및 특히 커뮤니티케어 논의에 있어 후기 여성 노인과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남성 노인 관련 의견도 적지 않았다. 관련하여 주로 남성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 부족 및 남성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은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남성 수발자에 대한 고려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돌봄 노동자 관련 젠더 이슈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문제, 낮은 처우,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부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응답되었다. 장기요양제도에 있어 재가급여와의 형평성 문제와 결국 돌봄이 젠더화된 가족 돌봄을 구조적으로 강제화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 남성 노인의 경우 시설에서 기피와 재가요양서비스로 배우자 돌봄을 받게 되나, 여성 노인의 경우 가족 돌봄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겠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탈시설화가 이뤄진다면 결국 가족의 부담, 재가족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14〉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32)

구 분	내 용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성별 특성에 따른 요양 돌봄 정책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정보를 들은 바가 없다. - 특별히 성별 고려하고 있지 않은것 같다. - 대상자 선별 및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제공자의 성별 매칭 등을 비롯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설계이다. - 요양등급별, 급여형태별, 소득수준별 특성은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별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 요양 및 돌봄을 받는 자와 서비스를 하는 자의 성별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양자가 모두 수치심을 겪는다. - 요양보호사를 통해 일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노인 전반 공통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설계되었다. - 현재 돌봄서비스,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수급 자격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역량이 떨어지는 남성 노인의 특성이나 남성에 비해 경제적 의존수준이 높은 여성 노인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 주로 배우자가 돌봄을 하거나,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돌봄체계이다. 공식적인 돌봄제도도 성별로 차이나는 돌봄 욕구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 분	내 용
고령자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여성)	- 여성은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돌보는 존재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에 민감하지 못하다. - 여성은 돌봄을 더 많이 제공하고 더 적은 돌봄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이 요양 및 돌봄 정책에 반영되어있지 않다. 요양 및 돌봄 정책에는 돌봄을 받는 노인 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복지 서비스도 포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요양 및 돌봄 정책에는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 또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도구적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은 신체적 기능상태 저하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요양,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요양 및 돌봄의 책임이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노인은 더 큰 부담을 경험하는 구조이다. -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독거여성 노인의 경우 후기 노인인구도 남성 노인에 비해 많아 노인주택 등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요구된다. - 돌봄을 더 많이 책임지고 있는 여성 노인의 상황을 고려한 돌봄 정책의 부재. 평균 수명이 여성 노인이 긴 것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
고령자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남성)	- 남성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기술, 보조기구, 요양시설이 부족하다. (여성 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제공자도 여성이 대부분이다) - 여성과 남성의 수명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남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요양 보호사는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성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거의 없다. 남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서비스와 돌봄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일례로 남성 고령자를 위한 남성 서비스 제공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남성 노인에 맞는 돌봄서비스와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 남성 가족 수발자가 가사지원 등에 능숙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
돌봄 노동자 관련 젠더 이슈 (요양보호사 등)	- 현장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 최저임금에 머물기 때문에 중하위 계층의 여성들만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그럴 경우 남성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어려움,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의 문제, 성희롱 문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대부분은 중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돌봄노동서비스 제공자가 젠더화되는 현상은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북유럽이나 일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에서 중년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외의 다른 직군을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젠더 편향이 한층 심각하다. - 돌봄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주거와 병상에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가요양의 경우 여성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구 분	내 용
	성희롱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 요양보호사,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요양기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에 적절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를 제약한다. 요양보호사의 남성 노인으로부터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현황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건 발생시 대응도 잘 안되고 있다. -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 남성 노인도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여성 요양보호사가 많은 시설에서는 남성 노인을 적절히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 - 요양보호사의 낮은 지위와 처우는 낮은 질의 여성일자리로 만들 - 돌봄종사자가 여성이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여성인력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그 영역과 범위가 상호 공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다. - 고령자들의 요양을 책임질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여성이며, 이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돌봄노동의 질과 태도가 양질이 아닌 구조와 환경이 지속된다. - 요양사의 성별 편중 현상 심화에 따른 돌봄 인력의 불균형(성별 수요 공급 불균형 등)이 존재한다. - 장기요양제도의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고용조건, 근무환경(안전) 등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제도 관련 성별 특성 고려의 부족	-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으로, 가족의 노부모돌봄 부담이 경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가족, 특히 여성들에게 일임되어 있다. 특히 재가의 경우, 하루 4시간 이외의 20시간은 가족들이 돌 봐야 한다. 재가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겠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탈시설화가 이뤄진다면 결국 가족의 부담, 재가족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생활시설의 남성 노인 기피 현상, 과체중 등으로 인해 남성 노인의 급여이용에 제한이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형평성이 부족하다. 이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족 돌봄(여성돌봄 구조적으로 강제)을 필요로 하도록 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 용인은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상하여 가족 돌봄 강제하게 한다. -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노인의 가구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 노인1인가구 중에서 비동거 가족(자녀 등)의 돌봄지원원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구분없이 요양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 설계이다. 남성 노인1인가구보다 여성 노인1인가구의 경우 가족의 돌봄지원이 없을 가능성 높다. 또 노인1인가구는 대부분 여성 노인이며, 남성은 대체로 배우자 돌봄을 받기 때문에 재가요양서비스로

구 분	내 용
	충분하지만 여성 노인1인가구는 현행 재가요양서비스로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성별통계 구축의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업이 구성, 제안되는데, 시범지역의 현황 제시 시 성별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 타	- 장래분야 장래는 성평등 문화 수준과 동떨어져 모든 절차와 의식에 있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주는 남성이 한다든지, 영정사진은 남성만 든다든지, 접객은 여성이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요양관련 정책에서 그렇게 많이 고려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비공식 수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또한, 현재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주: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고령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성별에 따른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동일 성별 매칭이 가능하도록 남성 돌봄서비스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성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는 기대수명이 더 높은 여성 노인들에 대한 질 높은 돌봄 시설에서만이 아닌 집에서의 돌봄, 일상의 돌봄, 자립 등의 지원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남성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는 남성 노인에 대한 젠더화된 가족 돌봄(배우자 돌봄) 부담의 완화, 남성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남성 노인의 장기요양제도 이용 제고, 여성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지원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습득하는 비율이 높아 포괄적 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가급여와 관련하여 “재가급여의 종류와 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배우자 및 가족의 비공식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 돌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노인의 경우 시설 입소의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가급여의 종류별 급여양(급여시간)을 늘리고 재가급여의 종류도 방문재활과 외출 도움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젠더화된 돌봄 노동자 문제 및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보호의 문제를 개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가족 돌봄 제공자 관련해서 부담완화를 위한 돌봄 사회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타 돌봄 및 요양시설 공간에 있어서의 성별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15)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N=30)

구 분	내 용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서 비스 제공 필요 (종합)	- 사회서비스가 1:1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부분의 현행 제도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독립-의존수준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급이 결정되지만,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가용한 사회적 관계망, 자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령자의 성별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별로 상이한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의 설계와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시설 및 주간보호 서비스에서 수급자 성별을 고려한 생활지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 동일 성별 매칭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남성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한다.

구 분	내 용
	- 돌봄노인과 같은 성별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려해야 하고, 각 성별 독특한 욕구 고려해야한다. - 요양/돌봄을 받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성별이 일치되도록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 요양과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남성 서비스제공인력의 비율을 높이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확충 고령자 인권에 근거한 돌봄서비스 제공되어야 한다.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여성 노인)	- 수명이 긴 여성을 오랫동안 질 높은 케어를 통해 돌봐주는 제도가 부족하다.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건강상태가 단계별로 매우 다른데, 단계별 필요를 파악해 지원해주고, 총괄적으로 노년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설에 갇힌 요양원이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집에서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오래 사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또한 외상 상태가 아니더라도,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의 소소한 필요를 파악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 여성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노인주택 등의 주거복지서비스 -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상적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여성 노인 1인가구 중 요양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기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돌봄공동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등이 필요로 하는 도구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 커튼 및 전구 교체 등). - 비공식 수발자의 어려움(병의원 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연계) 여성 노인의 자립생활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남성 노인)	-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자녀로부터 받는 돌봄 지원이 일반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무배우자 남성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노노케어 가족 상황에서 여성 노인에게 가중되는 돌봄 의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해야 한다. - 폭력적인 특성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남성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기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시설 입소 거부) - 남성인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확대, 남성 노인 돌봄을 위한 보조기구,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 남자 요양보호사의 양성 확대 : 남성 고령 수급자의 케어 기피 문제 대응책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보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과 비수가 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제도 이용에 제약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또한, 여성 노인은 상대적으로 공격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습득하는 비

구 분	내 용
	울이 높아 포괄적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확산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남성 노인 이용률 제고 :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남성이 42.5%, 여성이 57.5% (통계청, 2017)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약 26.2%로 전체 인구구성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선형연구에서 남성 노인의 폭력성향, 과제중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으로 남성 노인 급여이용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바 성형 평적이고 성인지적인 서비스 제공 위한 남성 요양보호사 인력 충원 필요하다. - 재가급여의 종류 및 양을 늘려야 한다. 지급처럼 재가급여의 종류와 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배우자 및 가족의 비공식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 돌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노인의 경우 시설 입소의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가급여의 종류별 급여양(급여시간)을 늘리고 재가급여의 종류도 방문 재화와 외출도움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젠더화된 돌봄 노동자 문제 및 처우 개선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의 돌봄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후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 보장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단기적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로 재편해야한다. *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마련 * 영리목적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평가 후 부실/부정한 사업자 퇴출 *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인상, 남성 요양보호사 확대 - 현재와 같은 요양보호사 중심체제에 세분화된 직역과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돌봄노동의 젠더 편향을 보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등 고령자 요양 및 돌봄이 중년 여인이 주로 진입하는 영역이니가 나쁜 일자리여도 된다는 통념에 정부가 편승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요양과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상승되어야 하고, 시장에 넘기지 말고, 국가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 양질의 노동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교육과 훈련, 감독과 평가 모두 개선 필요하다. -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 현재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매우 낮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 노인 당사자가 제공 받은 돌봄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거의 여성들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인력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장기요양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장기요양인력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및 직업 불안정성, 폭력 및 성폭력에의 노출, 제한적인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기회 등 안전 및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 업무 전문화 - 요양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돌봄 제공자 지원 (가족 돌봄자)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그 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 특히 무급 가족 돌봄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휴가 지원이나 무급가족 돌봄자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 돌봄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노-노 케어에서 성별에 따른 가족부양자 상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남성 가족수발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정책 필요 - 돌봄 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적영역 의존이 높을수록 여성의 돌봄부담이 크다.
기타	- 병원이나 돌봄시설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 공간 구성을 해야 한다. - 요양/돌봄의 공간이 돌봄 받는 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의 경우 1인 1실 등 집 구조와 유사하게) - 요양시설의 개방성 확보도 중요하다. 시설입소 노인들과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통하고 열려있어야 자연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가족이나 시민단체 등 돌봄당사자들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 장기요양급여는 직업요양서비스만 받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 재가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특히 1인 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 특히 조모의 책임으로 이전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돌봄의 사회화 확대 또는 조부모 돌봄 지원 정책) 가족 간호 휴가 정책 시 돌봄 책임자(주로 여성 노인의 책임이 많은 현실)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장례분야 - 의식개선 캠페인 및 장례분야 종사자들에게 성평등교육 실시해야 한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의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요양 및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기 고령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주거, 사회적 돌봄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후기 고령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령자 돌봄 제공자의 다수가 고령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 고령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젠더화된 돌봄의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젠더화된 문제는 가족 돌봄의 경우에도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도가 취약할수록, 돌봄의 실질적인 책임이 여성(부인, 딸, 며느리)에게 간다. 즉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적 및 “고령기에 있어서 돌보는 사람도 돌보아지는 사람도 여성이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성평등한 문화 조성 통해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제공할/제공하지 않을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령자 요양 및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개선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젠더화된 저임금, 저숙련 돌봄일자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탈시설화가 재가족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여성 노인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관련하여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돌봄노동 제공자의 성별 불균형 문제와 그로 인한 돌봄노

동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상품화된 돌봄서비스는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역 기반으로 칭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상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령자 돌봄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고령층에서는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이 자기돌봄이 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후견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은 만큼, 돌봄서비스가 존엄한 장례서비스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후견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례 대리제도에 대한 검토 등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가족 돌봄에 의지하기 어려운 후기 고령층 여성의 경우 특히 탈시설과 자기돌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 2-4-16〉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N=38)

구 분	내 용
고령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요양 및 돌봄 지원	- 여성 노인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 노인은 요양 및 돌봄영역의 가장 큰 제공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수혜 집단이다. 여성 노인이 이 영역에서 제공자 혹은 수혜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와 공론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고령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중년기 여성들이 스스로 고령사회와 복지를 테마로 한 사회운동의 장을 개척하는 물꼬를 트는 노력이 중요하다. - 일반수명은 길지만 비건강수명이 긴 여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병원, 요양시설, 재가 외 다양한 케어(housing project)를 가동해야 한다. - 여성독거노인의 주거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구 분	내 용
	- 여성 고령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서비스 선택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단계별로 매우 다른데, 단계별 필요를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반영해서 지원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노년 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젠더화된 돌봄 문제의 개선	-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돌봄 역할의 성평등성) - 성평등한 문화 조성 통해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제공할/제공하지 않을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필요하다. - 남성 노인을 돌보는 여성배우자에 대한 지원정책, 혼자 사는 남성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조부모 돌봄 책임으로 이전되는 현상에 대한 개선과 대책 - 노인 돌봄과 관련한 가족간호휴가 정책에 대한 개선 -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시간 및 기간, 공적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가족 내 돌봄노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관련 개선 및 노후 보장 대책,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일과 돌봄의 균형 : 돌봄은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다. 무급 가족 돌봄자의 권리 보장, 직장 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요양 및 돌봄 지원 관련 제도가 가족 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으로 전반적인 가족 돌봄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보호자의 성별, 돌봄을 받는 노인 당사자 성별에 따른 상이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및 제도 확대의 역기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 가족원이 돌볼 것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배우자(여성)에 의한 돌봄이 많아질 것이므로 충분한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노인배우자의 돌봄 부담이 심각하다. - 고령기에 있어서 돌보는 사람도 돌보아지는 사람도 여성이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가족 부양자 역할 대부분이 여성 노인과 딸, 며느리에게 부여되는 문제. - 제도가 취약할수록, 돌봄의 실질적인 책임이 여성(부인, 딸, 며느리)에게 간다. 즉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돌봄 제공자 중 여성이 많고,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에서 고용, 소득 불안한 경향도 있다. 남성 돌봄 제공자도 필요하다. 남성 돌봄 제공자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외국과 비교하여도, 여성 돌봄 제공자의 비율이 높다) - 여성의 돌봄 선택을 유도하지 않는 정책 설계 - 고령기 배우자에 대한 돌봄 노동의 부담 등에 성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고령자 돌봄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돌봄노동의 여성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가족 돌봄의 경우도 수

구 분	내 용
	발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지원의 돌봄정책과 서비스 대상에서도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남성 노인들로부터 여성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남성 노인 수발 시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반대로 남성 노인의 대소변 처리나 환복 등을 여성돌봄 노동자가 행할 경우 남성 노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 성별 특성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나 돌봄활동을 여성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활동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독 돌봄이 아니라 고령자가 그룹별로 매칭되는 것을 제한한다.
고령자 요양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요양 및 돌봄 지원에 있어 의료와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모두 민간이 대다수이므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우는 절대빈곤의 높이라는 위험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인프라의 공공성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 요양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 요양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 요양 및 돌봄 제도가 시장에 넘겨져 노인과 노동자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예산 운영 뿐 아니라 기관 운영 등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영역 위주로 제공 해야한다. - 돌봄 영역이 공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자로 낙인되어 있어 전문가적인 처우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노동자 처우 및 인권 문제 개선	-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요양보호사양성 및 교육방안 돌봄대상 노인과 돌봄인력 상호간의 업무영역존중 및 이해가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 젠더화된 저임금, 저숙련 돌봄일자리의 사회적 위상 제고 위한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필요하다. - 전문 돌봄 제공자들(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돌봄인력의 여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 남성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의 기피현상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여성 노인의 돌봄/요양서비스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부족) - 돌봄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재정, 인력수급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 시장에서 요양과 돌봄을 주로 수행하는 장노년기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충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 여성화된 요양 돌봄사에 돌봄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 - 돌봄노동인력의 성별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임금향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 - 돌봄을 제공받고, 제공하는 당사자들(여성 노인, 요양보호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인격적 존중, 동등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확대 돌봄노동의 정당한 평가와 처우 개선 성평등과 인권중심의 요양 및 돌봄 정책 수립해야 한다. - 남성 노인 돌봄서비스 개발과 요양보호사 훈련이 필요하다.

구 분	내 용
	- 성별 수요에 부합하는 요양보호사 및 돌봄 제공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 여성 요양보호사의 남성 고령자 케어 기피 문제 해결해야 한다. (가령, 여성 노인의 시설 입소율이 남성 노인보다 높다. 여성 고령 수급자의 성적 보호. 자립을 위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돌봄 지원 욕구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의 차이를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하다. (여성 노인은 장보기 교육이 필요 없지만, 남성 독거 노인은 장보기부터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	- 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여성 노인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돌봄은 그 자체로 젠더 이슈를 내재하고 있다. 후기 고령노인, 치매노인,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 증가 등 돌봄욕구의 증대에 대응하여,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서비스의 확충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탈시설화가 재가축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돌봄노동 제공자의 성별 불균형 문제와 그로 인한 돌봄노동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상품화된 돌봄서비스는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역 기반으로 칭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상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집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노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포괄성, 충분성(급여량, 품질), 통합성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역과 결합 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도 확대와 낮은 품질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 및 돌봄지원 서비스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 강화와 연계 되어야 한다. 지역의 역량 강화는 지역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고 시설 돌봄의 대안으로 소규모의 다양한 주거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돌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지와 교육 및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 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지역사회 돌봄 +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 봉사 체계 구축해야 한다.(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의 교환 등등) 돌봄의 생태계가 상호교환적, 연계선상으로 재구성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 단위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령 돌봄 관련 제도 보완	- 성인지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필요: 정책인지도, 접근성 개선 필요 일·생활균형정책의 확대 - 고령층에서는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이 자기돌봄이 되지 않을때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후견제도

구 분	내 용
	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은 만큼, 돌봄서비스가 존엄한 장례서비스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장래대리제도의 도입, (의료)보호자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피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노인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 의사능력(변별력)이 없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처치를 받을 때, 의료진들이 누구의 동의를 받고 처치를 해야 하는지(가령,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대리인이 없으므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많다. 보호자가 동의해도 된다면, 보호자는 누구인지, 보호자가 어떠한 자격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 노인환자 등이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장래 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타	- 각종 서비스, 수당, 연금 크레딧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돌봄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 노년기의 장기화에 따라 노년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앞으로 요양 및 돌봄지원 정책은 노년을 75세를 기점으로 구분하며, 75세 이후 연령층에서도 85세 전과 후로 구분하여 요양 및 돌봄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령별 세분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돌봄·주거서비스 등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 - 요양과 돌봄 사각지대인 야간보호와 주말보호의 공백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care management)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사례관리/요양서비스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 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과제: 최근 여성 고령자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병약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고령자와 노인복지시설간의 사고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자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더 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요양 시설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를 보다 구속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따라서 요양을 담당하는 자의 책임범위와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데이케어센터나 요양병원 등, 돌봄 영역이 가족에서 지역사회, 국가로 변경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상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시설화 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고령자가 다른 연령대와 더불어 거주하면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나 시설이 필요하다. 즉 요양 및 돌봄이 고령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라.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 중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대하여 현행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2-4-17〉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10)	10.0	90.0	10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현재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 “재취업이나 준전문직종의 일자리는 주로 직장경력이 있는 남성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단순서비스업종(또는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업종)에 취업되는 이중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일자리 정책에서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용돈 나누어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4-18〉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9)

구 분	내 용
고령자 경제활동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현재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데, 이러한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 고령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재취업이나 준전문직종의 일자리는 주로 직장경력이 있는 남성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단순서비스업종(또는 장기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종)에 취업되는 이중적 구조가 존재한다. 고령자 취업 직종으로 남성은 경비, 청소로 여성은 돌봄, 청소를 주로 맡게 된다. - 기존 노인의 성역할이 반영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여성 노인은 재봉, 음식 만들기, 남성 노인은 경비 등 안전관리) 기존 노인세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 여성과 남성의 경력과정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함	- 일자리 정책에서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 여성의 경우 공공부조 비율이 높고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다. 여전히 여성 노인의 잠재적 경제적 활동 인구로 보기보다 비경제적인 돌봄 지원 인력으로 전제되는 경향이 짙다. - 현재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중심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최소빈곤선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성별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할 정도의 다양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용돈 나누어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여성 노인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가 없다. -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제나 정책에서 고려가 미흡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고령자 일자리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여성

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의 상이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안에서 성별을 고려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표 2-4-19〉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N=9)

구 분	내 용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성별 특성 고려 필요	- 노동시장 자체의 성별 분절화와 성 불평등을 고려하여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더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책 필요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사의 상이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 은퇴 전 노동시장 참여 여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지역사회 안에서 성별을 고려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무급 자원 봉사 인력으로 인식되기보다 지역사회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여성 고령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예: 서비스업 등) -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고령자 일자리와 연결시켜 이를 위한 취업훈련 등의 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기타	- 경제활동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성별과 각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고령자를 건강에 따른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이에 부합하도록 설정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고령자 경제활동은 성별 차이보다는 ‘고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하향취업, 취업직종의 고착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연금제도 등에서의 차별문제 고려 필요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지원정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야 한다를 취지의 의견이다. 관련하여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및 재취업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분절되어 있는 각종 경제활동 및 지원 서비스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고령 여성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를 분류하고, 경제활동 조건이 고령의 경제활동 참여자의 인권 보장을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과 같이 고령여성의 경제활동 분야의 업무를 세분화해 산업노동과 유사하게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성별 분업 논리의 극복과 여성 노인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전반적으로 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취적인 일자리 제공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4-20〉 고령자 경제활동 및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N=10)

구 분	내 용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반영	-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및 재취업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분절되어 있는 각종 경제활동 및 지원 서비스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령 여성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를 분류하고, 경제활동 조건이 고령의 경제활동 참여자의 인권 보장을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과 같이 고령여성의 경제활동 분야의 업무를 세분화해 산업노동과 유사하게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 고려	-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성별 분업 논리의 극복과 여성 노인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취적인 일자리 제공 또한 필요하다.

구 분	내 용
	-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 노인의 재고용과 그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안 공공 영역에 성별에 잠재적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큰 상황에서 다소 젠더화된 틀이긴 하지만 돌봄에서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기타	- 여성빈곤문제 해결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활동 영역에의 젠더 아젠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경제활동 영역은 정년보장, (정년보장이 어렵다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유사한 직종으로의 재취업 지원, 다른 업종(직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재교육(1-2년)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사장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경제활동은 마지막 수단이고, 일차적으로 소득보장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마.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 중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9%였다.

〈표 2-4-21〉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9)	11.1	88.9	100.0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성별 특성 고려 없이 생애주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관련하여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정책의 큰 틀이 ‘은퇴자’, ‘베이비부머’와 같은 식으로 전체 세대의 특징과 대표적인 생애주기(은퇴 후 소득 감소와 관계망 축소)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여성의 경험은 ‘남성 (가장) 은퇴’에 수반하는 가족 단위의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 노년기로의 진입 경험,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의 큰 틀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지원이 프로그램제공 기관/인프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인지 관점의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응답하였다. “현행의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은 주로 노인 복지관, 노인회관 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거나 자원봉사센터, 시니어 클럽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각 프로그램의 성별 선호도는 다를 수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표 2-4-22〉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8)

구 분	내 용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성별 특성 고려 없이 생애주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정책의 큰 틀이 ‘은퇴자’, ‘베이비부머’와 같은 식으로 전체 세대의 특징과 대표적인 생애주기(은퇴 후 소득 감소와 관계망 축소)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여성의 경험은 ‘남성 (가장) 은퇴’에 수반하는 가족 단위의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 노년기로의 진입 경험,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의 큰 틀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 - 성별 고려없이 모든 노인의 참여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지원이 프로그램제공 기관/인프라 중심으로 되	- 현행의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은 주로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거나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각 프로그램의 성별 선호도는 다를 수 있지

구 분	내 용
어 있고 성인지 관점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성별로 나누어 지원되거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극히 드물다. - 현재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등)은 남성 노인에 비해 참여율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나 사회참여활동 유형에 따라 성별 참여율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노인은 일반 자원봉사 참여율은 높으나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며, '가사, 청소' 등의 영역의 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성정 외, 2015)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차이,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사회참여활동의 기획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가복지시설 등 인프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성별 특성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개별 기관의 운영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편이라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며,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당사자 관점보다는 프로그램 제공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령자가 사회전체에 통합, 참여한다는 의미의 지원은 부족하다. - 복지관 등 다중집합장소에는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높고 남성들은 공원주변에서 사회참여활동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있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4-23〉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N=8)

구 분	내 용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구성	- 지역사회에서 여성 고령자들의 활동, 특히 문화, 여가, 돌봄 관련 활동의 영역을 '가족 단위'로, 또는 소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활동, 시민참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고령자들의 시민적 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 : 올레길 이야기 할머니) - 자원봉사의 경우, 은퇴 전 직업적 특성을 활용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경력이 필요하다. 복지관 등의 교

구 분	내 용
	육프로그램의 경우 여성 노인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남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 노년기 삶의 취약성에 있어 성별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는 프로그램과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은 관계맺음에 기반하는 사회참여는 남성에게 비하여 적극적이나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프로그램 내용에서 남녀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은 사회참여를 위한 경제적 물적 자원과 인적자본이 남성에게 비하여 열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독거여성 노인과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 노인에게 대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성역할관념에 근거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남성은 소통과 대화 능력에 대해 한 번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채 노인에 이르게 됨. 남성 노인은 감수성도 떨어지고 고집만 세고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남성들은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성별통계 생산과 활용	- 성별통계 생산과 활용 통하여 노인의 성별 사회참여활동 현황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지도/인식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정보접근성 확대 등)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기관 대표와 실무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중장기적으로 사회참여활동 지원 기관의 대표와 실무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 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 및 설계, 이용자 커뮤니티 및 자조모임지원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안내자료 제공 및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시설평가에서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측정하고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설계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대와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노인 사회참여활동 개발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참여활동 중 고정화된 성역할 규범에 기반한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진입장벽 완화(정보접근성 확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

참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고려와 함께 성별 특성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단지 여가 선용이나 개인적인 건강증진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이 아닌) 공동체 기반에서 문화, 교육, 돌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24〉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N=9)

구 분	내 용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설계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사회공헌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 및 선호를 고려한 기회 발굴 및 프로그램 구성해야 한다. - 노인 사회참여활동 개발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참여활동 중 고정화된 성역할 규범에 기반한 활동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진입장벽 완화(정보접근성 확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참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내용의 구성과 지원영역 설정이 필요하다. - 고령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가벼운 공감부터 이질성이 없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세대, 성별을 고려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전체적 설계에서 고령화, 은퇴 경험, 시니어, ‘베이비부머’ 등의 정책 대상에 대한 인지 자체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고령화 경험을 ‘가구’ 단위로 생각하며 성별로 다른 관계망이나 환경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세대의 특성이 달라지고 내부의 다양성도 커지고 있다. 여성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단지 여가 선용이나 개인적인 건강증진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이 아닌) 공동체 기반에서 문화, 교육, 돌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사전적인 환경진단을 거친 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고령층 진입과 관련하여 ‘고령’, ‘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는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노인들 사이에서 서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인과

구 분	내 용
	젊은이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세대통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남성, 여성 노인이 힘을 합하도록 독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급속한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기계와의 친밀도가 낮은 여성 노인이 기술변화에 따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바. 고령자 안전 영역

고령자 안전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 중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5%였다.

〈표 2-4-25〉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8)	37.5	62.5	100.0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령자 안전 정책에서 학대 문제, 공간상의 안전 등의 문제 등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2-4-26〉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N=4)

구 분	내 용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에 성별 특성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 ‘학대’ 역시 안전의 문제이면서, 또한 포괄적으로 보면 건강의 위험 요인이다. 학대와 관련된 안전의 문제는 건강영역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 안전 영역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여성 노인의 안전 시설 이용과 이들의 삶의 공간에 대한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이 노인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상황과 이에 더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대체로 노년기가 되면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거나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참여와 활동에서는 매우 소수에게 부여된 상황이며, 그렇다면 노인들이 나름의 안전 공간과 시설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동을 강요받게 될 수 있고, 혹은 기존의 공간에서도 이를 개보수하거나 안전한 환경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15년 전부터 시작된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안전과 건강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터전(공간)으로도 포괄하도록 정책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고령자 안전 정책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었다는 정보를 들은 바 없다. - 고령화된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빈곤하므로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타	- 남성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가정폭력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과 제도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노인학대 예방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관련하여 “고령자 학대 예방 등에서 성별 차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초래하는지 검토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 등이 있었다. 아울러 공간 안전 관련 성별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표 2-4-27〉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N=4)

구 분	내 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노인 학대예방	-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등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 하나가 돌봄이다. 이는 여성 노인이 같은 노인인 배우자, 시부모/자기부모, 혹은 때에 따라서는 손자녀 돌봄까지 하면서 여성 노인이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학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이 나이들고 병약해서 가족과 배우자, 혹은 손자녀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 돌봄이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되고 제공 받고 있는지, 이것이 가족간의 불화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 본의 경우,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의 학대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학대 예방 등에서 성별 차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초래하는지 검토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외의 다양한 학대유형이 포함됨. 남성 노인은 방임, 자기방임 위험이 높고 여성 노인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위험이 높고 주로 아들로부터 학대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 안전 지원	- 집안 구조를 여성 노인에게 맞게 설계하고 수리.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의견은 젠더 관점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여성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 시설에서의 학대 문제 뿐 아니라 가정 내 학대의 문제 등에 관한 견해가 많이 제시되었다. 젠더 관점에서 고령자 안전 정책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고령자 안전대책에서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과제이다”라는 의견, “고위험군인 초고령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고립/단절된 고령자에 대한 안전망/제도 구축, 노인혐오 문제 관련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기타 안전 이유와 관련, 고령자 운전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표 2-4-28〉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N=8)

구 분	내 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선	- 여성 노인에 대한 가족학대문제와 고령화로 인해 안전확보가 안되는 부분 해결해야 한다. - 학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 최근 방임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도 많아지고 있어, 이들에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활동/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학대 예방정책과의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 있어 학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이 여전히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로서 젠더(규범)가 있다. - 안전과 학대이다. 그 동안 안전과 학대의 문제는 아동과 여성(젊은 세대) 중심으로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 노인학대는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었다. 노인학대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또한 요양시설에서의 시설종사자의 학대에 초점을 두었고, 상당수의 학대는 가족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노인들 중 약 10%는 학대 경험이 있다. 물론 정서적 학대, 방임이 많고 신체적 학대, 최근에는 성적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지난 10년의 조사에서 보 여주듯이 9~12%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는 전체 학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로 신고 되어 보호처리를 받은 자료를 성별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해자가 거의 7대 3으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높고, 여성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는 주로 가족, 그것도 배우자(남성)와 아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신고율은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관계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과 독립적 상황이 결여되어 학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가 50%를 넘는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를 경험한 여성 노인은 대다수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우울증, 자살생각 등) 건강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학대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체계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젠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행정체널로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젠더 내 여성, 노인, 어머니 그리고 학대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들이 너무 아동학대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성폭력의 문제도 성희롱, 성폭력, 신정범죄 및 불법촬영, 인터넷 그루밍 등 매우 다양한데, 이를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법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1차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인과 그 것을 설명하는

구 분	내 용
	상황에 대한 이해는 개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집단과 사회 구조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노인부부 간 발생하는 배우자 폭력, 아들의 노모에 대한 학대, 남성 노인의 자기방임을 해결해야 한다. - 배우자 폭력, (손)자녀로 부터의 폭력 등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가정폭력 피해자 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학대 상담 채널 강화가 필요하다. -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자 노인보호요양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우수요양사 인센티브제, 노인학대요양사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젠더 관점에서 고령자 안전 정책 접근	- 고령자 안전대책에서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과제이다. - 고위험군인 초고령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안전망/제도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서나 복지관뿐만 아니라 은행, 식당 등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협조를 얻어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 - 가족이 단절된 치매노인 혹은 신체적 질병 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가족이 단절된 빈곤, 독거, 치매 노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후견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혐오인식의 개선	- 젊은 층의 이른바 노인혐오현상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타 (고령운전자 관련 대책 필요)	- 고령사회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와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남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한정면허와 같은 면허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의 대안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처방으로서의 사법적 대응이 아니라,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고령운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 남성 노인 대상 고령자 운전 관련 교육 및 운전 중단 지원 확대 학대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사.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을 선택한 응답자 중 현행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6) 건강 영역에서 노인 학대 관련 내용으로 제시한 의견은 연구진이 안전 영역으로 재분류함.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70.0%였다.

〈표 2-4-29〉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20)	30.0	70.0	100.0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년기 관계형성과 관련하여 현행 정책이 가족 다양성의 현상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가족다양성의 증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황혼 이혼 증가 등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이나 그 내부의 다양성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부든, 부모자녀관계든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노년기 관계 형성 지원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기 가족관계 지원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노년기 관계 형성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비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노년기 관계형성과 유지에 대한 젠더 차이를 조사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젠더 관점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 현행 법률과 제도는 주로 남성 중심,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에 기반해 구축되어 있다는 지적, 그 밖에 ‘관계형성’ 이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4-30〉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N=15)

구 분	내 용
가족다양성 현상 미반영	- 가족다양성의 증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황혼 이혼 증가 등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이나 그 내부의 다양성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2017년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남성 30세, 여성은 27세 및 83세로 양분되며, 2000년 대비 각각 3세, 8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9.28.). 여성의 경우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가족 관련 논의는 주로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공동체, 지역연계망 구축 등에서 노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부부든, 부모자녀관계든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노년기 관계형성 지원은 시대착오적이다. 노년기 가족관계를 보면, 이미 노인의 72.4%가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고,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자 된 여성 노인(1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여성 노인들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가족 돌봄을 전제로 한 노년기 지원 정책은 성인지적인 관점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기 가족관계 지원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노인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대한노인회 등 주로 남성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지원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남성 노인들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성별 위계 및 분업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세대간 통합을 저해하는 문화라고 생각
노년기 관계 형성 관련 정책에 있어 성별 고려 미비	- 노년기 관계형성을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활동, 사회참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성 노인은 가족/친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두 성별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관계형성의 기반이 성별로 나누어져 왔으나(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 및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 한국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노년기에도 성별 분리된 친구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이런 문화에서 직역을 중심으로 친구지인관계를 형성해 온 도시지역의 남성들은 노년기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여성 노인 커뮤니티는 쉽게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남성 노인들은 걸도는 경우가 많다. 남을 돌볼 줄 모르고,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한 남성들은 노년기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한국사회 특성상, 오랜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폭이 좁다. 종교활동(교회, 성당)을 하지 않는 중장년 여성의 경우, 별다른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렵다. 노년기 관계형성과 유지에 대한 젠더 차이를 조사하

구 분	내 용
	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책이 필요하다. - 현재 노년기 관계 형성과 관련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본다. 노년층은 이미 많이 변화되어 있으나 변화된 노년층에 대한 고려 없이 관례적인 지원책만 있다. 장기화된 노년기에는 공동체적 삶이 필수이며, 기대수명의 차이로 고령층에는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여성 노인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젠더 관점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대응 미흡	- 혈연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노인 중에서도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며 이는 무연사,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이혼·사별한 노인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지지, 지원하는 정책과 문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파트너십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들(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 규범과 성별 규범 등)에 대한 진단과 대응부터 아직까지 미흡해 보인다.
남성중심의 현행 법과 제도	- 현행 법률과 제도는 주로 남성 중심의 의식과 문화에 기반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노인단체와 함께 하는 공동협력사업이나 노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대부분 남성 노인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한노인회 임원은 거의 남성이며, 사업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 부계 혈연중심, 가부장적 가족문화 변화를 위한 정책 필요하다.
기타	- ‘관계형성’ 이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 파트너십은 부유한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전제하고 있고, 지역사회공동체는 고령 여성을 전제하여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 아닌 지 생각이 든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관계망 형성 관련 정책에 있어 가족 다양성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하여 “정상가족을 넘어서서, 초고령사회, 다양한 가족의 시대에 적합하게, 노년기에 서로 돌봄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 사는 관계들도 유사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족법뿐만 아니라, 주거, 상속 등 경제적인 문제들도 함께 변화가 수반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고령자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보완, 고령자의 관계/고립 단절 관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파트너십/관계망 형성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 가부장적 가족문화 변화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파트너십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파트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생활과 재산문제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4-31〉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N=15)

구 분	내 용
가족다양성 고려	- 실제로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 여성 노인들의 가족생활도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사회 관계망이나 공동체 참여 활동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노년기 가족다양성 및 1인 가구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정상가족을 넘어서서, 초고령사회, 다양한 가족의 시대에 적합하게, 노년기에 서로 돌봄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 사는 관계들도 유사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족법뿐만 아니라, 주거, 상속 등 경제적인 문제들도 함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령 1인 가구 관련 정책 보완	- 기대수명을 고려할때, 여성 노인이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1인가구 간 관계망 형성 지원제도(따로 또 같이 식의 Co-Housing 거주 방식 지원)가 필요하다. 정보화사회에서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이 디지털 기기에 취약하므로 지역공동체 내에 디지털 접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 연령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공동체 실험이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 및 연령별로 고립되지 않은 융합형 공동체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가구 간 공동체 기획뿐 아니라 연령혼합형 공동체 주거 지원 사업, 청년-고령 1인가구 연계사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관계/고립 단절 관련 성별 특성을	- 남녀 노인이 가족과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시점, 계기, 양상 등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여 성별을 고려한 정책적 개

구 분	내 용
반영한 정책 필요	- 입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 남성 노인은 부부, 가족,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여성 노인은 자원봉사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두 성 모두 자원봉사, 사회참여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 관계형성의 동기(motivation) 및 욕구에 있어 젠더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성별 특화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관계망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부각과 그에 기초한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사업 전반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여성 노인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노인회 내에 대한여성 노인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여성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변화의 정책 필요	- 가부장적 가족문화 변화를 위한 가족정책 필요하다. 노년기 부부 관계를 위한 부부관계 개입은 신혼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혼기 부부관계 관련 프로그램에서 노년기 부부시기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노인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육성 및 역할 지원등도 필요하다. 가정 안의 가부장적 위계 및 성별 분업이 지역사회로 연장되지 않도록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파트너십/관계망 형성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	- 파트너십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파트너제약을 철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생활과 재산문제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관점에서 관계형성과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	- 국가나 지자체가 '나비남 프로젝트'처럼 중년, 노년기 남성을 돌보는 관계 맺기 서비스 제공자로 직접 나는 것은 미봉책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아니다. 젠더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 웰에이징 관련 함께 배우는 교육, 공동체 활동 방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 필요.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일(자원봉사 등)을 통해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핵심적 젠더 아젠다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하여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부장적 문화, 전통적 가족부양 관계의 변화/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가족 다양성과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개선 과제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개산, 상속제도의 정비, 노년기의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하고,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4-32〉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N=19)

구 분	내 용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	-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기초가 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현재의 기술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망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노인 1인가구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이들 노인들의 공동체연결성의 약화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계망 구축사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여성 노인 1인가구들의 지역 노인여가시설의 이용경험을 분석해 (지역차이는 있지만 현재 50%정도로 보고됨)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여성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과 관계망 형성이 연계되게 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1인 가구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며 그 다수는 여성일 가능성이 큰 데, ‘독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취약계층, 요보호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여성 노인의 관계망,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교육, 적절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이 마련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 독거여성 노인과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관계망 구성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 무연사,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일상을 점검하는 정책은 사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보다 파트너십,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른바 ‘독거노인’ 정책은 그러한 정책의 공백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 남녀차별적인 문화가 노년기의 (여성)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자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외의 지역사회내 연결망과의 연계전략 마련해야 한다. - 노년기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개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친화적 공동체 인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자신의 관리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자기부양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의 고립감과 방치, 돌봄사각지대 발생 등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고령층에서는, 여성 노인이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정책 지원에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노년 엘리트 집단, 노년 고소득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마련 필요하다. - 부부나 자녀관계 등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돌봄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관계망의 육성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내 여성 노인의 대표성 확대하고, 세대간 통합의 중심축 구성해야 한다. - 가족단절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공동체 구축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 - 남성 노인을 관계망 특히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아젠다가 필요하다. 여성 노인의 가정내 돌봄 역할 과중함을 덜어주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 범위를 넓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가족, 가족과 같은 연대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가부장적 문화, 전통적 가족부양 관계의 변화/개선	- 한국 가족에서 확대가족 중심의 가족문화 타파, 가부장적 가족문화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에 대한 전통적 가족부양 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별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가족 다양성과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개선	- 재산관리와 상속 등 재산처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노인 비혼동거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노년기의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하고, 생활동반자법 등 제정이 필요하다. - 또한 노년층의 파트너십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과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가족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기타	- 현재의 주거공동체 시범사업에서 직면한 문제는 자발적 요구에 의한 공동체 구성이기보다 필요에 의한 차선택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입주 전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내 용
	- 자원봉사, 사회참여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 남성들에게 돌봄과 인간관계에 대해 세대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한다. 40대 이하에게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한 성찰, 육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50대 이후부터는 자기돌봄과 배우자 돌봄의 기술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령화에 따른 남성돌봄자의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 가족의 변화에서 전 연령대에서 부각되고 있는 1인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 유무, 원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정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광의와 협의의 차원에서 관계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구축되어 생애단계별 ‘관계망 로드맵’이나 ‘지역사회 관계망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제안한다. - 다양한 연령계층의 세대통합, 노년세대의 선배시민으로서의 성숙한 태도와 열린 사고, 상호존중문화, 후세대의 노년세대 문화 이해 및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주 : 사례수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별로 연구진이 재분류함.

3.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 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전문가들에게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 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에 대하여 오픈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주거 영역에 있어 정책보완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고령자들의 주거에 대한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성이 있는,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다가 독립성이 없게 될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간에서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은 고령자가 돌봄이 보장되는 거주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해주는 것이다.”라는 의견, “후기 고령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므로, 노인부부세대/독거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 검토시에도 성별 특성 고려 필요” 등의 의견

이 제시되었다.

정보화 영역에 있어서도 고령층 여성의 정보 소외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선, 후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상속제도는 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 생존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공후견제도 확대 등 후견제도의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역/도시·농촌 영역에 관한 의견이 있다. 관련하여 “도시 농촌과 성별 차이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환경 차이에 유의하여 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다 함은, 여성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분야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7개 분야 각각의 영역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성불평등이나 삶의 질 악화는 이전 시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증첩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목표와 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2-4-33〉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구 분	내 용
주거 영역	- 고령자들의 주거에 대한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성이 있는,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다가 독립성이 없게 될 경우, 노인 요양시설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간에서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 - 우선 국민임대주택에 입소한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인간관계의 질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등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기여성 집중구역에서 여성 노인의 거주공동체의 모델을 뽑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노인' 공동거주같은 것은 탁상공론에 가까울 수 있다.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있는 것을 찾아내고 확장하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기의 인간관계와 돌봄의 그물망은 기본적으로 거주공동체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은 고령자가 돌봄이 보장되는 거주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해주는 것이다. - 주거 정책- 후기 고령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므로, 노인부부세대/독거노인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 검토시에도 성별 특성 고려 필요.
정보화와 고령자	- 고령자의 ICT 기술 적응력 확보해야 한다. - 고도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노인들이 디지털의 세계에서 따뜻한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와 공동체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성 노인들의 디지털 관련 이용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 산업시대와 관련해 관련한 정보나 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고령층 여성 노인의 경우 고등교육이나 디지털 정보 등에서 소외된 존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생교육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책과제도 필요하다.
제도 (배우자 상속 등)	- 민법상 배우자상속분 규정의 개정 통계청의 2017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기대여명은 85.7년으로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인 79.7년보다 6년이나 길었다. 이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사후해소된 경우 여성 노인이 여생을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 노인의 빈곤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빈곤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5.9%로 남성 노인의 빈곤율인 40.1%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빈곤의 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도 전체 노인에서는 15.8%, 여성 노인의 경우 19.3%로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남성 노인보다 더 심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고 일한 기간도 짧아 국민연금의 혜택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남성 전체의 45.5%가 국민연금을 받는 반면 여성 노인의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이하인 20.3%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구 분	내 용
	기본적으로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전통적으로 무급 가족 돌봄자 역할을 해왔던 대부분의 여성 노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 노인들이 노후에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 사망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제도는 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상속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방 배우자의 죽음으로 장기간 거주하던 집에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인데 낯선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익숙한 환경에서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 상향 조정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사망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에 비해 0.5정도 높아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여한 것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속분이 인정될 뿐이다. *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상속 인정 법제화 : 노년의 경우 사실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년 사실혼 배우자의 복리를 위해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법제마련 필요하다. * 부부재산계약 계약서 양식 보급 및 절차 홍보 : 노년 재혼시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가족간 분쟁이나 여성 배우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제도 (후견제도)	- 공공후견제도 확대 : 현재처럼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치매나 의사능력의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 여성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고령자 비율 높고, 여성 노인의 소득구조 취약하다. - 노년기에 늘어남에 따라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이 특별히 점검되어야 한다. - 여성 노인의 수급권 보장과 관련하여 영역별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수급권 강화 관련 개선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돌봄	-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돌봄의 사회화(제도화) 제도와 미흡하면 여성 노인이 배우자 돌봄 부담이 크다. - 노노케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시 전담인력의 처우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초반에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경우 제

구 분	내 용
	도가 도입된 초기와 안정화 이후 채용된 전담인력의 고용조건이 상이하여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돌봄노동, 여성노동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안정적 고용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돌봄노동을 아무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싸구려 노동으로 취급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현장 경력 및 노동의 강도 등에 따라 임금 차등제가 필요하다.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인들을 위한 세세한 접근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 여성을 돌봄의 제공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참여활동	- 고령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에서 고령자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자(가)가 되어야 하며,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 선배시민으로써의 활동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노인이 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활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에 익숙하지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는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로당 등 노인사회참여 활동에 베이비부머 세대 관점 보완이 필요하다. - 사회참여활동 영역에서 세대통합형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활동	-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친화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취업훈련도 연결되어 개발되어야 할 과제이다. - 노인의 빈곤율이 높고 특히 사별 후 홀로 남겨진 여성 노인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생애경험에 맞는 교육, 재취업, 구직지원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 준고령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화,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 노년기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소득에 대해 현명한 관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은 노인 이전 단계에서 이런 경험이 적어 사기 등에 취약하다. 자식에게 상속,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등에 관해 교육하고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는 자산에 대해 처분, 관리, 유서 등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통해 사전의료전향서 작성,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안전/ 노인 인권	-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노인혐오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은 상황인데, 여성 노인의 경우 이러한 인권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을 때 학대, 차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 분	내 용
	- 노인학대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 연령차별사회가 아니라 연령통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도시 농촌	- 도시 농촌과 성별 차이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환경 차이에 유의하여 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역 돌봄
가족유형/가구유형 변화/1인가구 고려	- 가구 구성의 변화와 젠더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여성 노인 1인가구의 빈곤예방 : 가족의 변화에서 특별히 1인가구가 주된 가족유형으로 명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과 연령의 교차를 통한 정책지점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와 노년기 1인가구는 생애주기단계에서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여성들의 경우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애주기별 고려와 함께 성별 대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 고령자	- 남성 노인의 사회관계, 노후활동, 정신건강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남성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기술(식사 준비, 청소 등) 교육이 필요하다. - 50대 중장년부터 고독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특히 남성 중장년에 대한 개입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남성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 주의 해야 한다.
실태 /통계	- 고령화 논의에서 '세대'(베이비 부머, 산업화 세대 등)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데, 이 때 세대 경험은 주로 남성 가장/가족 단위로 언급된다. 여기에서 누락되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실태 파악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가령, 남성은 은퇴자 지원과 경제활동 위주로, 여성은 여가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한) 이원화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 성별 통계 (소득, 고용, 보건 등)가 필요하다.
종합/기타	-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다 함은, 여성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분야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7개 분야 각각의 영역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성불평등이나 삶의 질 악화는 이전 시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목표와 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노인이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보장제도 및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 및 통합(원스탑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험제도 및 서비스가 각각 분절되어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각종 복지제도가 신중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 : 사례수(N=34)는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집계함. 내용/영역별로 연구진이 재분류

제 5 장

결 론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1절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노년기에 있어 젠더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고령 정책에 있어 젠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젠더 격차 현상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길고, 그로 인하여 고령, 특히 후기 고령인구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부분은 인구학적 요인 자체는 정책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고령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 및 취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 주요하게는 노년기 젠더 격차는 생애과정에서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로서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 경제상태, 부양·돌봄 교환 실태 등에 있어서 젠더 격차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노년기 성별 불평등의 문제는 제2장에서 국외의 논의에서 살펴본 이중 위험 가설(Double Jeopardy Hypothesis)에 의한다면 고령과 젠더라는 이중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젠더관점에서 고령 정책에 있어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에 대응하여 성별 특성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생애과정에서 누적되어오는 격차의 해소를 위한 과제가

첨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역별 젠더 아젠다와 대응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조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영역으로 응답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영역을 추가하여 제언하였다.

제2절 제언

1. 노후 소득보장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는 연금 수급 비율과 연금 수령액에서 젠더 격차를 가져온다. 노후 소득보장 영역은 생애 기간동안 누적된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의 결과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제가 제언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서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 수준의 보장, 노후 소득보장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 수준의 보장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 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별 소득보장 제도로 개편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출산·양육·돌봄 크레딧 제도 보완을 통하여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의 낮은 연금 급여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

나. 노후 소득보장 방식의 다양화

젠더에 따른 다양한 삶의 경로에 따른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 소득보장 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매년 소득보장제도의 젠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후빈곤에 대한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장기지속과제)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고령자의 건강 영역에 있어서 역시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후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노년은 젠더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에서 젠더 관점에서의 고려는 거의 되어 있지 못했다. 이 영역은 인구학적 요인이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책적 고려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 반영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단계별, 노년기 생애별(초, 중, 후기 고령)로 성별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비율이 높은 후기 고령 인구에 있어서의 성별 건강의료 지원 욕구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성별 특성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은 전문가조사에서 일반적으로도 젠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으로 응답되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노년기 건강상태가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배우자/가족 관계에 있어 남성보다 돌봄의 수혜율은 낮고 돌봄의 제공률은 높게 나타난다.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에서의 젠더 이슈는, 배우자/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돌봄 수혜에 있어 젠더격차의 경우 기대수명 차이, 혼인에 있어서의 연령 차 등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누적된 가족 내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젠더 격차에 대한 고려는 고령자 돌봄 정책에서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고령자 요양 및 돌봄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성별 특성까지 고려되는 것이 부족했다. 돌봄 노동자에 관련된 인권과 젠더 이슈는 그간 많은 논의와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화된 가족 내 고령자 돌

봄 문제 개선, 역시 젠더화된 돌봄 노동자 처우 및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자 돌봄 지원 관련 제도 역시 성인지 관점에서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가.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사회적 관계망, 돌봄자원의 가용, 접근에 있어 젠더 격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요양돌봄 지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후기 여성 고령자, 고령 1인 가구 등 인구 특성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돌봄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 젠더화된 가족 내 고령자 돌봄 문제 개선

젠더화된 가족 내 고령자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일·생활·돌봄의 균형 및 성평등한 돌봄권의 보장을 위한 인식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돌봄에 있어 가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양 및 돌봄지원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동돌봄 뿐 아니라, 고령자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역시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돌봄 노동자 처우 및 인권 개선

젠더화된 저임금·저숙련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 개선 역시 주요 과

제이다. 전문가들은 돌봄 노동자의 성별 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에 있어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인 정책으로서 특히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젠더 관점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탈시설화가 젠더화된 가족 돌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 다양한 공공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돌봄 제공서비스에 있어 젠더 이슈 발굴 자체도 주요한 과제이다. 예컨대 돌봄자원이 없는 후기 여성 고령자/ 노-노 케어와 여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역 사회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과제 등 젠더 관점에서 이슈를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자 돌봄 지원 관련 제도 보완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자 돌봄 지원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후기 고령인구의 능동적인 자기돌봄 기획과 장래 지속적 돌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존엄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후견제도 등을 포함한 후견제도 보완 및 해외의 지속적 대리 제도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대리제도, 유언 제도 등의 보완과 개선 및 이용 장벽의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서도 젠더 관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리 현상은 경제활동 전반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가.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화와 성불평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여성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 분리 극복 및 여성 고령자의 적극적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성별을 고려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있어도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은 특히 사회참여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고령 여성들에게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시민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있어 사회변화와 세대통합을 고려하면 서로 아울러 그 안에서 성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있어 젠더 관점 반영

노년기 삶의 취약성에 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 제공자인 고령자의 여건을 고려한 사

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시설평가 및 운영과정에 양성평등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언해볼 수 있다.

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고령자의 시민성 회복

경력단절, 가족 돌봄으로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여성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 사회변화와 세대, 성별 특성을 함께 고려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고령자 지원 논의에 있어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위한 고려는 자칫 남성 베이비부머 은퇴자로 세대 특성이 대표될 우려가 있다. 베이비부머라는 세대별 특성만이 아닌 그 안에서 성별 특성이 함께 고려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속한 기술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재사회화 교육 및 경력에 따른 고령자 젠더 격차 해소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6. 고령자 안전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고령자 안전 영역에서의 주요한 젠더 이슈 및 아젠다는 노인학대 문제이다. 아울러 노인혐오와 여성혐오가 함께 발생하는 문제, 젠더 관점에서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 구축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가. 젠더 관점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선

젠더 관점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 학대 유형 및 발생에 대한 젠더 분석 및 예방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 내 노인 학대, 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노인 학대 관련 상담 및 교육 강화 등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 노인 혐오 문제의 개선

최근 노인혐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관련하여 노인 혐오와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인식 개선 등 정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 구축

후기 고령자, 가족과 단절된 1인 고령 가구 증가에 대응한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연계 공공 후견제도 등 안전망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 져야 한다.

7.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가족 변화와 법률혼으로 형성되었던 가족을 넘어선 관계의

다양화이다. 고령사회에서 가족변화, 파트너관계의 변화의 현상은 많은 변화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정책으로서의 관계망 지원,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지역사회의 연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정비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정비 과제로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관계 및 파트너십 인정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사실혼 등 다양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재산, 상속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배우자 상속제도 정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나.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정책으로서의 관계망 지원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돌봄 공동체 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의 제도적·정책적 장애 제거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1인 가구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상담, 교육, 사회참여활동 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지역사회의 연계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가족을 넘어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연결망과 연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다양한 돌봄 관계망 활성화

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8. 고령자 주거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주거지원 영역은 대상별 세대별 접근이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어떠한 접근으로 가든 고령자 주거 지원 이슈에 있어서 가족 다양성, 가구 형태 변화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역시 주요한 과제로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

가. 가족 다양성, 가구 형태 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주거 지원

가족 다양성, 가구 형태 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독 세대, 노인 부부세대, 다양한 파트너 관계 및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주거 수요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나.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상속 재산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 비혼 동거 배우자 등 다양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주거권 보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2-5-1〉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1. 노후 소득보장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 수준의 보장 - 개인별 소득보장 제도로 개편 - 출산·양육·돌봄 크레딧 제도 보완 ☐ 노후 소득보장 방식의 다양화 -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 소득보장제도의 젠더분석 : 매년 젠더 추이 분석 - 노후 빈곤에 대한 성별 특성 분석 및 정책 반영 ☐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장기·지속과제)
2.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 반영 - 단계별/노년기 생애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의료 지원 정책 : 여성 비율이 높은 후기 고령 인구에 있어서의 성별 건강의료 지원 욕구 및 특성 파악 -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성별 특성 반영 -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분리통계 생산
3.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 사회적 관계망, 돌봄자원의 가용, 접근에 있어 젠더 격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요양·돌봄 지원 정책 보완 - 후기 여성 고령자, 고령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특성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요양·돌봄 지원 정책 강화 ☐ 젠더화된 가족 내 고령자 돌봄 문제 개선 - 일·생활·돌봄의 균형 및 성평등한 돌봄권의 보장을 위한 인식 및 제도 보완 - 돌봄에 있어 가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양 및 돌봄지원 제도 보완 : 고령자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성평등한 가족 문화 제고 ☐ 돌봄 노동자 처우 및 인권 개선 - 젠더화된 저임금·저숙련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 개선 - 돌봄 노동자의 성별 수급 문제 개선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에 있어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 - 젠더 관점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구축 - 탈시설화가 젠더화된 가족 돌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 다양한 공공 인프라 조성 - 지역사회 돌봄 제공서비스에 있어 젠더 이슈 발굴 및 정책 반영 : 예) 돌봄자원이 없는 후기 여성 고령자/ 노-노 케어와 여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역 사회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과제

- ☐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자 돌봄 지원 관련 제도 보완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및 개선 과제 도출과 제도 개선
 - 증가하는 후기 고령인구의 능동적인 자기돌봄 기확장래 지속적 돌봄준엄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 후견제도 보완공공후견제도/지속적 대라사후대리제도 등 검토/유언 제도 등의 보완개선 및 이용 장벽의 완화
- 4.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 젠더 관점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화와 성불평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여성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 논리 극복 및 여성 고령자의 적극적 참여 제도
 - 지역사회 안에서 성별을 고려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 5.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있어 성인지 관점 반영
 - 성별 고정 관념 및 역할 분리를 해소한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마련
 - 돌봄 제공자인 고령자의 여건을 고려한 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
 -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시설평가 및 운영과정에 양성평등지표 추가
 - ☐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고령자의 시민성 회복
 - 경력단절, 가족 돌봄으로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여성 고령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 사회변화와 세대, 성별 특성을 함께 고려한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 베이비부머라는 세대별 특성만이 아닌 성별 특성이 함께 고려된 지원 정책: 남성 베이비부머 은퇴자 중심의 정책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
 - 급속한 기술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재사회화 교육 및 경력 에 따른 고령자 젠더 격차 해소
- 6. 고령자 안전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 젠더 관점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선
 - 노인 학대 유형 및 발생에 대한 젠더 분석 및 예방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정책 수립
 - 가족 내 노인 학대, 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노인 학대 관련 상담 및 교육 강화
 - ☐ 노인 혐오 문제의 개선
 - ☐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 구축
 - 후기 고령자, 가족과 단절된 1인 고령 가구 증가에 대응한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연계 공공 후견제도 등 안전망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 7.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 관계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정비
 - 고령자의 다양한 관계 및 파트너십 인정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사실혼 등 다양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재산, 상속 관련 제도 정비
- 배우자 상속제도 정비

- ☐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정책으로서의 관계망 지원
 - 다양한 돌봄 공동체 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의 제도적·정책적 장애 제거 및 지원
 - 고령 1인 가구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상담, 교육, 사회참여활동 등 강화

- ☐ 고령자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지역사회의 연계
 -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연결망과 연계전략 마련
 - 지역 사회 다양한 돌봄 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고령자 주거 지원 영역 젠더 아젠다와 과제

- ☐ 가족 다양성, 가구 형태 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주거 지원
 - 단독 세대, 노인 부부세대, 다양한 파트너 관계 및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주거 수요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주거 지원
- ☐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 비혼 동거 배우자 주거권 보호 문제 검토 및 제도 정비

제 3 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내용

제3장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제4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을 망라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를 표방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과제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그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조직의 존재 목적과 근거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의 논의 조건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와 필요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논의 조건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인권·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내용

제1절 왜 사회적 가치인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제2절 사회적 가치란?

제3절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2

이론적 논의: <<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내용

제1절 왜 사회적 가치인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1. 당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사회적 가치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그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별개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며, 저출생-고령화로 사회·경제적 활동의 토대와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지향과 윤리의식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사회문화적 요소의 변화, 지배적인 정치이념과 지향의 변화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로 대표되는 내부적 요인과 사회와 국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의 변화로 대표되는 외부적 요인의 상호 작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재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필요하는데, 그것이 지금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2.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당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개념이라기보다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함의가 강하게 내포된 개념”(박명규, 2018)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구현하고자 한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가치적 요소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멀리는 박정희 정권 가깝게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지향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때는 이 경제적 가치가 또 유일한 사회적 가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주의, 인권, 참여, 환경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국정 과제 또는 정책 패러다임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장용석 등(2018; p.38)은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을 통해 어느 누구도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정 방향이 재편되”었으며 “미래 세대들까지 고려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도 강조”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 4개 정부의 국정과제가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요소는 무엇이었으며, 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가. 노무현 정부: 참여, 분권 그리고 혁신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라고 호명했는데, 이 때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

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국정홍보처, 2008; p.19).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방향으로 참여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동반성장 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국정목표는 4대 국정원리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5년간 추구한 가치로 해석된다.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이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 특권 배제와 함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정목표 첫 순위로 꼽혔다.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 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 간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이 과제로서 제시된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는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이자 국정원리로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4가지를 제시했다.

- ‘원칙과 신뢰’는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제1의 원리이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적 역사의 반복으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불법과 타락이 성행하며 사회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
- ‘공정과 투명’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국정원리이다. 신뢰를 통해 아무리 좋은 원칙을 만들어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이 증폭된다는 문제의식이다.
-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서로가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이다.
- 참여정부는 일극 중심이 아닌 다중심 사회를 지향하면서, 자원을 균형 있게 재분배하고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나. 이명박 정부: 저탄소녹색성장

2007년 대선을 통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을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는 ‘시대정신’이 ‘발전, 통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장기적 국가 비전 즉 최상이 목표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제시하였다(권오성 외, 2012). 그리고 그 하위 비전으로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제시했다. 또한 국정 운영방향인 5대 국정지표 또는 국정목표로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규범으로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실용주의가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노동 배제를 통한 비용 절감에 기초한 정책 기조 즉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읽히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삭제).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다. 비전을 제시한 다음 해인 2009년에는 “‘녹색성장 5년 계획’을 통해 5년간 107조 원을 투입하고, 그중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에 56조 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표”(장용석외, 2018: p.37)하였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킨 채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한 과거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이 과연 ‘지속가능 발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은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특히 수출산업의 거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부상 가능성에 있을 뿐 사회에너지체제의 구조적 전환에는 무관심하다는 점”(권오성 외, 2012: p.60) 평가까지 그러하다.

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국민행복, 삶의 질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는 2013년 3월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

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인수위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임.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1대 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서 핵심은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제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우선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5대 국정목표는 4대 국정기조로 21대 전략은 14대 전략으로 조정되었다. 조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3.0 등 주요과제 이행계획 보완”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에 따라 제시된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가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로 조정되면서, 그를 위한 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가 설정된 점이다. 그리고 새롭게 문화융성이 추진전략에서 국정기조로 승격되었다.

라.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혁신적 포용국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비전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

복'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을 하는 정부'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에 따른 7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점, 정부의 성격을 '사회적 가치 중심'에서 찾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총화한 대안 모델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림 3-2-1]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연구.

2019년 2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서 “2019년에는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했다.

성경룡(2019)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발전국가 모델과 단절하고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으며,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대안적 국가 모델로 제시되었다고 본다. 과거 발전국

가 모델이 “국가 주도, 대기업 주도, 강자와 상위층 위주의 분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조장, 취약 계층·집단·지역의 배제와 차별, 모방과 추격 위주의 성장, 노동을 비용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저진로 체제 등의 특징”을 보였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국가-기업(시장)-시민사회 사이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 대기업의 독과점과 중소기업 지배체제를 개혁하여 공정 경제와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포용적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고용 기회와 소득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국민들의 삶의 기회와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동시에 최대화하기 위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는 국민들의 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이에 기초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포용과 함께 역동적 혁신이 구현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발전시킨다.
- 이러한 거시적 구조 속에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사람에 내재화되는 혁신 역량과 포용 역량이 창의성·혁신성·생산성의 핵심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노사 대화 노사 신뢰, 노동의 경영 참여, 노사간 공동 학습과 공동 혁신을 실천하여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노사 공동 번영을 이룸으로써 ‘이윤 중심 기업’에서 ‘사람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는 ‘고진로(high road)’ 체제로의 변화를 빠르게 추진한다.
- 포용적 경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취약 계층·집단·지역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지향한다.

- 이런 노력을 통해 모방 추격형 경제를 창의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여러 사회집단이 대화와 협력 속에서 풍부한 사회자본을 축적하여 사회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1960년대부터 추진된 제1의 ‘경제적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속적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적, 즉 제2의 대분기를 위해 노력한다.

3. 대안적 담론을 둘러싼 논의

가. 국제연합 주도의 대안적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

먼저 사회적 가치와 같은 지향을 갖는 대안적 담론으로 ‘지속가능발전’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표현은 1980년 「세계환경보호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자원 보호」라는 문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1987년 노르웨이 총리였던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이 이끈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이후 더욱 진화하면서, 세대간의 요구를 강조하는 대신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총체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제프리 삭스, 2015).

2015년 유엔 회원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사회발전’, ‘경제성

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인은숙, 2016). 빈곤종식,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교육 보장과 평생교육,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식수와 위생시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건실한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산업화,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기후 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육지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제도,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 그 목표들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국 정부 및 지방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자연환경적 조건 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목표들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들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규범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기준과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가 강제될 수는 없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지향과 유사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기구 구성원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달성 목표, 규범 그리고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달성시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반해서 사회적 가치는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며, 그에 따라 실행 내용과 범위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특정 개수의 목표로 제시하기 어렵고, 목표 시행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한하기 어렵다.

나. 대안적 담론으로서 ‘사회의 질’

좋은 사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항상 주요한 질문이었다(구혜란, 2015).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로운 이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국내에서도 ‘국민 삶의 질 지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 연구가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원자화된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식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의식”(Beck and van der Maesen et al., 2001; 구혜란, 2015에서 재인용)으로부터 ‘사회의 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출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면서 시장과 효율성의 가치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와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지식인 천 여명이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에 모여 사회의 질 선언(Declaration for Social Quality)을 하게 된다(이재열, 2015). 이후 1999년 5월 공식 발효된다(유럽연합진행위원회, 2017). 여기서 사회의 질은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나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Beck et al., 1997; 정병은, 2015에서 재인용)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또는 조건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있다(Gasper et al., 2008; 구혜란, 2015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안정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인 물질·환경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주거, 질병, 재해, 실업과 관련된 안전을 포함한다(남은영, 2015).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체성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지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에 해당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이타심, 시민의식, 관용성,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정해식 외, 2015).

사회적 포용성은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자원, 혜택 등이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평등하게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한지와 연관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적 권리, 노동시장 참여, 사회서비스 혜택, 사회 관계망 및 사회적 참여 수준이 해당한다(정병은, 2015).

사회적 역능성은 사회적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결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사회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개념이다(김주현, 2015). 지식기반과 정보 접근성,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 체계, 공적인 공간, 사적 관계, 사회활동 지원 수준 등을 포함한다.

‘사회의 질’ 담론과 연구가 ‘삶의 질’ 연구와 달리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시키지 않는 동시에,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라는 당대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점은 사회적 가치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의 질 담론은 사회와 개인의 조화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분명하게 지향한다는 점에서 강한 역동성을 갖는다.

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의 확대로 나타난 문제점 즉 고용 불안, 양극화 심화, 환경 파괴, 사회적 약자 배제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출발했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도 사용되고 있다. 유엔은 “협력 및 연대, 윤리 및 민주적 자기 관리의 원칙 및 관행을 따르는 대안적, 인본주의적 경제 실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담론 차원이 아니라 실천 차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현실에서 그러한 원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포괄할 수밖에”(이가람, 2019) 없는데,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사회의 확대로 인해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해서 대안적 활동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상당한 정도로 중복된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로 한정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생산-유통-소비라는 경제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 범위와 활동은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라. 사회혁신

제프 멀건(Geoff Mulgan, 2011)은 사회혁신을 “충족되지 못한 절박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삶의 개선을 추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넓게는 “사회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자 엄격하게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이다. 비슷하게 유럽연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창출해내는 것”(박명규, 2018)으로 사회혁신을 정의한다.

EU의 TEPSIE(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니즈(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목표와 수단이 사회적”(강민정, 2017)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사회혁신의 요소들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Julie Caulier-Grice et al., 2012).

- 혁신성(Novelty)
- 아이디어의 실행과 적용(From ideas to implementation)
- 사회적 욕구 충족(Meets a social need)
- 효과성(Effectiveness)
- 시민사회 행동 역량 강화(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

희망제작소(2013)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사례를 통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회혁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이전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사회적 문제를 풀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웰빙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다. 사회혁신은 창조적이고 새롭고, 상호작용하면서 변혁을 추구하고, 유연하며 참여의 방식으로 발전한다. 사회혁신은 측정 가능한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해내고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이동을 한다. 또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충족하지 못했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한다. 결과는 조직내부로 번져나가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시스템/권력 흐름의 기본적 규칙/믿음을 변화시킨다.

현재의 틀과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목표와 수단이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역시 사회적 가치의 기본 취지와 중첩될 수 있다. 다만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과 수요 충족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마. 기업과 CSR, CSV

이윤 추구 활동 외에 기업들이 공동체적 가치 또는 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는 논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이 있다. 기업들에게 윤리적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CSR과 CSV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그에 미치는가는 별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책임, 윤리경영을 위한 법적 책

임 및 윤리적 책임, 그리고 기업 예산 내 사회공헌을 위한 자선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는 공익활동, 기부협찬활동,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지역 문화 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지칭한다(김지현 외,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이 바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와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ISO26000)’이다.

UN은 2000년부터 글로벌 컴팩트를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유엔 글로벌컴팩트).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010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존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협약, 글로벌 컴팩트 등을 종합한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만들었다. ISO 26000은 조직의 규모, 업종,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에게 사회적 책임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역시 대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주요하게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ISO26000이 다루는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이다.

한편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사업과 사회를 따로 떼어놓고 CSR 활동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기업과 공동체의)공유 가치에 근거하여 사업 결정과 사회적 정책 결정을 하여 사회와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활동을 말한다(김지현 외, 2018).

CSR과 CSV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조동성 외, 2014; 이재열, 2018에서 재인용).

(표 3-2-1) CSR과 CSV

구분	CSR	CSV
가치	선행	사회경제적 가치
활동	자선활동	기업과 공동체를 위한 가치 창출
인식	이윤 극대화와 무관	기업 전체 예산에 반영
담당부서	병렬 별도 조직	모든 부서에 녹아들음
진정성	물의를 일으킨 회사는 냉소	고유 사업과 일체화
지속성	손실 발생 시 중지	이익 손실과 무관하게 진행
소통방향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기여	기업과 사회가 쌍방향으로 선택
가치평가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부재	사회가치 사전평가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활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기존 ‘이윤 추구’와 ‘부의 창출’이라는 본래적 목적 외에도,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CSR과 CSV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 현실적이지자 표준화된 활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CSR은 기업의 특정 부서의 활동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으며,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CSV 역시 기업과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지향과 별개로, 사회와 기업의 상호보완이라는 기능적 관점을 넘어서기 어렵다.

바. 공공성과 공공 서비스

공공성의 핵심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가나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개인과 시민과 구별되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가치 지향으로 한정하기 쉽다. 하지만,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가치이다. 다수의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이나 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성의 논리다(하승우, 2014). 주요한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구별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본다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회적 가치는 “이익을 초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안전, 봉사, 연대, 협력, 균형, 생태, 윤리, 인권, 공정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나 배제된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김정렬, 2018). 자원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럽게 공공서비스와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공서비스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좀더 특정하게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 (공동체에 미치는) 구매활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박명규, 2018).

이렇게 본다면, 이제 공공서비스의 대상은 사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고객(소비자)’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 확장된다.

공공성,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서 이야기해보자.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의 핵심 구성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그 가치를 구현하는 고유의 활동 방식이 된다.

제2절 사회적 가치란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가람(2019; 104)은 ‘사회적인 것’을 관계, 가치, 시민성의 세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레이버(Graeber, 2009; 이가람, 2019에서 재인용)는 사회(학)적인 면에서 가치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옹고,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들”로 정의된다.

개인의 차원에서든 집단이나 사회의 차원에서든 현재 및 미래 상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규정하는 것이 가치·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에 지배적인 또는 요구되는 가치는 그 사회(개인)의 역사와 문화, 현실적 조건이 반영된다.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의 내용에 따라, 그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역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사

회적 가치의 내용 역시 변화 가능하다. “가치들은 단순히 다양한 가치들을 묶어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엮여 지게 된다. ‘체계적’이라 함은 더 추상적인 가치와 더 경험적인 가치,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 인접 가치와 독립 가치들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엮여져 있다”(권인석, 2018).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7)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 박광온 외, 2017)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의 성격을 갖는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를 포함하게 된다.

비슷하게 김현희 등(2018; p.40)은 일정한 사회 내지 집단에서 중요하거나 타당하다고 공유되고 있거나 지향하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본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는 송용한(2014; 박임수 외, 2019에서 재인용)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개인·사회 공동체·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의사 결정의 기준”(양동수 외, 2019)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3절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1. 사회적 가치의 내용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포괄하는 내용을 1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각각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다.

-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구성원 인권 보호
 -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평등 및 차별 금지: 성별, 종교, 신분, 장애, 학력, 성적 지향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 국내외 노동현장에서 아동 노동 금지
-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노동자의 자기 보호권 보장
 - 적정 노동시간 보장
 -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조건 시 노동 금지
 -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 금지 및 보상
-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건강권 보장
 - 적정 수준 의료 지원 체계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
- 노동 이사제
- 강제 노동 금지
- 일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 금지
-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6)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대기업-중소기업 간 부당취득 및 뇌물 금지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화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 고용 보장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지역사회 투자 확대
-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조직 자원 지원
- 주민자치 확대
- 기업시민 역할 강화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인적자원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자원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창출 성과의 지역내 재투자 및 분배 강화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 재생자원 사용
- 아동노동 및 전범 기업 제품 사용 금지
-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 옴부즈맨 제도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화석연료 사용 감축
- 1회용품 배출 최소화
- 자원 소비 최소화
- 환경친화기술 개발
- 녹지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권 보장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조직 의사결정과정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시민숙의제 확대
- 시민민주교육 지원

13)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설명)⁷⁾

- 조직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지역사회 이익 실현

2. 사회적 가치의 실현 주체와 영역

박명규(2018)는 「기본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영역을 공공구매와 공공서비스,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 사회적경제, 사회혁신과 시민 역능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는 이 분류를 따르되, 마지막 영역을 사회참여와 사회혁신으로 수정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정부와 공공기관 : 공공조달·구매와 공공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창출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란 곧,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서비스와

7) 「기본 법안」에서 사회적 가치의 마지막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는 사실상 위 12가지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동시에, 그 12가지 내용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일부 내용을 포함한다.

공공조달·구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공공조달이라 하는데,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17조로 GDP의 약 8%를 차지한다.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그 규모가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강희우·김빛마로, 2017). 따라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행위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 및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해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도화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때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규범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들을 열거해서 명확히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편익’이란 표현을 통해 유동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본법안」과 구별된다.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별, 지역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동체의 편익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배성기, 2018)

일례로, 영국NHS(국가보건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는 폭넓은 사회적 편익으로 고품질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보건서비스 수혜자들의 건강과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라 서비스 기획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지역자산의 인식과 구축’ ‘협업에 의한 시스템 통합 접근방법’ ‘공동체 재생 및 통합 촉진’이 그에 해당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비

정규직 생활임금제, 학교급식 지원조례, 사회적기업 구매 지원제도, 시내 버스 준공영제도, 노동이사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법제화나 재정지원이 결부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김정렬, 201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태계 또는 제도적 조건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책임 외에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그를 위해서는 준법 경영, 윤리 경영, 투명 경영, 책임 경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표준화한 것이 앞서 소개한 ‘글로벌 컴팩트’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등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의 사기업에게 요청되던 가치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업 구성원 즉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간 불평등을 비롯한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배제하며, 적정 노동시간과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업간 부당 취득 및 뇌물을 금지하며,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내용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활동도 기업 고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로부터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 자체가 공공성 또는 사회적 책임

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 역시 이익과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 기준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공부문 역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명시적으로 요청받게 되었으며, 글로벌 컴팩트와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의 내용은 공공부문 즉 공기업에게도 민간부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내용은 민간부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GSR(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민간부문 기업과 비교해서 특히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 가치는 합헌성, 준법성,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 인권성, 지속성 등이다(김태영 외, 2019).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 또는 공공-시민 협치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 영역·활동과 사회적 가치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기에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차적 주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표적인 조직 형태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기업: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외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 협동조합: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이다. 사회적기업과 달리 이윤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 마을기업: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마을 경제 체계의 자립, 그리고 공공성 및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마을의 자원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자가 중심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각 조직에 따라 약간의 특징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협소한 범위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분리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며,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이룰 수 있는 주요 주체들이다.

라. 시민사회와 시민, 개인: 사회참여와 사회혁신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공동체의 공동선·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이익 달성을 지향하며, 공동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사회개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하게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선을 달성하고 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뜻하는 시민연계(civic engagement)가 있다. 그리고 이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시민’이 상정되는데, 이때 시민이란 시민성 또는 시민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된 속성 또는 의무적 측면을 말하는데, 자발성, 자율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 공적 활동에 대한 개입 등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시민 또는 집단화된 차원의 시민(시민사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회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2〉 사회 참여의 범주화

구분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부 활동 지역단체(동호회 등) 참여 활동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지역사회 공공 활동 주민자치 활동
정치참여 활동	정치·사회의제 논의 참여 선거 참여 투표 참여	정당참여 활동 사회단체참여 활동 정당 조직화 활동 사회단체 조직화 활동

시민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막론해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소비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조직의 활성화에 역할을 하는 한편, 국내외 비윤리적 기업 활동을 통한 제품 사용에 반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사회참여 활동과 구별되어 사회혁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미세먼지, 환경위기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아이디어와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상 중앙정부 중심 또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현장 중심과 주민(시민) 주도성이 강조할 수밖에 없다.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혁신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제 3 장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제1절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제2절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제3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4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3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

제1절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라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주체들이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침 역할을 할 정책,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 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의 노력, 다양한 자원을 결합해서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 자체가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정책·행정의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장 유력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은 그 어떤 영역이나 주체보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실현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영역과 주체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

제2절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1. 협의의 공공기관 개념과 유형

공공기관을 엄밀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김현희 등(2018; p.108~111)에 따르면 협의의 공공기관의 규범적 개념 징표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주체), ② 사회의 공익 실현을 그 수행목적으로 하며(목적), ③ 국민과 주민에게 생존배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역무의 제공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면서도(임무), ④ 수익성 내지 영리추구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3-3-1〉 공공기관의 유형과 요건

유형 구분		공통 요건	지정 요건(원칙)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geq$ 50% 직원정원 $\geq$ 50인	자체수입비율 $\geq$ 85% (&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체수입비율 $<$ 50% 직원정원 $<$ 50인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금 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전체 공기업은 339개가 된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6개가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20개가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가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도로교통공단 등 77개가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문화재단 등 210개가 포함된다.

이에 따른 인원 분포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2019)

2. 광의의 공공기관 개념과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의 규정

공공기관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법안」은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실제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치 및 자원의 분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조달 · 구매를 통해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활성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수 있고, 민간 부문과의 협치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명문화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평가 체계의 수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한 경영평가지표를 도입했다.

제3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유의 설립목적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조직 운영 및 공공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하청 업체 등 조직 외부 영역까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고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아지면서 주요 공공기관들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4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3가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따라 13가지로 분류된다.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로서 인권의 보호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실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실천 가능한 내용은 각 공공기관 본연의 특성과 운영 방식, 영역 등을 감안할 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설립목적(Mission) 달성’, ‘운영 및 관리’, ‘가치사슬 확산’이다(양동수와 2019).

가. 설립목적 달성

공공기관은 본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성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기존 설립 목적을 현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설립 목적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부합할수록 존립 기반은 강화된다. 따라서 각 기관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운영 및 관리

공공기관이건 민간 기관이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이 발생하는데, 조직은 모든 운영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절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기업에서 사회적책임 경영이라고 부르는 반부패경영, 윤리경영, 공정 운영 관행 준수, 환경 경영 등 가치들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기본 경영 방침으로 삼고 있다. 민간 기관 역시 사회적 약자 우대, 윤리적 소비 등을 조직 운영 원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

다. 가치사슬 확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 내부의 변화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 운영 및 공공 서비스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조직들, 사업 및 고용과 관계되는 지역 공동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영역에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의 확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외부 네트워크 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조직 운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접한 파트너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며, 이를 ‘가치사슬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제 4 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제1절 공공·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제2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모색 방향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 인구정책 방향

제1절 공공 ·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1. 공공기관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는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목표수립과 실행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실천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의식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조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업수행의 모든 단계와 연관된다. 사업의 계획부터 수행, 이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 수행단계, 결과 평가단계에 걸쳐 각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제 목표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신규사업 : 공공기관이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② 지속사업 : 공공기관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사업 또는 지속적으로 수

행하는 사업

- ③ 일상사업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활동
(예: 인사, 노무, 사무실 비품구입, 건물 관리 및 청소 등)

사업유형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다음 각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가 해당 유형의 사업계획과 실행, 평가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2. 국책 연구기관과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은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국책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은행 등을 포함한다. 당연히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존재 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고유의 설립목적에 기반하여 공공복리 증진, 국민생

활의 편익증진, 국민경제발전 이바지 등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내용과 영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과 사회정책이 ‘사회·경제·문화·환경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활동’으로 정의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3. 국책연구기관과 사회적 가치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 구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배점이 확대되었다. 그간 경

영평가는 “방만 경영 정상화 등 공공기관 체질개선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세분화하였고,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하였다. 공기업은 경영관리,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2017).

국책연구기관 그 중에서도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의해 이뤄진다. 국책연구기관 평가지표는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와 목적 그리고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분야와 경영분야 2개로 나누어서 구성되는데, 각각 800점과 200점이 할당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4-1〉 국책연구기관 연구 분야 평가지표(배점 8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배점	
			요소 배점	항목 소계
연구 기획	연구 기획 및 질 관리	☐ 연구 기획 및 전략의 우수성 ○ 연구 기획(과정)의 우수성(10) ○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국민 등)의 연구 기획 참여를 위한 노력과 실적(10)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10) ○ 협동연구과제 발굴의 적극성 및 선정의 우수성(10) ○ 정부정책과제(국정과제) 사업계획 반영 정도(10)	50	100
		☐ 연구 질 관리 수행체계 및 운영 정도 ○ 기본/일반/수시연구과제 수행체계의 합리성(15) ○ 협동연구과제 수행체계의 합리성(15) ○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20)	5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배점	
			요소 배점	항목 소계
연구보고서 우수성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 기초·정책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과제 기획의 우수성(30%) ○ 연구방법 및 결과의 우수성(40%) ○ 연구성과의 우수성(30%)	200 ~ 260	330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30)	30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과제 기획의 우수성(20%) ○ 연구방법 및 결과의 우수성(50%) ○ 연구성과의 우수성(30%)	40 ~ 100	
국가정책 기여도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 정책대안(아이디어) 제시 정도(20%)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과 실적(40%)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및 정책의 (예상)효과(40%)	150 ~25 0	370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연구기관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타당성(50%) ○ 정책 집행사업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정도(50%)	0 ~ 100	
	연구기관의 정책과제 기여도	☐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의 실적과 성과(20)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대표사례(1개)의 우수성과(10)	30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및 정책 기여 관리실적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선제적 대응 정도(8)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 요청에의 연구기관 대응 정도(7) ○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5)	20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	☐ 연구 성과확산 노력과 실적 ○ 연구성과이 언론 홍보 등 대내외 확산 실적 및 성과(20) ○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및 개방 노력 정도(6)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4) ○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협업 정도(20)	50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	20	

자료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표 3-4-2〉 국책연구기관 경영 분야 평가지표(배점 2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내용)	배점		비고
			요소 배점	항목 소계	
리더십 및 책임 경영	리더십	☐ 리더십 및 책임경영 이행 정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18) ○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4) ○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4) ○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반영(4)	30	75	기관장 재임 2~3년자 평가 (1년 미만 제외)
		☐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사업 선정 및 수행체계의 적절성(6) ○ 기관장의 사업수행 노력과 성과(14)	20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연구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노력과 성과(3) ○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2) ○ 고충처리 및 노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과 성과(2)	7		상시평가 (평가단 실시평가)
		☐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 강화의 적정성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2)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4)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2)	8		
		☐ 복무관리의 적정성 ○ 근무관리의 적정성(7) ○ 휴가·유연근무제·안식년제 운영의 적정성 및 사용정도(3)	10		
예산 및 경영 관리	예산 운용 및 결산	☐ 총인건비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12)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3)	15	125	매년평가 (연구회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평점부여, 실시평가 미실시)
		☐ 예산집행의 적정성 ○ 사업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5		
	사회적 가치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10)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과 실적(8)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및 실적(7) ○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2)	27		상시평가 (평가단 실시평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내용)	배점		비고
			요소 배점	항목 소계	
		☐ 윤리경영 ○윤리경영 체계의 적절한 구축 노력(5) ○부패방지 및 청렴 유지를 위한 노력 및 실적(6) ○채용비리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 및 실적(6)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3)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3)	23		
		☐ 사회적 배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7)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5)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1)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1)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1)	20		
	감사(평가) 결과 개선 및 보안 관리 정도	☐ 감사(평가)결과 개선정도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8)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5)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실적 및 환류(5)	18		
		☐ 연구기관 보안관리 및 경영정보 공시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15)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2)	1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평가항목 ‘예산 및 경영관리’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는 2018년 ‘사회적 포용’에서 2019년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를 거쳐 2020년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 분야 평가지표와 요소(내용)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 정도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개선 방향

권청재(2019)는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문헌 비교 검토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각 평가기관마다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요소들이 상이하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의 배점 비중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낮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배점이 100점 기준으로 22~24점을 차지하는 반면,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7점에 그치고 있다.⁸⁾ 셋째,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들 간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권청재의 제안 대부분이 유효한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분야 평가와 관련해서 명시화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 평가 분야 중 연구분야 평가지표와 평가요소(내용)에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권창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사업 평가에 일 자리 창출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모색 방향

1. 국내외 인구정책의 특징과 평가

우해봉(2020)은 국제적인 인구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8) 강창재의 기준에 따르면 점수가 조금 커져서 12.5점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예산 운영이나 감사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에 그친다.

정리하고 있다. 첫째,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회의 이후, 인구정책의 초점이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 통제’에서 ‘인권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인구정책 이슈가 다양화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서는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인구증가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셋째, 인구정책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인구정책 이슈 다양화와 맞물려, 인구정책과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넷째,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다양화되면서, 국가 일변도의 하향식 인구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갖기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정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전광희(2018)는 인구정책을 “인구과정, 곧 인구변동의 요인 또는 그것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근접요인을 조작변수로 하는 정부의 의도적 개입”으로 보고, 인구변동의 결과에 대한 개입을 배제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목적은 “인구과정의 문제점을 이슈화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의도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은 “인구가 국가와 사회에 유리하도록 변화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구정책으로 정의한다. 즉 인구정책은 인구총량의 증감이나 인구자질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노력을 총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총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인구과정의 3가지 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행동계획과 실천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에서는 목표를 인구학적 구조의 변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는 점에서 전광희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은 인구의 상태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들도 광의의 개념으로 인구정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고령자 인력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인구정책으로 간주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정책 이슈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은 1960년대 이후의 인구정책이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첫째 1961년에 베이비붐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1962~95년), 둘째 장기간에 걸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생식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지향한 정책(1996~2004년), 셋째 저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하는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2005년~)이 그것이다.

결으로 구별되는 인구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된다(우해봉, 2020). 고출산과 인구과잉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한 것처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증가를 낳고 이것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철학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모색을 위한 조건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지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수립과 체계적인 실천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의식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인구정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 방향과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 인구정책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60여 년 전의 인구정책부터 최근의 인구정책까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인구정책은 발전과 성장의 가치와 연결되어 평가되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때의 발전과 성장은 예외없이 경제성장을 가리킨다.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인구 과잉이 지적되면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했고, 과도한 인구억제 정책의 결과를 경제발전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인구 자질 향상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것마저도 넘어서서 절대 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출산률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현실화와 같은 문제들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재정의하고,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참여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인구정책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활동’

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회적 가치 내용과 인구 정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구정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1장과 2장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가치의 13가지 내용 중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가안 형태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구 정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시민의 참여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 인구 정책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은 사업과 연구방향의 기획, 정책의 생산과 평가 단계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관의 장점과 자원을 활용해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시민이 요구하는 과제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즉 ‘협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협치에서 더 나아가 “시민주도로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정해 시민이 주인이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이 방향성으로 제기된다(희망제작소·춘천시, 202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관에서 “중 정책과제

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는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 또는 ‘시민주도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전문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나머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기관 고유의 업무로 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기관의 역할과 전문역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요구되는 인구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수동적인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서 ‘시민과의 협력’ 속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한 미션과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전략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양동수 외, 2019). 무엇보다도, 조직의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평가 지표 역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평가지표는 구성원 참여에 대한 규칙이자 인센티브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권 및 시민권과 인구 정책

「기본법안」이 제시한 사회적 가치 13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이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권리이다.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현대적인 논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촉발되었다. 1948년 12월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평등

(반차별)·자유·형제애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로 인권을 분류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당위적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고 있거나 누려야 할 권리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뿐 아니라 그것이 역사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발전해왔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시민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현, 2008).

그렇게 본다면, 인권의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평등 및 차별금지(성·종교·신분·장애·학력·성적 지향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본다면, 성·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해봉(2020)은 인구정책 특히 출산 부문 인구정책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의 논의를 빌어와, 개인들이 출산 여부, 원하는 자녀의 수와 터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개인들이 이러한 생식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국가 인구정책의 역할은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건을 구축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개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광희(2018) 역시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 특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구정책이 시행되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산의 권리’ 개념을 존중하고 확실한 인권확보를 염두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출산 정부정책은 정책목적상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더라

도 노동시장과 가족관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전제라는 데서 출발해야”한다는(김도균 외, 2017) 제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의 인구 분포도에 근거한 ‘출산지도’를 혁신적인 인구정책으로 평가했던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철학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논의들은 분명하게 기존의 국가 ‘통제’ 중심의 인구정책의 철학적 문제점과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인구정책에 필요한 인권의 관점을 ‘출산’ 정책과 성·젠더 불평등을 넘어서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의 권리, 다문화 가족과 가정의 권리,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방분권과 인구 정책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와 지역간 격차 문제가 결합되어서,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40% 정도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비중이 7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안」의 사회적 가치 내용에서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은 자칫하다가는 이러한 현실적 맥락을 놓치기 쉽다. 저출생의 원인을 출산, 양육, 복지 인프라의 부족에서 찾는 것이 잘못된 아니지만, 지역간 격차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정책의 결과와 효과는 기대를 벗어나기 마련이다.

인구문제를 지역의 문제와 연관해서 본다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심각하며,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민 이전부터 저출생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둘째, 지역이 인구 문제는 인구 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 인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안성조(2019)의 다음 제안은 그런 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첫째,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촘촘한 돌봄·복지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광역 단위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 지방정부들의 출산장려금 경쟁을 넘어서는 지역 간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사회 적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자치조직권 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단기적으로 인구회복을 목표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전략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 감사원. (2019).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 강희우·김빛마로. (2017). 공공 조달시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고기석 외. (2016). 저출산 대책 평가, 사업평가 16-26(383).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1-7.
- 곽현근. (2018). 공공가치의 의미와 생성. 한국 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65~1379.
- 관계부처 합동.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본]. 9.
- 구혜란. (2015).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국가기록원. 시기별 인구정책,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1980.do> 에서 2020. 02. 29.에 자료 인출.
- 국민연금연구원. (2015).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 국회예산정책처. (2019). 청년층 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산업동향&이슈 IV. 26, 71-86.
- 국회입법조사처. (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쟁점과 과제: 저출산 부문. 618-627.
- 권인석. (2018). 사회적 가치: 담론적시각과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행정포럼, 163; 6~15.
- 권청재. (2019).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91~120.
- 기획재정부. (2017).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
- 기획재정부. (2018).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4, 54-68.
- 김나현. (2019. 09. 29.). 결혼 늘어야 인구 는다, 결혼장려금 1000만원 주는 데 어디,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com/article/235>

89781 에서 2019. 09. 30. 에 자료 인출.

김도균 외. (201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김동식, 김돌순, 동제연, 정다운, 전경숙. (2018).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 노인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명용. (2014). 여성 관점에서 본 고령화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미향. (2018. 06. 28.). '저출산' 아니라 '저출생', '유모차' 아니라 '유아차' 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209.html> 에서 2019. 08. 23.에 자료 인출.

김민욱. (2014).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발표, 국방과 기술. (422), 22-23.

김병규. (2015. 10. 18.). 〈인구위기〉 ② 국가가 처녀총각 단체 미팅 주선한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6186900017?input=1195m> 에서 2019. 08. 21. 에서 자료 인출.

김승권. (2005).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적정인구, 한국인구학. 29(1), 241-242.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주. (2014. 03. 07.).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女 100 : 男 116명... '최대 男超 세대' 1990년생 백말띠,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030700202#Redyho> 에서 2019. 08. 21. 에 자료 인출.

김영미. (2014).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젠더법학, 6(1), 69-93.

김유선. (2016).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8, 1-19.

김은지, 김소영, 선보영, 성경, 양난주, 김수정, 김혜영. (2017).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호, 전승훈, 최장훈, 이선희. (201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렬. (2018). 공공성의 재인식과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 행정포럼, 163; 16~23.
- 김주현. (2015). 사회적 역능성.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 김지연. (2018. 09. 10.). 행복하러 출산기피” 발언 후폭풍…여성·청년 분노 “돈도 집도 없는데,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0002018?OutUrl=naver> 에서 2020. 02. 28.에 자료인출.
- 김태영 외. (2019). 사회적 가치 이해와 평가.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 김현희·박광동. (201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유선희. (2018a).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20.
- 김형주, 임지연, 유선희. (2018b).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6.
-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18-240.
- 남은영. (2015).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 노민선. (2019).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19(10), 1-18.
-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연구보고서.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 대한민국 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박광온 외.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 (1), 1-39.
- 박명규. (2018).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박명규·이재열 엮음. 사회적 가

치와 사회혁신. 한울.

박성정, 최인희, 김승연, 장희영, 김주현, 서제인. (2015).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III):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임수, 안이슬. (2019). 사회적 가치 분류체계 연구: 공기업(K-water)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리뷰, 10(2); 333~348.

박준호. (2019. 07. 02.). 주52시간 근무 시행 1년] 내년 2.7만곳 시행..감독 사실상 불가능, 서울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JEGF8WO>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배성기(윤키고 역음). (2018).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사회적 가치 연구소.

배성기. (2018).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553~571.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1), 1-45.

백주연. (2020. 02. 05.). 인구절벽 맞닥뜨렸는데...간판 뿐인 저출산위원회, 서울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T0HQZ1>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0).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 플랜 2015. 38.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3-20.

석재은. (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선명수. (2017. 03. 14.). [특집] 저출산의 주범 '고스펙의 여성'이라고?, 주간경향. Retrieved from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3071033151&pt=nv> 에서 2020. 02. 29.에 자료 인출.

성경룡. (2019). 포용국가 총론: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열린정책, 창

- 간호. 정책기획위원회.
- 송승환. (2018. 11. 07.). “결혼 꼭 해야 한다” 응답 절반 아래로 ...‘동거’ 인식 변화도, JTBC. Retrieved from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23790 에서 2020.03.02.에 자료 인출.
- 송효진. (2019). 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젠더리뷰. 54, 13-19.
- 안성조. (2019). 인구절벽 시대, 지역 인구 정책의 방향, 공공정책, 61~63. 한국자치학회.
-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 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35-64.
- 양동수 외. (201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운영 원리. LAB2050.
- 양문희. (2018), 육아예능 프로그램 시청과 결혼 기대감, 가족 가치관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130-139.
- 염한결, 이원희, 박현영, 이예은, 구지원, 김정구, 정유라. (2019). 2020 트렌드 노트- 혼자만의 시공간, 북스톤. 78.
- 우해봉, 장인수.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8).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 41(2), 31-59.
- 우해봉. (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79, 23~36.
- 유계숙. (2013).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41-151.
- 유해미 외. (2019).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65-71.
- 유홍준, 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윤다정. (2017. 08. 30.). [저출산 시대] 1990년생 백말띠의 비극...“아이 낳을 여성이 없다”, 뉴스1.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3087530> 에서 2019. 08. 21. 에 자료 인출.

- 윤석명, 고경표, 김성근, 강미나, 이용하, 이정우. (2017).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호우. (2019. 09. 07.). '우린 달라요' 개인주의 세대가 왔다!,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71859001#csidx5147c2bbebf20859ceae7bcd5a4b3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 윤홍식, 안세아. (2010). 노인일자리 사업과 가족생활: 돌봄, 사적 소득이전, 가족관계, 젠더 인식. 상황과 복지. 30, 79-123.
- 이가람. (2019).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의미: 사회적 가치의 의미 구성과 공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이삼식. (2015).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19, 36-49.
- 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2017).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건복지포럼. 243, 29-36.
- 이상림. (2014).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보건복지포럼. 213, 62-73.
- 이상림, 황남희, 유재연, 최인선, 김세진. (20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9).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68, 6-18.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07, 2-21.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19).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67, 19-31.
-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 이재열(2015).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 사회발전.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 질. 한울.
- 이재열. (2018).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박명규·이재열 엮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한울.
- 임훈민, 김중백. (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46-67.
- 장경섭. (2018). 가족 자유주의, 위험가족, 인구 위기: 21세기 한국 사회의 딜레마, 지식의 지평. 24, 1-14.
- 장미혜, 문미경, 최인희, 석재은, 노혜진, 김혜원, 정지연, 양아름.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선화. (2019). 제6장 스웨덴: 일·가정 균형정책의 젠더적 함의, 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한올아카데미. 155-188.
- 장용석 외. (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문우사.
- 장용석, 황정윤. (2018). 공공가치 융합 시대의 사회혁신. 박명규·이재열 엮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한울.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47.
- 전광희. (2018).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한국인구학, 41(2), 1~30.
- 전성환. (2019). 영국 협동조합 자치제 모델을 통해 본 서울시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 서울연구원.
- 정가원, 황정임, 김해람. (2017).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와 한계 및 발전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경희. (2014).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참여활동과 가구형태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7, 53-62.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 (2015). 사회적 포용과 배제.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

구. 8(2), 36-64.

정순돌. (2018). 젠더 관점에서 본 고령화정책. 젠더리뷰 2018년 겨울호. 28-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순돌. (2019). 고령사회 젠더 이슈- 젠더 관점에서 본 고령화 정책. 제1차 고령사회젠더 아젠다 포럼 발표자료.

정아름. (2018). 기혼 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가족 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37(3), 147-174

정우영, 조형숙, 안혜준. (2019).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들의 결혼 가치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3(2), 179-204.

정유경 외. (2018. 09. 05.).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제안 논란 “여성이 출산도구인가” 거센 비판,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869.html> 에서 2020. 02. 29.에 자료 인출

정창기. (2019). 왜 사회적 가치인가: 사회적 가치의 등장배경과 실현 조건. 희망제작소.

정재훈. (2017). 저출산·고령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40-72.

정종훈. (2018. 03. 30.). 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com/article/22490927>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정하경. (2016. 12. 29.). 대한민국 출산 지도? “여성이 출산 기계입니까”,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034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정해식·안상훈. (2015).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이재열 외. 2015. 한국사회의 질. 한울.

중앙일보. (2016. 12. 29.).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공개한 ‘출산지도’논란…“가족 취급하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com/article/21058390>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조귀동. (2020). 세습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134.

- 조영복, 류정란. (201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 방향의 모색.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윤정, 문희영, 김은경, 송현주, 채혜원, 홍희정. (2018). 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4-100.
- 최인희, 김영숙, 이재경, 남궁윤영, 김지미, 한은정, 이민아. (2018). 노인 장기요양인력 특성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최정원. (2019). 제10장 한국:초저출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성역할 분리 문화, 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한울아카데미*. 275-316.
- 최현. (2008). *인권*. 책세상.
-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4-64.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인구전쟁 2045, 크리에이터*. 1-250.
- 통계청. (2010~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8). *2018 고령자통계*.
- 통계청. (2019a).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 통계청. (2019b). *2018년 인구동향조사*.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19c). *2018년 출생 통계(확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19d).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19e). *2019 일·가정 양립지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통계청. (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19g).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39.
-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인구정책 50년. 보건복지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1-192.
- 한국행정연구원. (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연구.
- 한영선. (2015). 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 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6-215.
- 함정선. (2020). [인구정책 대전환] '출산율 1위' 세종시에 길을 묻다.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5633784&mediaCodeNo=257&OutLnkChk=Y> 에서 2020. 02. 28에 자료 인출.
- 행정자치부. (2016). “지자체 「출산 지도」만든다 - 행정자치부,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정부 혁신 추진 종합계획.
- 허필윤. (2018).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고찰. 진보평론, 77, 164-165.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25-59.
- 황남희. (2016).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9), 21-33.
- 희망제작소. (2013).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 희망제작소, 춘천시. (2020).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속의과정 매뉴얼.
- Caulier-Grice, J., A. Davies, R. Patrick, W. Norman. (2012). *Defining Social Innovation*.
- Chappell, N.L. & Havens, B. (1980). Old and Female: Testing the Double Jeopardy Hypothesi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1, 157-171.
- Dent, Harry. (2015).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전자책)(권성희 역), 청림출판. (원저 2014 출판). 5-60.
- Ferraro, K.F. & Farmer, M.M. (1996). Double Jeopardy, Aging as Leveler, or Persistent Health Inequality? A Longitudinal Analysis of White and Black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6), S319-S328.

Jeffrey D.Sachs. (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북스.

Geoff Mulgan. (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시대의창.

United Nations. (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Regional Survey on Ageing For Third MIPAA Review 2017*.

전자자료

복지포털. 우리동네 출산 축하금,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com/digitalspecial/312> 에서 2020. 01. 28.에 자료 인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다양한 지역의 청년기본조례 비교. Retrieved from <https://sites.google.com/view/bygovernance/부산청년기본조례/지역별-청년기본조례-비교> 에서 2020. 01. 28.에 자료 인출.

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에서 2019. 11. 20.에 자료 인출.

e-나라 지표, 기대수명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에서 2019.10.7. 인출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2010-2018),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 에서 2019. 11. 05. 인출

KOSIS, 2018년 국민연금통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4&conn_path=I2 에서 2019. 11. 07. 인출

KOSIS, 2018년 국민연금통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5&conn_path=I2 에서 2019. 11. 07. 인출

KOSIS, 2017년 노인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5&conn_path=I2 에서 2019. 11. 10. 인출

KOSIS, 2011년 노인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06&conn_path= 에서 2019. 11. 10. 인출

KOSIS. 인구동향조사-시도별 평균초혼연령: 1990-2018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 에서 2020. 02. 28 에 자료 인출.

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진수 및 동태율: 1990-2019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 에서 2020.02.28.에 자료 인출

KOSIS. 인구동향조사(시도/출산순위별 출생성비):1990-2018.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9&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 01. 10.에 자료 인출.

KOSIS. 장래인구특별추계(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1960-2067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19.11.10.에 자료 인출.

부록 1.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질문지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질문지

I. 개인의 삶의 질

(직장관)

1. 현재 일과 내 생활이 적절히 조화롭다고 생각하시나요?
2. 현재의 직장이 본인의 결혼/출산에 대한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결혼/출산이 본인의 커리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3. 어떠한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관)

1. 본인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상황에 따라)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2. 결혼을 해야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하기에 적절한 시기)
3.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본인에게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5. 어떤 가족을 꾸리고 싶으신가요?
6. 원 가족의 경험이 본인이 가족을 꾸리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7.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관계)

1. 주변에 결혼한 사람/육아 중인 사람/비혼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본인이 미혼/기혼인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나요?
3. 언론이나 TV프로그램에서 결혼과 양육의 모습을 본 게 있나요? 어떤프로그램이었나요?
4. 그 매체에서 보여지는 결혼과 양육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게 본인의 결혼관과 양육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5. 미혼인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출산 및 육아관)

1. 본인에게 출산/육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상황에 따라) 결혼하면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주변에서 아이키우는 가정을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아이와 남자/여자(혹은 엄마/아빠)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5. 아이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II.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1. 인구 문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 인구 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 지금의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3. 신문이나 뉴스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어떤 생

각이 들었나요?

4. 고령화 문제) 노인세대를 우리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노인일 때 후세대에게 부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차원)

- 5-1. 부모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5-2.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부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6. 신문이나 뉴스에서 ‘저출산’에 대한 보도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저출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7. 가임기 여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비혼/비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Ⅲ.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1. 인구정책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지금의 행복주택이나 소득공제 같은 정책들은 남녀로 구성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같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 더 혜택이 많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3. 여러 다양한 삶(비혼, 결혼, 동거, 동성가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록 2.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전문가 조사표



031 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Gallup 2019-163-044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성평등한 고령사회 정책 수립과 정책 아젠다 및 정책/법제 대응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응답해 주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9년 11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문혜리
전화 02-3702-2554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 본 설문 문항은 크게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 I.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의 중요도 평가 파트는 **응답자 공통 문항**으로,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십시오.
- II. 고령사회 정책 영역별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파트는 **선택형 문항**으로, 문3)에서 **해당되는 전문 분야 2개의 영역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영역의 질문에만 응답해주시십시오.
- III. 향후 젠더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파트는 **응답자 공통 문항**으로,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십시오.
- IV. 응답자 특성, V.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파트는 **응답자 공통 문항**으로,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십시오.

- (공통)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 평가
- (선택) 고령사회 정책 영역별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영역별 2개 선택 응답)
- (공통) 향후 젠더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 (공통) 응답자 특성
- (공통)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1.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 평가

이번 조사에서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 및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으로 1) 노후소득보장 2) 고령자 건강의료 3) 요양 및 돌봄 4) 경제활동 참여 지원 5) 사회참여 활동 지원 6) 안전(학대) 7)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문 1) 귀하는 이와 같은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문 1-1로 갈 것]**
 2. 동의하지 않는다 → **[문 1-1로 갈 것]**

문 1-1) (문 1에서 '2.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만) 그럼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 귀하를 다음의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7 순위를 표시해주세요.

문 2-1) 귀하를 다음의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 가운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7 순위를 표시해주세요.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	문2) 중요성 평가	문2-1) 성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성 평가
① 소득보장	순위	순위
② 건강 지원	순위	순위
③ 요양 및 돌봄	순위	순위
④ 경제활동 지원	순위	순위
⑤ 사회참여활동 지원	순위	순위
⑥ 안전	순위	순위
⑦ 관계망 형성 (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순위	순위

II. 고령사회 정책 영역별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 문 3) 귀하의 전문 분야와 가장 관련이 있는 2개의 영역을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에 표기해 주십시오.
선택 후 해당 분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선택	참고
A. 소득보장	☐	→ 3페이지 A-1 ~ A-2 응답
B. 건강 지원	☐	→ 4페이지 B-1 ~ B-2 응답
C. 요양 및 돌봄	☐	→ 5페이지 C-1 ~ C-2 응답
D. 경제활동 및 지원	☐	→ 6페이지 D-1 ~ D-2 응답
E. 사회참여활동 지원	☐	→ 7페이지 E-1 ~ E-2 응답
F. 안전	☐	→ 8페이지 F-1 ~ F-2 응답
G. 관제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	→ 9페이지 G-1 ~ G-2 응답

A. 소득보장

※ 문 3)에서 'A. 소득보장'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A-1) ~ 문 A-2)를 응답해 주십시오

현행 노후 소득보장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공적연금, 사각연금(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 문 A-1) 귀하는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A-1-1에 표기

2. 아니다

문 A-1-1) (문 A-1에서 '1.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A-1-2) (문 A-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A-2) (문 A-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 건강 지원

※ 문 3)에서 B. 건강 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B-1) ~ 문 B-2)를 응답해주시요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고령자 건강관리예방 등이 있습니다.

문 B-1) 귀하는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B-1-1로 연결]

2. 아니다

문 B-1-1) (문 B-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B-1-2) (문 B-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계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B-2) (문 B-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건강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 요양 및 돌봄

※ 문 3)에서 'C. 요양 및 돌봄'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C-1) ~ 문 C-2)를 응答主심시오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장기요양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이 있습니다.

문 C-1) 귀하는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C-1-1로 연결]

2. 아니다

문 C-1-1) (문 C-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C-1-2) (문 C-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C-2) (문 C-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요양 및 돌봄 관련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이슈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 경제활동 및 지원

※ 문 3)에서 'D. 경제활동 및 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D-1) ~ 문 D-2)를 응답해주십시오

현행 고용자 경제활동 및 지원 관련 주요 정책은 고용자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문 D-1) 귀하는 현행 고용자 경제활동 및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D-1-1로 갈 것]

2. 아니다

문 D-1-1) (문 D-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고용자 경제활동 및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D-1-2) (문 D-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D-2) (문 D-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용사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 및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제도 어떤 것과 관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 사회참여활동 지원

※ 문 3)에서 'E.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E-1) ~ 문 E-2)를 응답해주시요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문 E-1) 귀하는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E-1-1에 연결]

2. 아니다

문 E-1-1) (문 E-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E-1-2) (문 E-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E-2) (문 E-1 전에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이슈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 안전

※ 문 3)에서 'F. 안전'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F-1) ~ 문 F-2)를 응답해주시요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물리적 환경 안전(교통, 보행 등),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 F-1) 귀하는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F-2로 갈 것]

2. 아니다

문 F-1-1) (문 F-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F-1-2) (문 F-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F-2) (문 F-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안전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 문 3)에서 'G. 관계망 형성'을 선택한 경우에만 아래 문 G-1) ~ 문 G-2)를 응답해주시시오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가족 다양성(1인 가구 등의 증가, 비혼 사실혼 등 가족변화)에 대응한 가족 정책, 가족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G-1) 귀하는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문 G-1-1로 연결]

2. 아니다

문 G-1-1) (문 G-1에서 '1.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G-1-2) (문 G-1에서 '2. 아니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G-2) (문 G-1 전체 응답자 모두)

귀하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관계망 형성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이천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II. 향후 젠더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 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 다음은 공통질문입니다

문 4)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보완되어야 할 영역과 과제**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적어주시시오

IV. 응답자 특성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Q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DQ 2) 귀하의 생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년

DQ 3) 귀하의 소속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공공기관

2. 대학/학계

3.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제외)

4. 업체(실무자)

5. 비영리기관

6.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DQ 4)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DQ 5) 귀하의 해당 분야 종사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V.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DQ 6)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응답하신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60,000원)을 본 조사 완료 이후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발송 예정일: 2019년 12월 6일)

※ 단, 본인이 아니거나 대리응답, 중복참여 등의 상황이 확인될 시 답례품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수령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고령사회 젠더 이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조사완료 및 답례품 지급 시 까지이며, 지급 이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료](#)

DQ 6-1) 답례품 수령을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완료 이후 대상자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백화점 상품권(60,000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 조사 답례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권 발송 후 연락처는 일괄 파기되어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답례품 미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